



전기용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GuideBook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 가이드북은 사업자가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규정하는 **표시사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제품별 특성**에 따라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제작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용품 가이드북은 2020년 8월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제품안전 관련 표시사항은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GuideBook CONTENTS



1

제품안전관리제도

제도 개요	06
표시사항 구성	07
제품에 표시하는 방법 및 시기	09
안전기준 열람 방법	10
제품 표시사항 위반 시 처분사항	11
참고사항	13

2

품목별 표시사항

안전인증	17
안전확인	187
공급자적합성확인	345
공통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455



부록

지정 시험 기관	496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500

Index	506
-------	-----



1



제품안전관리제도



제도 개요

표시사항 구성

제품에 표시하는 방법 및 시기

안전기준 열람 방법

제품 표시사항 위반 시 처분사항

※ 참고사항



① 제도 개요

제품시장 출시 전(사전 인증, 시험 의무 부여)

전기용품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3가지로 안전관리 수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수입업자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을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제품에는 KC표시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수준별 시험·인증 절차〉

품목 구분	인증 등 준수절차
① 안전인증 (5품목)	
② 안전확인 (25품목)	
③ 공급자적합성 (15품목)	

※ 법적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제품시장 출시 후(제품 표시사항 및 법적 안전기준 준수 의무 부여)

국내 제조·수입업자는 사전인증 등을 거쳐 제품을 시중에 출시한 후에도,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과 함께 품목별 표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면서 제품을 유통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연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 표시사항과 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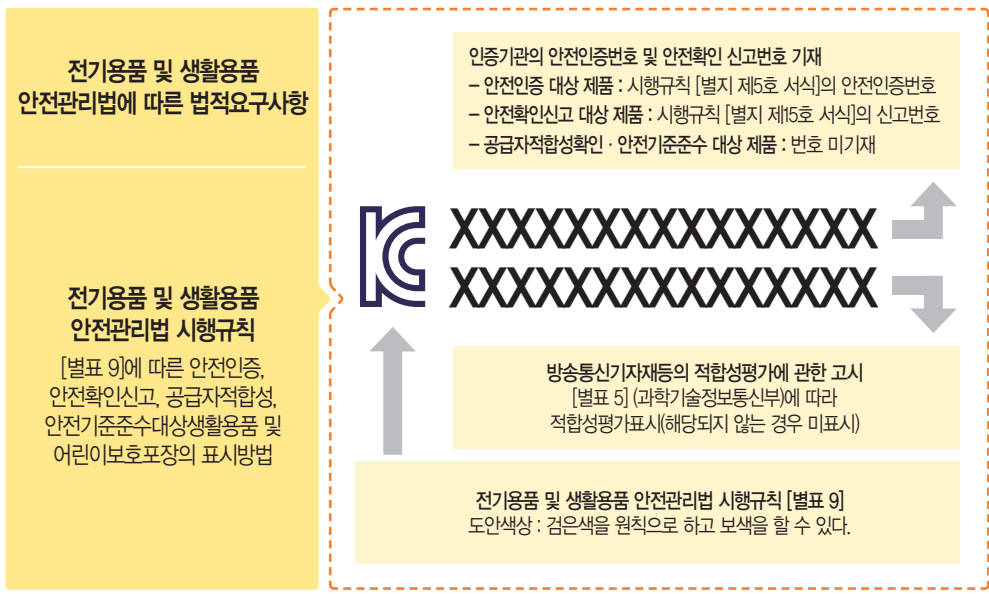
적발된 제품의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와 내용에 따라 제품 수거, 개선조치 등을 명령 또는 권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1 표시사항 구성

전기용품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KC표시 및 등법 운영요령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표시와 함께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시사항(모델명, 제조년월 등)을 조합하여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3]에 따른 기타 필요한 표시

제품명	안전기준 상 제품명
모델명	제품별 세부 모델명(제품별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모델번호) *인증 받거나 신고한 경우는 인증서(안전확인 신고서)의 모델명과 동일하게 기재
제조업체명 (or 수입업체명)	제조업체명 (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 추가)
제조년월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제조년월, 로트번호,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연락처	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기재

제품안전관리제도

2. 전기용품 품목별 안전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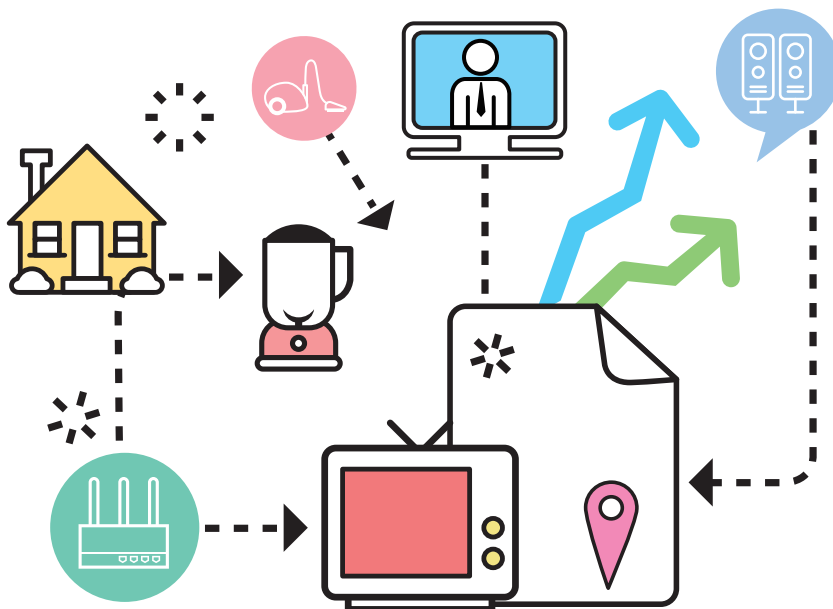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1], [별표 2], [별표 3]

**공통안전기준
+
개별안전기준**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표시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설명서 등을 기재한다.

예시)

제 품 명	공기청정기		
모 델 명	KPSA-1100	정 격	AC 220V, 60Hz, 100W
제 조 연 월	2020년 10월	I P 등 급	IP×4
제 조 자 명	한국제품안전협회	전화번호	02-000-0000
제 조 국 명	(수입제품인 경우에 한함)	수입자명	(수입제품인 경우에 한함)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주의사항			





● 제품에 표시하는 방법 및 시기

1. 표시사항 전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경우

- 마크는 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한다.
- 제품 또는 포장에 인쇄 또는 각인 등으로 식별하기 쉽도록 표시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품에 표시(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나 품목에 따라 포장에 표시해도 되는 제품이 있으니 품목별 안전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 표시사항 전체를 제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소형제품

- 최대 단면적 400mm² 이하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만 표시
- 최대 단면적 400mm² 초과 900mm² 이하는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를 각각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에 표시한다.

전선류

- 불소수지절연전선 이외의 것은 전선 표면에 1m 이하마다(600V 고무절연 전선, 고무코드,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절연 피복 안에 넣은 테이프) 표시한다.
- 불소수지절연전선은 1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한다.

전구류

- 제품 표면에 마크 및 정격 표시,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에 표시한다.

제품에 표시 불가능한 경우

-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에 표시한다.

내장되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충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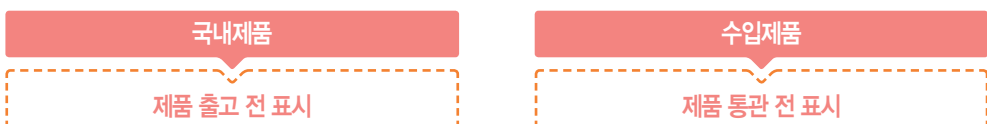
- 마크 또는 번호 중 하나를 충전지에 표시,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에 표시한다.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PC[전자적 표시(Electronic-Labeling)]

- 전자적 표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표시한다.
- 전자적 표시의 방법 및 요구조건, 안전성 확보 등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 별표5 제3호를 준용한다.

※ 제품사용설명서는 별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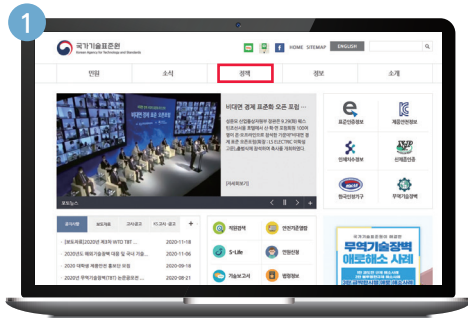
3.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시기



제품안전관리제도

① 안전기준 열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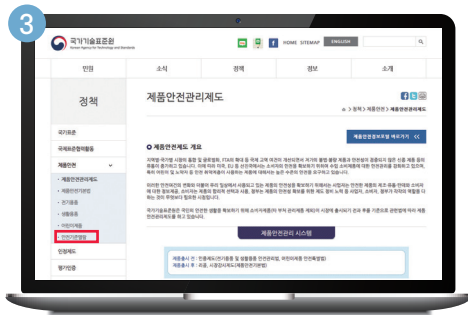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 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정책 → 제품안전



제품안전 → 안전기준 열람



안전기준 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 제품 표시사항 위반 시 처분사항

KC표시(KC마크 및 인증, 확인신고번호),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선조치 권고

-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에 따라 개선조치 명령 대상이 되며, 재고제품이나 향후 수입·제조하여 출고할 제품에 대해 개선을 완료한 후 국표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새로이 출고가 가능합니다.
- ※ 개선조치 명령 이후 개선조치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2. 형사고발 및 과태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KC표시 임의변경, 제거,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처벌내용	처벌기준	관련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제품에 KC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23호, 제29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KC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2호, 제4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KC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호, 제7호, 제13호, 제18호
	KC표시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4호, 제8호, 제14호
	KC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4호, 제9호, 제16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5호, 제19호

제품안전관리제도

3. 인증취소 및 표시 사용금지 등(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안전인증대상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3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2) 안전확인신고대상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2호	개선명령	안전확인신고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3호	개선명령	안전확인신고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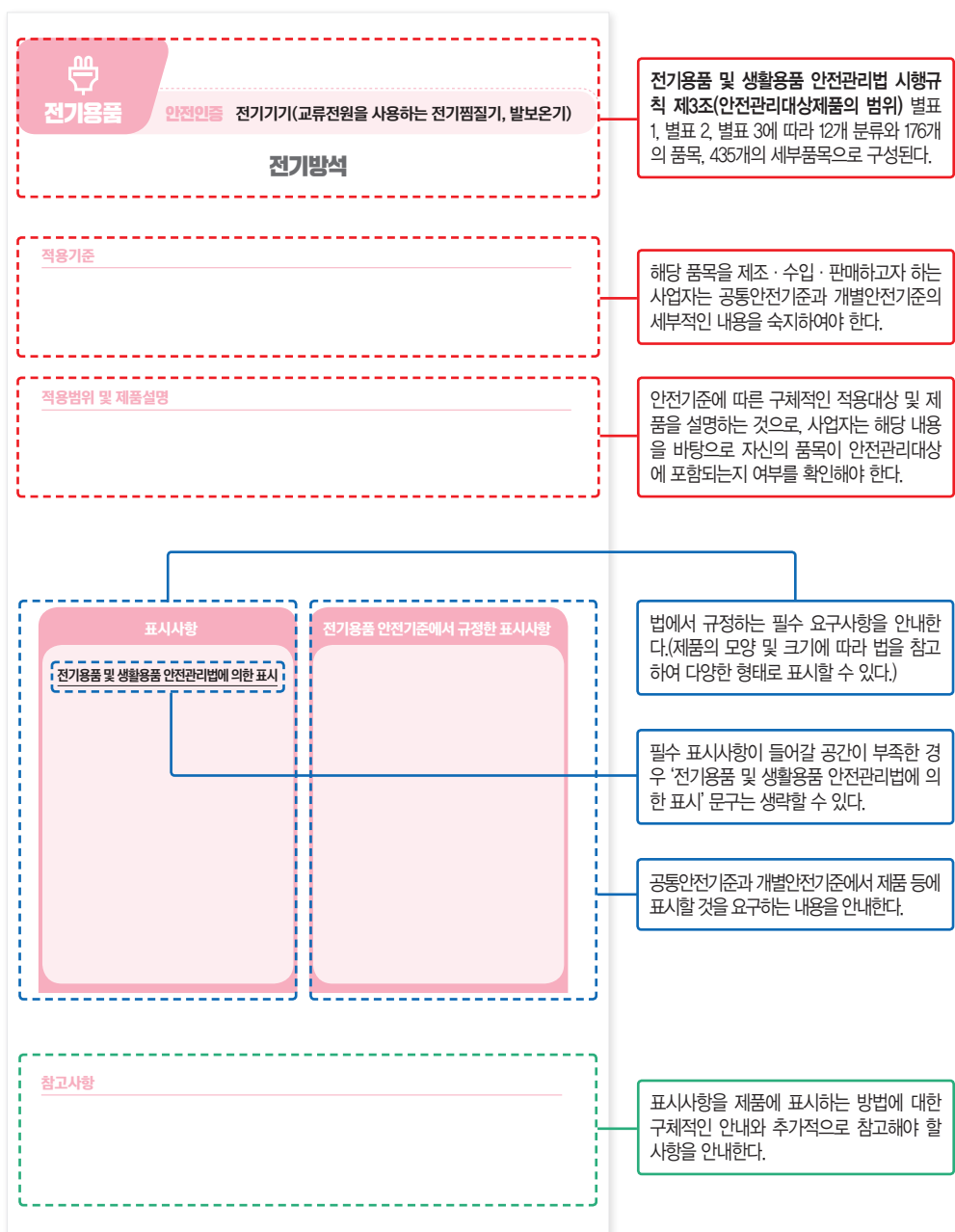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 제2호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제3호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① 참고사항

다음 장의 품목별 표시사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으며, 가이드북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품목별 표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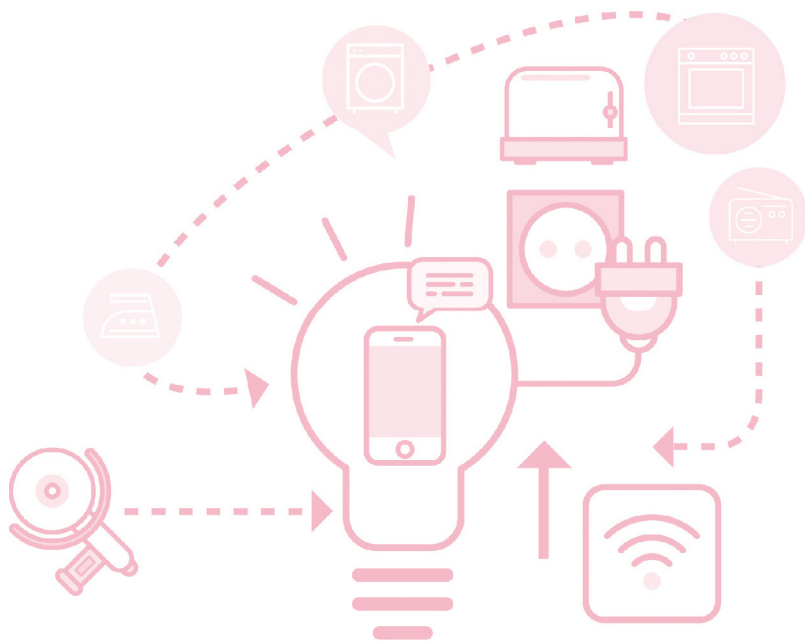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공통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인증

절연전선
케이블
코드
코드세트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설비용 스위치
코드 스위치
전자식 스위치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시간지연 스위치
조광기
제어회로용 스위치
전자개폐기
X·Y 커패시터
전파장해 억제용 전원필터
형광등용 커패시터
전기기기용 접속기류
상호연결커플러
플러그 및 콘센트
케이블릴
퓨즈
온도퓨즈
기기보호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
진공청소기
물출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고압세척기
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 프레스
전기레인지
전기오븐기기
전기거치식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가열기
전기토스터
전기프라이팬
전기휴대형그릴
전기고기구이기
와플기
핫플레이트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모발건조기
전기머리인두
모발말개
주 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같이
전기깎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젓병가열기
요구르트제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
기기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전기방석
전기짚질기
발보온기
전기온수기
순간온수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 프리저
전기냉수기
전자레인지
전기충전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손건조기
전기건조기
의류관리기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축열식 전기난방기
전구모양 히터
펠릿 스토브
전기마사지기
냉방기
전격살충기
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저후드
전기냉풍기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가습기
기타 전기기기
전기드릴
전기드라이버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원형톱
전기해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왕복톱
전기진동기
전기체인톱
전기대패
전기잔디깎이
전기못총
라우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직류전원장치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
단전지
기타 정보통신사무기기
형광램프 홀더
에디슨 나사형 홀더
기타 램프 홀더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LED조명 시스템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안정기내장형램프
리튬이차단전지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절연전선

적용기준

- KC 60227-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KC 60227-2,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2부 : 시험방법
- K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
- K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고무절연 케이블,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245-2,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고무절연 케이블, 제2부 : 시험방법
- KC 60245-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고무절연 케이블, 제3부 : 내연 실리콘 고무절연케이블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공칭전압 교류 450/750 V 이하의 전기설비 등에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수지 및 고무를 주성분으로 하는 절연체를 피복한 것으로 주로 옥내단심 내열성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전선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공칭단면적이 95 mm²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절연전선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450/750 V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표시
KC 60227-3의 부속서 A(규정) 및 KC 60245-3의 부속서 1(규정)에 따른다.
- ◆ 전선의 표시
 - a) 기호
 -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c) 제조 년
- ◆ 포장의 표시
 - a) 명칭 또는 그 기호
 - b) 도체 지름 또는 공칭 단면적
 - c) 전선의 색표상이 투명하여 색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d) 길이
 - e) 무게(드럼의 경우에는 총 무게도 병행 표시)
 - f) 드럼의 회전방향(드럼의 경우에만 한함)
 - g) 전선의 감긴 끝의 위치(드럼의 경우에만 적용)
 - h)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i) 제조 년 월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케이블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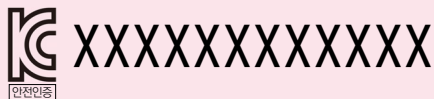
- KC 60227-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KC 60227-4,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4부 : 고정배선용 시스템케이블
- KC 60227-6,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6부 : 리프트 케이블과 연결용 유연성 케이블
- KC 60227-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7부 : 2심 또는 다심의 차폐 및 차폐 유연성 케이블
- K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고무절연 케이블,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245-4,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고무절연 케이블, 제4부 : 코드 및 가요케이블
- KC 60245-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고무절연 케이블, 제5부 : 리프트케이블
- KC 60245-6,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고무절연 케이블, 제6부 : 아크용접용 케이블
- KC 60245-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고무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 KC 60502-1, 정격전압 1 kV(Um=1.2 kV)~30 kV(Um=36 kV) 이하 압출성형 절연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 : 정격전압 1 kV (Um=1.2 kV)~3 kV(Um=3.6 kV) 이하의 케이블
- KC 10028,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고무 절연케이블, 가교 실리콘고무절연 다심케이블
- KC 60702-2, 정격전압 750 V 이하 무기물 절연케이블 및 단말부 제2부 : 중단부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2가닥 이상 꼬거나 평형 상태로 하여 고무 등으로 피복한 것을 말하며 개재물로서 종이나 실 등을 넣은 것도 있으며 공칭단면적이 95 mm²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연질 비닐 시스템 케이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300/500 V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표시
KC 60227-4 부속서 A(규정), KC 60227-6 부속서 B(규정), KC 60227-7 부속서 B(규정), KC 60245-4 부속서 1(규정), KC 60245-5 부속서 1(규정), KC 60245-6 부속서 1(규정), KC 60245-7 부속서 1(규정), KC 60502-1 부속서 D(규정)에 따른다.
- ◆ 전선의 표시
a) 기호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년
- ◆ 포장의 표시
a) 종류 또는 그 기호 b) 도체 지름 또는 공칭 단면적
c) 전선의 색(포장이 투명하여 색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d) 길이 e) 무게(드럼의 경우에는 총 무게도 병행 표시)
f) 전선의 감긴 끝의 위치(드럼의 경우에만 적용)
g)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h) 제조 년 월
KC 60702-2에 따른다.
- ◆ 포장 표시
a) 이 규격의 표시 b) 제조자 또는 공급자 확인 방법
c) 말봉 부분의 최대 및 최소 동작 온도
d) 계획된 케이블 확인 방법 또는 표시
e) 보호 도체의 사용 여부
f) 마개 나선 줄(thread) 형태 및 크기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코 드

적용기준

- KC 60227-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KC 60227-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5부 : 가요케이블(코드)
- K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고무절연 케이블,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245-4,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4부 : 코드 및 가요 케이블
- KC 60245-8,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고무절연 케이블, 제8부 : 고 유연성 전기기기용 코드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주로 전동기구나 전기기기의 전원전선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소선이 가늘고 유연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칭단면적이 0.5 mm² 이상 6 mm²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범용 비닐 시스 코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300/500 V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표시
 - KC 60227-5 부속서 A(규정)에 따른다.
- ◆ 코드의 표시
 -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b) 호 칭
 - c) 내열성을 가진 것은 그 취지
 - d) 제조 년
- ◆ 포장의 표시
 - a) 종류 또는 기호
 - b) 심선 수(원형 이외에는 생략하여도 좋다) 및 공칭 단면적
 - c) 길이
 - d) 무게
 - e)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f) 제조 년 월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코드세트

적용기준

KC 60799, 전기용 부속품 - 코드셋 및 상호연결 코드셋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원에 접속을 목적으로 코드 비교환형 플러그와 코드 비교환형 커넥터에 코드를 장착한 것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450/750 V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표시
 - KC 60799의 5항에 따른다.
 - 플러그, 커넥터 및 플러그 커넥터는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 코드셋과 상호 연결 코드셋이 전기 기구와 동일한 제조자가 제작하지 않은 전기 기구 플러그나 플러그 커넥터 및 커넥터와 함께 납품되지 않은 경우, 완전 코드셋이나 상호 연결 코드셋의 제조자나 책임 공급자의 성명, 상표명 또는 식별 기호를 표시한다.
 - 이 표시는 포장에만 부착하는 것은 아니다.
 - (비고) 예를 들어 코드셋에 부착한 고리에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성명, 상표나 식별 기호를 붙일 수 있다.
 - II등급 기기 결선용 플러그, 커넥터, 코드셋이나 상호 연결 코드셋에는 II등급 구조를 나타내는 기호(이중 사각형)를 표시하지 않는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기기용 스위치

적용기준

KC 61058-1, 기기용 스위치 제1부: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기기 및 기타 장치를 작동 또는 제어하기 위하여 손, 발 또는 기타 인간의 동작에 의해 움직여지는 스위치를 말하며, 정격전압 480 V 이하, 정격전류가 30 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일반스위치(마이크로스위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60 Hz, 6 A
- 정격작동사이클수 : 1E3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위치의 식별
- ◆ 형식 참조 기호
- ◆ 온도의 한도값
- ◆ 단자의 형식
- ◆ 작동 주기 및 순서
- ◆ 신호 표시
- ◆ 회로 차단
- ◆ 절연 재료
- ◆ 보호 장치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058-1의 8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전기설비용 스위치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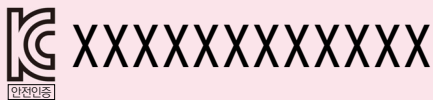
K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설비에 장착하는 교류 전용 수동식 범용 스위치로 정격 전압 440 V 이하, 정격 전류 63 A 이하의 옥내용 또는 옥외용 전기설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 전류는 16 A를 한도로 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설비용 스위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16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정격 전류(A) 또는 정격 형광등 부하 전류(AX)나 2개의 다른 정격을 조합하였을 경우에는 양쪽 조합의 정격
- 정격 전압(볼트)
- 제조사 명, 판매자 명, 상호 또는 식별 기호
- 전원의 성질 기호
- 구조의 기호
- 유해 영향에 대한 보호 등급
- 조작 방법
- 장착 방법
- 단자 형태
- 보호 등급
- 형광등부하 전류가 부착된 표시

◆ 스위치의 중요 부분에 표시될 사항

- 정격 전류, 정격 전압 및 전원의 특성
- 제조자 또는 책임 있는 판매자의 명칭
- 도체에서 제거해야 할 절연의 길이
- 미니 캡, 마이크로 캡 구조 또는 반도체 개폐 장치용
- 기호가 사용될 경우 기호
- 형번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669-1의 8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코드 스위치

적용기준

KC 61058-1, 기기용 스위치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1058-2-1, 기기용 스위치 제2-1부: 코드스위치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유연한 케이블로 전원 및 기기 또는 장치에 접속하도록 의도된 기기로 폐쇄된 스위치이자 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코드스위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60 Hz, 16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위치의 식별
- ◆ 형식 참조 기호
- ◆ 주위온도의 한도값
- ◆ 단자의 형식
- ◆ 작동 주기 및 순서
- ◆ 신호 표시
- ◆ 회로 차단
- ◆ 절연 재료
- ◆ 보호 장치
- ◆ 조명 제어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스위치에 "OFF" 표시를 하지 않는다.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058-1의 8항과 KC 61058-2-1의 8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전자식 스위치

적용기준

K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669-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2-1부 : 전기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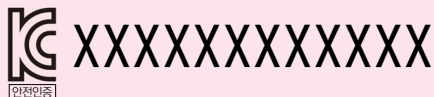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설비에 장착하는 전자 스위치와 이와 관련하는 전자식 스위치로 옥내용 또는 옥외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스위치이다.

램프 회로 조작용, 램프의 조도 제어(조광기)용, 모터(예를 들면 환기팬에서 사용되는 것)의 속도 제어용, 모터 회로 조작용, 그리고 기타 목적(예를 들면 난방 설비)을 위한 전자 스위치로 교류사용 전압 250V 이하, 정격 전류 16A 이하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것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자식 스위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V ~, 60 Hz, 0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전압
- ◆ 정격전류 또는 볼트 암페어 또는 와트 표기의 정격부하
- ◆ 전원에 대한 기호(심벌)
- ◆ 제조자 또는 책임 있는 공급자 이름
- ◆ 유형 참고사항(카탈로그 번호 등)
- ◆ 적용 시, 최소간격 구조에 대한 기호
- ◆ 적용 시, 극소간격 구조에 대한 기호
- ◆ 적용 시, 반도체 전환 장치에 대한 기호
- ◆ 고체 물질의 침투로 인한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등급의 특성값 표기
- ◆ 액체 침투로 인한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등급의 특성값 표기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669-1의 8항과 KC 60669-2-1의 8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적용기준

K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669-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2부 : 개별요구사항 제2절 : 리모트 콘트롤 스위치(R.C.S)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설비의 옥내용 및 옥외용의 전자식 원격제어용스위치(Remote Control Switch, RCS)를 말하며, 정격전압 440 V 이하, 정격전류가 63 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리모트콘트롤스위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 16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전류(A) 또는 정격 형광등 부하 전류(AX)나 2개의 다른 정격을 조합하였을 경우에는 양쪽 조합의 정격
- ◆ 정격 전압(볼트): 정격 전압과 다를 경우에는 정격 제어 전압(볼트)
- ◆ 제조사 명, 판매자 명, 상호 또는 식별 기호
- ◆ 전원의 성질 기호
- ◆ 구조의 기호
- ◆ 유해 영향에 대한 보호등급
- ◆ 조작 방법
- ◆ 장착 방법
- ◆ 단자 형태
- ◆ 보호 등급
- ◆ 형광등부하 전류가 부착된 표시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669-1의 8항과 KC 60669-2-2의 8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시간지연 스위치

적용기준

K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669-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2-3부 : 지연스위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설비에 장착하는 시간지연 스위치(Time Delay Switch, T.D.S.)로 정격 전압이 440 V 이하 정격 전류가 63 A 이하인 손 또는 원격 제어로 조작되고 기계, 열, 기압, 수압 혹은 전기 또는 이들 중의 어느 것을 조합하여 구동하는 지연 장치를 갖고 있는 전기설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시간지연 스위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60 Hz, 10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전류(A) 또는 정격 형광등 부하 전류(AX)나 2개의 다른 정격을 조합하였을 경우에는 양쪽 조합의 정격
- ◆ 정격 전압(볼트) : 정격 전압과 다를 경우 정격 제어 전압(볼트)
- ◆ 제조사 명, 판매자 명, 상호 또는 식별 기호
- ◆ 부하의 형식
- ◆ 보호 정도
- ◆ 외부 도체 접속에 대한 단자
- ◆ 헤드의 온도 한계치
- ◆ 설치면의 온도 한계치
- ◆ II등급 구조의 기호
- ◆ 지연 시간의 조정 변화에 대한 기호
- ◆ “항상 켜짐”과 “항상 꺼짐”의 위치 기호
- ◆ “지연 시간”의 기호
- ◆ 단자 기호가 표시된 배선도를 부착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669-1의 8항과 KC 60669-2-3의 8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조광기

적용기준

K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669-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2-1부 : 전기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램프의 조도제어용 스위치를 말하며, 정격전압 250 V 이하, 정격전류가 16 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조광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 60 Hz, 10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볼트 표기의 정격 전압
- ◆ 암페어 표기의 정격 전류 또는 볼트 암페어 또는 와트 표기의 정격 부하
- ◆ 전원에 대한 기호(심벌)
- ◆ 주파수
- ◆ 조정부하용 단자
- ◆ 부하의 종류 (백열램프, 형광램프, 모터)
- ◆ 제조자 또는 책임 있는 공급자 이름
- ◆ 유형 참고사항 (카탈로그 번호 등)
- ◆ 적용 시, 최소간격 구조에 대한 기호
- ◆ 적용 시, 극소간격 구조에 대한 기호
- ◆ 적용 시, 반도체 전환 장치에 대한 기호
- ◆ 고체 물질의 침투로 인한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등급의 특성값 표기
- ◆ 액체 침투로 인한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등급의 특성값 표기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669-1의 8항과 KC 60669-2-1의 8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제어회로용 스위치

적용기준

KC 6094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교류용 차단기
 KC 60947-5-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5-1부 : 제어회로 소자 및 개폐소자 - 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정격전압 480 V 이하, 정격전류가 30 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제어회로용 스위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60 Hz, 20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제조자의 이름 또는 상표
- ◆ 제작사 또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또는 부속서 A의 선택에 의해 개소 소자의 정보를 취할 수 있는 형식승인 또는 번호
- ◆ 정격 동작 전압
- ◆ 제어 회로 장치의 정격, 동작 전압에서 사용 범주와 정격 동작 전류
- ◆ 정격 절연 전압
- ◆ 정격임펄스내전압
- ◆ 개폐 과전압
- ◆ 밀폐형 제어회로 장치의 경우 IP코드
- ◆ 오염 등급
- ◆ 단락 보호 장치의 형식과 최대 정격
- ◆ 조건부 단락 전류
- ◆ 동일 극성의 접점 소자의 구분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47-1의 5.2항과 KC 60947-5-1의 5.2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

적용기준

KC 60947-2,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KC 60947-4-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4-1부 : 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 -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KC 61095, 가정용과 유사 용도를 위한 전기 기계적 접촉자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자접촉기의 ON/OFF에 의해 모터 등의 부하를 운전/정지시킴으로써 부하를 보호 및 제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과부하계전기에 의해 부하에 일정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면 이를 감지하여 전자접촉기의 조작전원을 OFF시켜 부하를 정지시키며, 전자접촉기와 과부하계전기가 조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정격전류가 300 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자개폐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3P, 440V, 12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다음 데이터들은 차단기 본체 또는 차단기에 부착된 명판에 표기되어야 하고, 차단기가 설치된 상태에서 잘 보이고 읽을 수 있도록 위치해야 한다.
 - a) 정격 전류
 - b)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기호와 함께 이격 기능에 대한 적합성
 - c) 개로 및 폐로 위치의 표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와 I로 표시
- 아래의 데이터들도 a)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차단기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단, 이것들은 차단기가 설치되었을 때 보일 필요는 없다.
 - a) 제조자명 또는 상호
 - b) 형식명 또는 제조번호
 - c) 사용범주
 - d) 정격사용전압
 - e) 정격일률스내전압
 - f) 정격 주파수 값
 - g) 상용하는 정격전압에서의 정격서비스단락차단용량
 - h) 상용하는 정격전압에서의 정격극한단락차단용량
 - i) 사용범주 B의 경우, 정격단락내전류 및 단시간 지연시간
 - j) 전류속과 부하측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전원 및 부하 단자
 - k)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문자 N으로 표시한 중성극 단자
 - l)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기호로 표시한 보호접지단자
 - m) 30℃와 다른 경우, 보정되지 않은 열등형 릴리스에 대한 기준온도
- 아래의 데이터들은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차단기 위에 표시되거나, 제조자가 발행하는 자료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a) 4.3.5.1에 규정된 값보다 높은 경우, 정격 단락 투입 용량
 - b) 최대 정격 사용 전압보다 높은 경우, 정격 절연전압
 - c) 오수등급 3 이외의 경우, 오수등급
 - d) 정격전류와 다른 경우, 열안정계열전류
 - e) 적용할 수 있는 경우, IP 코드
 - f) 표시된 정격에 적용되는 최소 외함 크기와, 통풍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
 - g) 외함이 없이 사용할 차단기의, 차단기와 접지된 금속부 사이의 최소거리의 상세 내용
 - h)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환경 A 또는 환경 B에 대한 적합성
 - i) 적용할 수 있는 경우, F.4.1.1에 따른 실외지 검출
- 차단기의 개폐조작장치에 관한 다음의 데이터들이 조작장치의 명판 또는 차단기의 명판에 기재되어야 한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판 대신에 제조자가 발행하는 자료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a) 폐로장치의 정격제어회로전압과, 교류의 경우, 정격주파수
 - b) 섀트 릴리스 및/또는 부속전압 릴리스(또는 무전압 릴리스)의 정격제어회로전압과, 교류의 경우, 정격주파수
 - c) 간접 과전류 릴리스의 정격전류
 - d) 보조접점의 수와 형식, 주회로와 다른 경우, 보조 스위치 전류의 종류, 정격주파수(교류의 경우) 및 정격전압
- 단지 표시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947-2의 5항과 KC 60947-4-1의 6항과 KC 61095의 6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X-Y 커패시터

적용기준

KC 60384-1, 전자기기용 고정 캐피시터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84-14,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14부 : 전기자기 장해 억제 및 주전원 연결용 커패시터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자파 장해 방지용으로 교류전원의 입력 단에 연결되어 쓰이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도체간의 전압이 500 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 V 이하인 것 또는 저장 커패시터가 포함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 값이 1 kΩ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해당 제품명 명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60 Hz, 0.1 iF
- 부류 및 하위 부류 : X2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표시 다음의 세부 사항과 함께 KS C IEC 60384-1의 2.4에 따른다.
 - ◆ 표시되는 정보는 통상적으로 다음 항목에서 선택된다.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은 위치 순서로 나타난다.
 - a) 제조자의 이름 또는 상표명
 - b) 제조자에 의한 형명 또는 개별규격에 의한 형명
 - c) 커패시터 등급 및 하위등급
 - d) 인정된 인증 표시
 - e) 정격 커패시턴스와 정격 저항
 - f) 정격 전압과 전원 성질(교류 전압은 ~표시로, 직류 전압은 또는 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 g) 결선 방법(필요 시)
 - h) 도체의 정격 전류(리드관통형 커패시터의 경우)
 - i) 정격 커패시턴스의 허용오차, ±20 %가 아닌 경우
 - j) 기후 범주와 수동 기연성 범주를 나타내는 글자
 - k) 정격 온도
 - l) 제조 연월(또는 주)
 - m) 개별규격의 참고사항
 - ◆ 커패시터에는 a), b), c)를 명확하게 표시하며, b)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d), e), f)를 표시한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제조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많은 항목을 표시한다. 표시는 제조된 부품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비고) 표면실장부품은 a), b)만 의무적이다.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84-1의 2.4항과 KC 60384-14의 1.6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100 Hz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파장애 억제용 전원필터

적용기준

- KC 60939-1, 전자파방해 방지용 필터소자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KC 60939-2, 전자파방해 방지용 필터소자 제2부 : 시험방법의 선택과 일반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자파 장애 방지용으로 교류전원의 입력 단에 연결되어 쓰이는 전원필터로서 도체간 공칭전압이 500 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 V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해당 제품명 명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75 V, 10 A, 60 Hz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제조자의 이름(또는 상표)
- ◆ 제조자의 형식명
- ◆ 정격 전압
- ◆ 정격 전류
- ◆ 정격 온도
- ◆ 기후 범주
- ◆ 제조 연월(또는 주)(부호 형태일 수도 있다.)
- ◆ 모든 소자를 나타내는 내부 배선의 회로도 와 모든 정전 용량값, 그 등급 및 인덕턴스 값
- ◆ 개별 규격에의 연관성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939-1의 2.4항과 KC 60939-2의 1.6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100 Hz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안전인증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형광등용 커패시터

적용기준

KC 61048, 램프 보조장치 형광등 램프 및 방전램프용 커패시터 - 일반 및 안전
 KC 61049, 형광등과 방전램프 회로에 쓰이는 캐패시터 -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방전램프 회로에 사용되는 자기복원 및 비-자기복원 커패시터로 용량이 0.1 μ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 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해당 제품명 명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75 V, 60 Hz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용량과 허용오차
- ◆ 정격전압
- ◆ 방전 저항기가 있을 때, 그 기호
- ◆ 전류 퓨즈가 있을 때, 그 기호
- ◆ 정격주파수나 주파수 범위
- ◆ 정격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예를 들면 -10 °C/70 °C)
- ◆ 자기복원 커패시터의 기호
- ◆ 직렬로 동작하기 위한 비-자기복원 커패시터의 경우
 -복원 기호가 있는 커패시터에 위 기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비고) 이 형식의 커패시터는 주 전원 사이에 연결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 ◆ 적용에 따른 A형 또는 B형
 - 방전 저항기가 있을 때, 그 값의 선언
 - 커패시터가 (tc+10) °C에서 액체 상태인 성분의 포함 여부 선언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048의 6항과 KC 61049의 5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100 Hz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기기용 접속기류

적용기준

KC 60320-1,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065, 오디오·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배선과 코드의 접속 또는 코드 상호간에 접속 사용하는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으로 전원분배기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상호연결커플러(커넥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 10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 전압조절장치의 조정 없이 적용 가능한 정격 전압범위
- ◆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류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20-1의 8항과 KC 60065의 5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안전인증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상호연결커플러

적용기준


- KC 60320-1,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C 60320-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 2-1부: 재봉기커플러
- K 60320-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 2-2부: 가정용 및 유사설비의 상호연결 커플러
- KC 60320-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 2-3부: 보호 등급이 IPX0이상인 기기용 커플러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상호연결 커플러(appliance coupler)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전원용 전기 기기 또는 기타 전기 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이다.
정격전압 250 V 이하, 정격전류 16 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인증

- **제품명**: 상호연결 커플러(기기용인렛 / 커넥터)
- **모델명**: KPSA-1100
- **정 격**: 250 V~, 10 A
- **제조년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전류(A)
- ◆ 정격 전압(V)
- ◆ 공급 전원 종류의 기호
- ◆ 기기용 콘센트는 제조회사 또는 책임판매자의 이름, 상표 표시 또는 식별 표시
- ◆ 형식명
- ◆ 나사 없는 단자에 적합한 도체 형식을 나타내는 표시
- ◆ 반대로 끼울 수 없는 커넥터에서는 커넥터의 위치
- ◆ 재연결할 수 있고 뒤집어 쓸 수 없는 플러그연결기에서 단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접지 단자, 중립 단자).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20-1의 8항과 KC 60320-2-1의 8항과 K 60320-2-2의 8항과 KC 60320-2-3의 8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플러그 및 콘센트

적용기준

- KC 6088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884-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1부 : 퓨즈형 플러그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884-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2부 : 기기용 콘센트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884-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3부 : 고정 배선용 인터록이 없는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884-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4부 : SELV의 플러그와 콘센트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884-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5부 : 어댑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884-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6부 : 고정 배선용 인터록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 요구사항
- K 10026,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정격 전압이 50V 이상 440V 이하이고 정격 전류가 32A 이하인 접지극 유/무의 옥내/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플러그 / 콘센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16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접속 기구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정격 전류 A
 - 정격 전압 V
 - 원원 종류의 기호
 - 제조자 및 판매자명, 상표 또는 마크
 - 형번(가탈로그 번호도 가능)
 - 위험물로의 접근과 고형 이물질의 침입에 따른 유해 결과에 대한 보호 등급의 첫 번째 고유 숫자. 만일 2 이상이면 두 번째 고유 숫자도 표시되어야 한다.
 - 침수의 유해 결과에 대한 보호 등급의 두 번째 고유 기호. 만일 0 이상이면 첫 번째 고유 숫자도 표시되어야 한다. 어떤 IP 정격 플러그가 다른 IP 정격을 가진 콘센트에 삽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플러그/콘센트 조합의 최종 보호 등급은 양쪽 중 낮은 쪽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콘센트의 관련된 제조사의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 **나사 없는 단자의 콘센트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도체를 나사 없는 단자에 삽입하기 전에 제거될 절연의 길이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
 - 콘센트가 경도제로만 한다면 제한이 있을 경우 경도제한을 허용하는 적합성 표시
- ◆ **고정형 콘센트에서는 다음의 표시가 주요 부분에 표시되어야 한다. 정격 전류, 정격 전압 및 원원 종류**
 - 상호, 상표 또는 제조자명 표시 또는 판매자명 표시
 - 필요 시 나사 없는 단자의 도선 삽입 전 제거될 절연체 길이
 - 형번
 - 충전선 전용 단자는 N으로 표시
 - 보호 도체의 연결을 위한 접지 단자는 접지 기호로 표시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884-1의 8항과 KC 60884-2-1의 8항과 KC 60884-2-2의 8항과 KC 60884-2-3의 8항과 KC 60884-2-4의 8항과 KC 60884-2-5의 8항과 KC 60884-2-6의 8항과 K 10026의 8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안전인증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케이블릴

적용기준


KC 61242, 전기용품부속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케이블릴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릴에 부착된 유연 케이블과 코드로 이루어지는 장치로 단상 정격전압 250 V 정격전류 16 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 V 정격전류 16 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케이블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케이블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
 - 정격 전압(V)
 - 전원성질의 기호
 - 제조자 또는 책임 판매자의 명칭, 상표 또는 식별 기호
 - 형번
 - IP20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물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의 기호에 규정된 용어
 - 완전히 감긴 상태 및 완전히 신장된 상태에 대해 콘센트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부하(와트수(W))를 나타내고 전압(V)를 추가한다)
(예: 1,500 W-230 V 유연 케이블 완전 감김
3,000 W-230 V 유연 케이블 완전 신장)
 - 중성극 단자(문자 N으로 표시)
 - 유연 케이블의 단면적, 종류 및 길이를 나타내는 표시
 - 보호 접지 단자(기호 접지로 표시)
 - 과대한 온도에 대해 보호되지 않는 케이블 릴은 최대 허용 부하 표시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주지(主旨)를 표시
[경고 : 최대 허용 부하를 초과하면 화재 위험이 있음]
 - 온도 과승 방지 장치 또는 전류 차단 장치를 부착한 케이블 릴에는 리셋 방법을 표시한다.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242의 7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퓨즈]

퓨즈

적용기준

- K 60127-1, 소형 퓨즈 제1부: 소형 퓨즈의 정의 및 소형 퓨즈링크의 일반 요구사항
- KC 60127-2, 소형 퓨즈 제2부: 통형 퓨즈링크
- KC 60127-3, 소형 퓨즈 제3부: 초소형 퓨즈링크
- KC 60127-4, 소형 퓨즈 제4부: 유니버설 모듈 퓨즈링크
- KC 60127-6, 소형 퓨즈 제6부: 소형 퓨즈링크용 퓨즈홀더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제품 또는 그 부품들을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가용체의 재료는 납, 주석, 아연 또는 이 들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으로서, 전류가 정해진 시간 이상동 안 제시된 값을 초과할 때 특별히 고안된 부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녹임으로써 회로를 개방시키도록 만들어진 장치이다.
정격전류가 20 mA 이상 10 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퓨즈
- 모델명 : KPSA-1100
- 시간/전류 특성을 나타내는 기호 : F
- 정 격 : 250 V, 200 mA
- 정격차단용량을 나타내는 기호 : L
- 정격차단용량 : 35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1 A 미만의 정격전류는 mA단위로 표시하고, 1 A 이상의 정격전류는 A 로 표시한다. 정격전류는 정격전압보다 앞서 표기하되, 정격전압에 인접하게 표시한다.
- ◆ 정격전압은 V 로 표시
- ◆ 제조자의 이름이나 상표
- ◆ **관련 표준시트에 주어진 대로 상대 용단 시간/전류 특성을 나타내는 기호 표시**
이 기호는 정격전류보다 앞서되 정격전류에 인접하게 표시한다. 이들 기호는 다음과 같다.
FF : 매우 빠른 동작 표시
F : 빠른 동작 표시
M : 중간 시간 지연 표시
T : 시간 지연 표시
TT : 긴 시간 지연 표시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127-1의 6항과 KC 60127-2의 6항과 KC 60127-3의 6항과 KC 60127-4의 6항과 KC 60127-6의 6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안전인증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퓨즈]

온도퓨즈

적용기준


KC 60691, 온도퓨즈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금속성분이 일정한 경우 용점이 변화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실내 사용의 전기제품, 전자장비와 부속품에 결합되어 이상 상태 시 과도한 온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로를 차단하는 재설정이 불가능의 장치이다. 동작온도가 80℃ 초과 28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온도퓨즈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사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각 온도 퓨즈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 모델명 또는 관련 카탈로그
- ◆ 제조자의 이름 또는 상표
- ◆ 정격 동작 온도(Tf 기호 삽입가능)를 섭씨온도로 표시(℃ 또는 C로 표시)
- ◆ 온도 퓨즈 표면이나 가장 작은 표장에 최소 10년 동안 중복될 수 없는 제조일자 코드와 공장위치 코드 표시
 비교 1) 만약 공장이 하나만 있다면, 공장위치의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정격 동작 온도 Tf의 표시는 다른 모델명 또는 관련 카탈로그가 각기 다른 동작 온도에 대해 사용된 경우 생략될 수 있다. 크기가 허용된다면 정격전압(V), 정격전류(A), 그리고 기타 필요한 표시사항이 온도 퓨즈에 표시될 수 있다.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691의 7항 및 8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기기보호용 차단기

적용기준

KC 60934, 기기보호용 차단기(CBE)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금속성분이 일정한 경우 용점이 변화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실내 사용의 전기제품, 전자장비와 부속품에 결합되어 이상 상태 시 과도한 온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로를 차단하는 재설정이 불가능의 장치이다. 동작온도가 80℃ 초과 28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기기보호용 차단기
- 모델명 : KPSA-1100
- 극 수 : 1상, 2선식
- 정 격 : 250 V, 20 A
- 정격차단용량 : 2.5 k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제조자의 명칭 또는 상표, 형식명 또는 제조번호의 표시는 제조자로부터 얻은 전체의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 기기, 가능한 한 명판에 표시되어야 한다.
 - 조작용의 위치 표시(7.1.6.1, 7.1.6.2 참조)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승인 또는 인증 표시
 - 소형화된 기기의 경우, 기호, 색코드, 또는 문자기호
 - 단자식별 및 표시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IP코드와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등급(가능한한 기기상에 표시)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이격에 대한 적합성은, IEC 60617-7, 07-01-03의 이격기능의 기호로부터, 기기에 대해 적절한 기능의 기호를 조합해서 완성시켜도 좋다.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934의 6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기기보호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적용기준

- KC 608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 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KC 6094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 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교류용 차단기
- KC 60947-2, 저압 개폐 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통상적으로 회로를 수동으로 개폐할 수가 있고, 과부하 및 단락일 경우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하여 접속기기 또는 하위 선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로, 정격전류가 300 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배선용차단기
- 모델명 : KPSA-1100
- 극 수 : 1상 2선식
- 정 격 : 250 V, 20 A
- 정격차단용량 : 2.5 kV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표시는 지워지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 제조자의 명칭 또는 상표, 형식명 또는 제조번호의 표시는 제조자로부터 얻은 전체의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 기기, 가능한 한 명판에 표시되어야 한다.
 - 조작기의 위치 표시(7.1.6.1, 7.1.6.2 참조)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승인 또는 인증 표시
 - 소형화된 기기의 경우, 기호, 색코드, 또는 문자기호
 - 전자식별 및 표시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IP코드와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등급(가능한 한 기기상에 표시)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이격에 대한 적합성은, IEC 60617-7, 07-01-03의 이격기능의 기호로부터, 기기에 대해 적절한 기능의 기호를 조합해서 완성시켜도 좋다.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898-1의 6항과 KC 60947-1의 5항과 KC 60947-2의 5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기기보호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적용기준

- KC 608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 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K 6094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 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교류용 차단기
- KC 60947-2 저압 개폐 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 KC 6100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 6100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RCCB)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통상적으로 회로를 수동으로 개폐할 수가 있고, 누전 또는 과부하 및 단락일 경우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하여 인체 및 접속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이자 정격전류가 300 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과부하보호·단락검용보호 겸용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누전차단기
- 모델명 : KPSA-1100
- 극 수 : 1상 2선식
- 정 격 : 250 V, 20 A
- 정격감도전류 : 15 mA
- 정격부동작전류 : 15 mA
- 동작시간 : 0.03 초
- 정격차단용량 : 2.5 k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표시는 지워지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 제조자의 명칭 또는 상표, 형식명 또는 제조번호의 표시는 제조자로부터 얻은 전체의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 기기, 가능한 한 명판에 표시되어야 한다.
 - 조작기의 위치 표시(7.1.6.1, 7.1.6.2 참조)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승인 또는 인증 표시
 - 소형화된 기기의 경우, 기호, 색코드, 또는 문자기호
 - 단자식별 및 표시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IP코드와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등급(가능한 한 기기상에 표시)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이격에 대한 적합성은, IEC 60617-7, 07-01-03의 이격기능의 기호로부터, 기기에 대해 적절한 한 기능의 기호를 조합해서 완성시켜도 좋다.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 60947-1의 5항과 KC 60947-2의 5항과 KC 61008-1의 6항에 K 61009-1의 6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압조정기

적용기준

KC 61558-1,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1558-2-13,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한 기기의 안전 제 2-13부 : 범용단권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출력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단계변환식인 것과 수동/자동전압조정기 등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압조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20 V, 60 Hz
- 정격출력전압 : 220 V
- 정격출력 : 1 000 V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역율(정격출력이 25 VA 초과하고 역율이 10이 아닌 경우)
- ◆ 변압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 ◆ 2종 구조에 해당하는 기호
- ◆ IP에 대한 표시
- ◆ 정격 최고 주위온도
- ◆ 작동 시간 및 휴지 시간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588-1의 8항과 KC 61588-2-13의 8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용량 5 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적용기준

KC 61558-1,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1558-2-13,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한 기기의 안전 제 2-13부 : 범용단권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압조정기능을 갖지 않는 것으로서, 전자유도작용에 의해서 전압을 변환하는 장치를 말하며, 220 V로 승압을 하거나 110 V로 강압을 하는 것과 주로 가정용 전원을 1차 입력전원으로 하고, 2차 전압은 1차 측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요구되는 기기전용의 변압기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가정용 소형변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20 V, 60 Hz
- 정격출력전압 : 220 V
- 정격출력 : 1 000 V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역률
(정격출력이 25 VA 초과하고 역률이 10이 아닌 경우)
- ◆ 변압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 ◆ 2중 구조에 해당하는 기호
- ◆ IP에 대한 표시
- ◆ 정격 최고 주위온도
- ◆ 작동 시간 및 휴지 시간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588-1의 8항과 KC 61588-2-13의 8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용량 5 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교류어댑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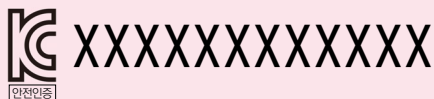
KC 61558-1,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1558-2-6,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한 기기의 안전 제 2-6부 : 범용 절연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정용 전기제품에 사용되도록 의도된 변압기로 입력 권선과 출력 권선 사이의 보호를 위해서 절연 및 분리되어 있으며 정격 출력전압 50 V 이하인 변압기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교류어댑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20 V, 60 Hz
- 정격출력전압 : 220 V
- 정격출력 : 1 000 V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역율
(정격출력이 25 VA 초과하고 역율이 10이 아닌 경우)
- ◆ 변압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 ◆ 2중 구조에 해당하는 기호
- ◆ IP에 대한 표시
- ◆ 정격 최고 주위온도
- ◆ 작동 시간 및 휴지 시간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588-1의 8항과 KC 61588-2-6의 8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용량 5 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부: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6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9부: 파워 브러시가 부착된 산업용 및 상업용 건식·습식 전기진공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모터에 의한 공기흡입으로 이물질을 빨아 들여 청소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진공청소기
- 모델명: KPSA-1100
- 정 격: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진공청소기**
 - (1) 기기에 콘센트가 있는 경우
 - 정격 입력과 기기 콘센트 최대 부하의 합을 표시
 - 부속품용 기기 콘센트에는 최대 부하(W)를 표시
 - (2) 전동식 청소헤드가 있는 경우 하기 표시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V)
 - 정격 입력(W)
 - 제조자 또는 책임공급자의 이름, 상표 또는 식별 표시
 - 모델명이나 형식명
 - (3) 동물용 제품IPX 4
- ◆ **진공청소기(상업용)**
 - 제조업체의 업종 명칭 및 주소 및 해당 시, 정식 담당자, 특정 주소는 우편 연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 해당 시, 일련 번호
 - 제품을 기술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기기 명칭 및 시리즈 또는 종류
 - 제조연도, 이는 제조 공정이 완료된 연도
 - 바퀴 및 기타 이동식 기기가 장착된 기기는 가장 일반적 구성의 부피를 kg으로 표시
 - (1) 전동 청소 헤드
 -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를 volt 단위로 표시
 - 정격 입력 전원을 watt 단위로 표시
 - 제조사 또는 해당 공급 업체의 상호, 상표 또는 식별 표시
 - 모델 또는 종류 참고 정보
 - 가장 일반적 구성의 부피를 kg으로 표시
 - (2) 작동 전압이 최대 24V인 III종 구조를 제외한 물 흡입 청소기의 전동 청소 헤드
 - 기호 IEC 60417-5935 (2002-10)를 표시
 - (3) 부속품의 소켓 콘센트
 - 소켓 콘센트 표면 또는 인접한 위치에 최대 부하를 watt로 표시
 - (4) 물흡입 기기 IPX4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 KC 60335-2-69 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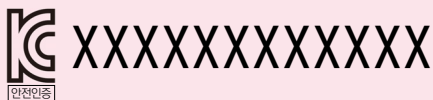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부 :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모터에 의한 물기를 흡입함으로써 이물질을 빨아 들여 청소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물흡입청소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IPX4
 - (1) 기기에 콘센트가 있는 경우
 - 정격 입력과 기기 콘센트 최대 부하의 합을 표시
 - 부속품용 기기 콘센트에는 최대 부하(W)를 표시
 - (2) 전동식 청소헤드가 있는 경우 하기 표시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V)
 - 정격 입력(W)
 - 제조자 또는 책임공급자의 이름, 상표 또는 식별 표시
 - 모델명이나 형식명
 - (3) 물흡입 청소를 위한 전동식 청소헤드가 있을 경우
 - 기호(IEC60417-5935(2002-10) 기호의 높이는 최소 15 mm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바닥청소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부: 마루 청소기 및 물걸레 청소기의 개별 요구 사항
 KC 60335-2-6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7부: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7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2부: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자동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광택을 내거나 물걸레 청소 혹은 용단의 세탁 등과 같이 마루나 바닥청소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바닥청소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바닥청소기(가정용) (표시사항 내용 없음)
 - ◆ 전기바닥청소기(상업용)
 - (1) 모터구동용 청소 헤드가 있는 경우 하기 내용 표시
 - 정격전압 또는 정격전압범위를 V 로 표기
 - 정격소비전력을 W 로 표기
 - 제조자 또는 책임자의 이름, 상표 혹은 식별 표시
 - 모델이나 형식
 - (2) 24 V 이하의 동작전압을 가지는 3중 구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물흡입 청소기에 관한 전동기 구동형 청소용 헤드가 있는 경우 - IEC 60417-5935 기호를 표시
 - (3) 추가 부품을 위한 기기 콘센트가 있는 경우 - 최대 부하(W) 표시
 - 3. 주로 실내용을 위해 공급되어 건조 청소용만으로 의도된 기기 이외의 제품 - IPX(4)
 - ◆ 전기바닥청소기
 - 일련번호 표시와 제조연도
 - 기기가 100 kg이 넘는 경우 기기의 전체중량(단위 : kg)
 - KS C IEC 60335-2-69의 부속서 AA에 따른 유해 먼지 흡입 용량에 관한 참고사항
 - 유해먼지 흡입이 가능한 기기인 경우 "유해 먼지 흡입용"이라는 문구
 - 최소 2가 되는 X의 값과 함께 운전 최대 경사도를 지시하는 심벌
 - (2) 모터 달린 청소기 헤드는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 정격전압 또는 정격전압 범위
 - 정격입력
 - 이름, 상표 또는 제조자나 책임 있는 판매자의 식별표시
 - 모델 또는 형식
 - (3) 동작전압 24 V를 넘는 3중 구조의 기기를 제외한 물 흡입 청소기를 위한 모터 달린 청소기 헤드 - IEC 60417-5935의 심벌을 표시
 - (4) 부속품을 위한 아웃렛이 있는 경우
 - 와트로 최대 부하를 표시
 - (5) 주전원과 배터리에 의해 동력이 공급되는 건식 세척 전용 실내용 기기 이외의 제품
 - IPX3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0, KC 60335-2-67, KC 60335-2-7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5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4부 : 액체 또는 증기 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 및 전열장치를 이용하여 액체 또는 증기를 분사하여 창(유리), 벽(타일), 바닥 등의 표면을 청소(세척)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표면세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표면세척기
 - IPX4
 - (1) 액체를 분배하는 1 종 및 2 종 수직형 기기
 - IPX7
 - (2) 급수 주관에 연결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 최대 허용 수압(Mpa)을 표기
 - (3) 온도가 50 ℃ 를 초과하는 스팀 청소기, 벽지 제거기 및 액체 분배 기기
 - 기호 IEC 60417-5597 (2002-10) 또는 경고 : 데일 위험이 있음 문구 표기
 - (4) 부속품의 기기 출구가 있는 경우
 - 그 최대 부하(W)를 표기
 - 정격 입력 전력과 기기 출구의 최대 부하의 합을 기기에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스팀청소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5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4부 : 액체 또는 증기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열장치를 이용, 증기를 분사하여 바닥 등의 표면을 청소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스팀청소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스팀청소기

- IPX4
- (1) 액체를 분배하는 1 종 및 2 종 수저형 기기
- IPX7
- (2) 급수 주관에 연결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 최대 허용 수압(Mpa)을 표기
- (3) 온도가 50℃를 초과하는 스팀 청소기, 벽지 제거기 및 액체 분배 기기
- 기호 IEC 60417-5597 (2002-10) 또는 경고 : 데일 위험이 있음 문구 표기
- (4) 부속품의 기기 출구가 있는 경우
- 그 최대 부하(W)를 표기
- 정격 입력 전력과 기기 출구의 최대 부하의 합을 기기에 표기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스팀해빙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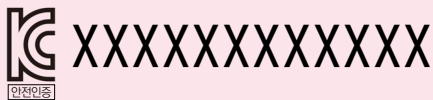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5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4부 : 액체 또는 증기 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열장치를 이용, 스팀을 분사하여 해빙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스팀해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팀해빙기
 - IPX4
 - (1) 액체를 분배하는 1 종 및 2 종 수지형 기기
 - IPX7
 - (2) 급수 주관에 연결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 최대 허용 수압(Mpa)을 표기
 - (3) 온도가 50℃를 초과하는 스팀 청소기, 벽지 제거기 및 액체 분배 기기
 - 기호 IEC 60417-5597 (2002-10) 또는 경고: 데일 위험이 있음 문구 표기
 - (4) 부속품의 기기 출구가 있는 경우
 - 그 최대 부하(W)를 표기
 - 정격 입력 전력과 기기 출구의 최대부하의 합을 기기에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고압세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7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9부: 산업용과 상업용의 고압 청소기와 증기 청소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열장치를 이용, 증기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표면을 청소하기 위한 기기이며, 정격입력 3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고압세척기
- 모델명: KPSA-1100
- 정 격: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고압세척기
 - 제조업체의 인증 명칭 및 주소 및 해당 시, 정식 담당자, 주소는 우편 연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 해당 시, 일련 번호
 - 제품을 기술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기기 명칭 및 시리즈 또는 종류.
 - 제조연도(제조 공정이 완료된 연도)
 - 정격 압력(pascal 단위)
 - 허용 압력(pascal 단위)
 - 정격 유량(분당 리터 단위)
 - 필요 시, 최대 유량(분당 리터 단위), 유량 표시의 수는 2개소로 제한한다.
 - 50 °C를 초과할 경우 최대 정격 온도
 - 해당 시 온수기의 최대 전원(kW 단위)
 - 기기 유형에 맞는 IPX등급 표기
 - (1) 바퀴나 기타 이동식 장치나 장착된 기기
 - 가장 유출한 구성의 부피를 kg으로 표시
 - (2) 하터 가스 배출을 위한 플루 또는 덕트 표면의 온도 상승이 60K를 초과할 경우
 - 경고 뜨거운, 만지지 말 것.
 - (3) 스팀 청소기
 - 기호 IEC 60417-5597(2002-10) 표시
 - (4) 휴대용 급수 본관에 연결되지 않는 기기
 - 그림 104에 따른 기호로 표시
 - (5) 옥내용으로 LPG 구동 엔진을 제외한, 내부 연소 엔진으로 구동되는 기기의 경우
 - 그림 105에 따른 기호를 표시
 - (6) 모든 고압 호스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압력은 파스칼 또는 바 단위의 최소 허용 압력.
 - 실제 온도 단위의 최대 온도
 - 제조사 인증 이름 및 생산 날짜
 - (7) 모든 고압 부속품(트리거 건 분사기 렌스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 최소한 허용 압력을 파스칼 또는 바로 표시
 - 최대 온도(실제 온도 기준)
 - (8) 작동 청소 헤드는 다음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의 범위가 Volt 단위로 표시
 - 정격 소비전력이 Watt 단위로 표시
 - 제조사 또는 도매상의 상호, 상표 또는 식별 표시
 - 모델 또는 종류 참조
 - (9) 3중 구조를 제외한 물 흡입 청소기용 모터 구동 세척 헤드
 - 동작 전압이 최대 24 V 라는 것을 IEC 60417-5935(2002-10)에 맞추어 표시
 - (10) 부속품 소켓 콘센트
 - 소켓 콘센트 또는 인접한 곳에 와트 단위의 최대 부하를 표시
 - (11) 부속품을 위한 전원 아웃렛
 - 최대 부하를 Watt 단위로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7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전기건조다리미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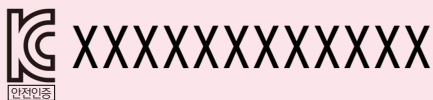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부 : 전기 다리미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주로 시이즈식 전열장치로부터 발생된 열로 가열시킨 가열 판을 이용하여 옷 등의 직물류를 눌러 다리는 것으로서 보통은 직물류에 따라 온도설정이 가능토록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음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다리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다리미**
 - (1) 개별 받침대 표시사항
 - 명칭, 상표, 제조사 또는 책임 판매사의 식별 표시
 - 받침대의 모델이나 타입
 - (2) 무선 다리미 받침대 표시사항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 정격 입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스팀다리미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부 : 전기 다리미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주로 시이즈식 전열장치로부터 발생된 열로 가열시킨 가열 판을 이용하여 옷 등의 직물류를 눌러 다리는 것으로서 보통은 직물류에 따라 온도설정이 가능토록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스팀을 분사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스팀다리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스팀다리미

- (1) 개별 받침대 표시사항
 - 명칭, 상표, 제조사 또는 책임 판매사의 식별 표시 모델이나 타입
- (2) 무선 다리미 받침대 표시사항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 정격 입력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바지 프레스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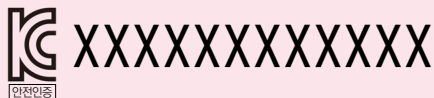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4부 : 전기 주름 펴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바지 세탁물을 가열판이나 회전하는 롤러를 이용하여 주름을 펴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바지 프레스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교환할 수 있는 일반 조명용 램프의 최대 입력
- ◆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기기는 MPa로 최대 기압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주름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4부 : 전기 주름펴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직물 표면에 증기를 직접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로부터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주름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극식 기기는 정격 입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다리미질 프레스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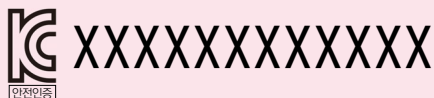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4부 : 전기 주름 펴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직물 표면에 가열판 등을 이용, 압력을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로부터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다리미질 프레스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교환할 수 있는 일반 조명용 램프의 최대 입력
- ◆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기기는 MPa로 최대 기압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레인지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hob,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곤로와 전기오븐 또는 전기토스트의 기능을 겸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레인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오븐기기

적용기준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 KC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밀폐된 용기 내에 발열체를 갖고 있는 기구로서 발열체에 의한 복사열 및 대류열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오븐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오븐기기(휴대형)
기기에 접근 가능한 표면이 있는 경우 “주의 : 표면 뜨거움”
- ◆ 전기오븐기기(거치형)
- ◆ 전기오븐기기(상업용)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IPX3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이상
 - (1) 사용설명서에 표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기기에 대한 수압 또는 압력 범위(단위: kPa)
 - (2) 250V를 초과하는 동차전압의 충전부에 접근이 가능한 덮개가 있을 경우
 - 덮개에 위험전압 또는 위험전압은 나타내는 기호(KS X IEC 60417-1의 기호 5036)를 표시해야 한다.
- ◆ 전기오븐기기(상업용 강제 대류식, 스팀형)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IPX3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이상
 - (1) 사용설명서에 표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기기 또는 스팀 발생기에 대한 수압 또는 압력 범위(단위: kPa)
 - 기기의 압력부에 대한 정격 압력(단위: kPa)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의 7항과 KC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거치식그릴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식품을 격자 또는 꼬치로 지지해서 방사열로 조리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거치식그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거치식그릴(상업용)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IPX3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이상
- (1) 사용설명서에 표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기기에 대한 수압 또는 압력 범위(단위: kPa)
- (2) 250V를 초과하는 동작전압의 충전부에 접근이 가능한 덮개가 있을 경우
- 덮개에 위험전압 또는 위험전압은 나타내는 기호(KS X IEC 60417-1의 기호 5036)를 표시해야 한다.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IPX3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이상
-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기기에 대한 수압 또는 압력 범위(단위: kPa)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IPX3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이상
- 수도관 직결식 기기인 경우 설명서에 나타나있지 않으면 수압이나 압력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단위: kPa)
- 청소시 부분적으로 물에 담그는 기기는 최대 침수 레벨 및 다음의 내용은 표시해야 한다. '이 레벨은 초과하여 침수하지 마시오.'
- IPX4 이상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호브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호브면 및 하나 이상의 호브 소자를 갖춘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호브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곤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3부 : 전기 튀김기, 전기 프라이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프라이팬 등을 가열할 수 있는 전열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곤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가열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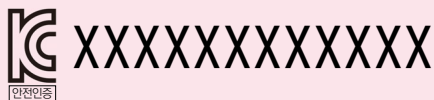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독립적인 조리나 보온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가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기]

전기로스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얇게 썬 식빵을 굽기 위한 전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토스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에 접근 가능한 표면이 있는 경우 “주의 : 표면 뜨거움”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IPX3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이상
 - 수도관 직결식 기기인 경우 설명서에 나타나있지 않으면 수압이나 압력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단위: kPa)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프라이팬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3부 : 전기 튀김기, 전기 프라이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접시형상 또는 냄비 형상의 용기를 갖고 조리를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프라이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개별 규격에서 요구하는 추가 표시사항 없음
 - 수도에 연결하도록 설계된 기기, 수압 또는 압력 범위.
 - 사용설명서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기기의 가압 부품에 대한 정격압력(단위:kPa)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휴대형그릴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에 의한 복사열 및 대류열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전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휴대형그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휴대형그릴

- (1) 세척 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인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수위를 표시하고 표시된 수위 이상을 물에 담그지 말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2) 기기에 접근 가능한 표면이 있으며 표102의 온도 규제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 표102의 각주 b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색상을 제외하고 ISO 3864-1의 규정을 적용한 IEC60417-5041(2002-10)의 심벌을 기기에 표기하거나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의: 표면 뜨거움.'
- (3) 옥외용 기기일 경우
 - IPX4 이상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고기구이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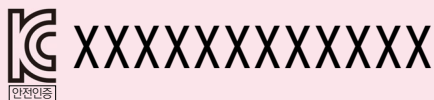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고기를 조리할 수 있는 전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고기구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청소시 부분적으로 물에 담그는 기기는 최대 침수 레벨 및 다음의 내용은 표시해야 한다. 이 레벨은 초과하여 침수하지 마시오.'
- ◆ IPX4 이상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와플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반죽을 담기 위한 형상을 한 기기로 두 개의 가열된 경첩 판을 포함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와플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주방용 전열기구]

핫플레이트

적용기준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 KC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상판 평면에 하나 이상의 조리할 수 있는 발열부를 가지는 전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핫플레이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유도호브소자를 지닌 기기**
 - 유도호브소자의 총 정격입력전력 또는 정격전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 ◆ **핫플레이트가 조리레인지의 일부일 경우**
 - D형 퓨즈를 제외하고 조리레인지가 퓨즈로 소켓콘센트를 보호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퓨즈의 정격전류를 표시해야 한다. 소형 퓨즈링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에 퓨즈링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차단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 ◆ **인덕션 방식 핫플레이트(복합기기인 경우)**
 - 입력 전력이나 전류를 추가 표기해야 한다.
- ◆ **세척 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인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수위를 표시하고 표시된 수위 이상을 물에 담그지 말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 **기기에 접근 가능한 표면이 있으며 표102의 온도 규제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 표102의 각주 b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색상을 제외하고 ISO 3864-1의 규정을 적용한 IEC60417- 5041(2002-10)의 심벌을 기기에 표기하거나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의: 표면 뜨거움.'
- ◆ **옥외용 기기일 경우** : IPX4 이상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의 7항과 KC 6033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기세탁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 : 세탁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옷과 옷감의 세탁을 위한 목적의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세탁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표준 세탁 용량(kg)과 세탁조의 용적(L)
- ◆ IPX4
- ◆ 자동 수위 조절이 없는 기기
 - 최대 수위를 표시
- ◆ 온수에 연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 전열소자가 없는 기기
 - 주의 : 온수에 연결하지 마시오
- ◆ 드럼세탁기 안전사고(감함) 방지를 위한 아래와 같은 경고문 구나 도안을 제품 전면의 보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예) 어린이가 세탁기에 들어가면 안전사고(감함)가 발생하므로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기탈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부 : 전기 탈수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회전용 드럼을 가지고 원심력으로 의류 등의 물을 짜내는 것으로서 탈수기 전용의 것이 있으나 세탁기에 내장되어 탈수기 기능을 하는 겸용 제품이 주를 이룸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탈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위치의 꺼짐 위치가 문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단어 "꺼짐"을 사용
- ◆ IPX4
- ◆ 아파트 단지에서 상업용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으며 덮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통전시켜야 하는 연동장치가 있는 기기는 사용설명을 기기에 표기하지 않는 한 다음의 내용을 명시한 라벨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이 회전탈수기는 덮개를 열 수 있기 전에 전원에 접속하여야 한다. 무리한 힘을 가해 열지 않는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모발관리기]

모발건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람 또는 동물의 모발을 손질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모발건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경고 : 이 기기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 것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모발관리기]

전기머리인두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모발을 손질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머리인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경고 : 이 기기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 것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모발관리기]

모발말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모발을 말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모발말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경고 : 이 기기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 것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주 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등의 재료를 찌꺼기(residue)와 주스(juice)로 분리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주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주서(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주서(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주서믹서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등의 재료를 찌꺼기(residue)와 주스(juice)로 분리 및 혼합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주서믹서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주서믹서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주서믹서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후드믹서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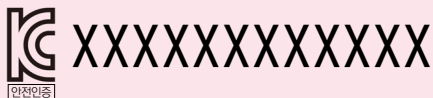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음식 재료를 혼합(mixing)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후드믹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후드믹서(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후드믹서(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녹즙기

적용기준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계적 압착을 이용하여 야채의 즙을 얻어 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녹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녹즙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전기녹즙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크림거품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크림의 거품을 얻어 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크림거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크림거품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크림거품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계란반죽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계란을 반죽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계란반죽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계란반죽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계란반죽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켜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혼합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등의 식재료를 혼합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혼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혼합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혼합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켜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버터제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버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버터제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버터제조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버터제조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압즙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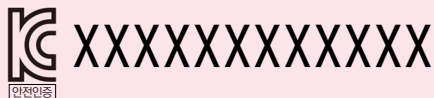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압착하여 즙을 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압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압즙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압즙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슬라이스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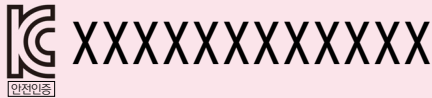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식재료 등을 얇게 썰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슬라이스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슬라이스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슬라이스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칼같이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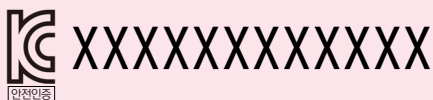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칼을 갈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칼같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칼같이(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전기칼같이(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켜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강통따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강통을 딸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강통따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강통따개(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전기강통따개(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칼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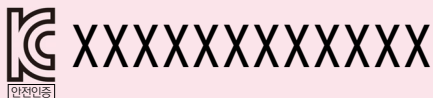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를 이용하여 사용되는 칼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칼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칼(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전기칼(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켜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커피분쇄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커피를 분쇄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커피분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커피분쇄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커피분쇄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빙삭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얼음을 잘게 갈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빙삭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빙삭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빙삭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고기갈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고기 등의 음식을 잘게 자르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고기갈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고기갈개(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전기고기갈개(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국수제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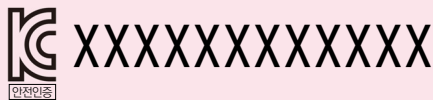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국수의 면을 만들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국수제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국수제조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전기국수제조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육절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고기를 원하는 크기 만큼 자르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육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육절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전기육절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켜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골절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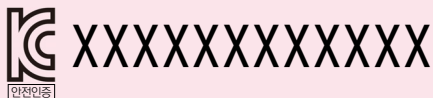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뼈를 원하는 크기 만큼 자르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골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골절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전기골절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켜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꺼짐” 시간 표시가 “켜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법률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히터에 의한 액체의 가열 및 음식을 가열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압력용기 등이 내장되어 있는 압력 조리기도 있음)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밥솥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압력 조리기기의 경우
 - 뚜껑이 닫힌 상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뚜껑이 닫혔을 때의 올바른 위치를 기기에 표시해야 한다.
- ◆ 전기압력솥의 경우
 - 정격압력
 - 제품명에 압력식임을 명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보온밥솥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열부를 이용하여 액체 및 음식을 가열 하고 보온하는데 사용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보온밥솥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압력 조리기기의 경우
 - 뚜껑이 닫힌 상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뚜껑이 닫혔을 때의 올바른 위치를 기기에 표시해야 한다.
- ◆ 전기압력솥의 경우
 - 정격압력
 - 제품명에 압력식임을 명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주전자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열부를 이용한 주전자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주전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정격용량을 초과하여 주전자를 채울 수 없는 경우
 통상 사용시 볼 수 있는 수위표시나 그 밖의 수단
- ◆ 무전 주전자 전용 받침대
 제품명, 상표 또는 제조사나 책임 판매 업체의 식별표시 모델 또는 종류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냄비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열부를 이용한 냄비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냄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수도에 접촉하는 기기에
대하여는 수압 또는 수압의 범위를 kPa로 표시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물끓이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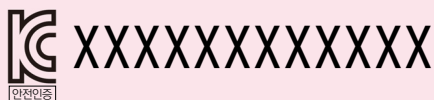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열부를 이용하여 액체를 끓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물끓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약탕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약재를 이용 탕을 만들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약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커피메이커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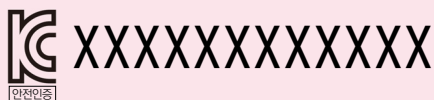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물 또는 증기압에 의해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제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커피메이커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커피메이커
 - (1)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2)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 권장안전사용기간
- ◆ 커피메이커(상업용)
 - (1)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2) 물 분사 사용 및 세척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3) 기기의 정격압력(단위 : MPa)
 - (4)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기기인 경우, 최대허용수압 (단위 : MPa)
 - (5) 수동으로 물 채우는 기기:수위표시 또는 창각이나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
 - (6)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7) 기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물에 담그게 되는 기기: 최대허용수위 표시 및 "표시된 수위 이상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스팀쿠커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증기압에 의하여 요리를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스팀쿠커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달걀조리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달걀을 조리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달걀조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우유가열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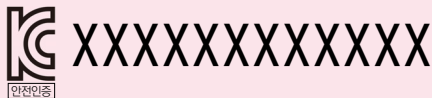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우유 및 액체를 가열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우유가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젓병가열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미리 결정된 온도로 물을 통하여 아기 젓병을 가열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젓병가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요구르트제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요구르트제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증기압에 의하여 요리를 할 수 있는 기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인증

- **제품명** :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물에 담그는 최대 레벨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담요, 매트, 전기침대]

전기요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용자가 밑에 깔고 사용하는 담요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숙독하십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아의 사용 금지
 - 담요와 매트리스의 방향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 전기요에는 (PTC발열소자 제외)
 -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 분리할 수 있는 커버에는 ISO 7000-0790
- ◆ 담요와 분리할 수 있는 커버
 - 명시한 세탁 기호
 - 손세탁 가능
 - 세탁하지 말 것
-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담요, 매트, 전기침대]

전기매트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내부에 발열체를 포함한 유연부로 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매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숙독하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아의 사용 금지
 - 담요와 매트리스의 방향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 전기요에는 (PTC발열소자 제외)
 -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 분리할 수 있는 커버에는 ISO 7000-0790
- ◆ 담요와 분리할 수 있는 커버
 - 명시한 세탁 기호
 - 손세탁 가능
 - 세탁하지 말 것
-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담요, 매트, 전기침대]

전기카펫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거실이나 넓은 방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발열체를 포함한 유연성 있는 융 재질의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전기카펫
- 모델명: KPSA-1100
- 정 격: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속독하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아의 사용 금지
 - 담요와 매트리스의 방향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 전기요에는 (PTC발열소자 제외)
 -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 분리할 수 있는 커버에는 ISO 7000-0790
- ◆ 담요와 분리할 수 있는 커버
 - 명시한 세탁 기호
 - 손세탁 가능
 - 세탁하지 말 것
-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담요, 매트, 전기침대]

전기장판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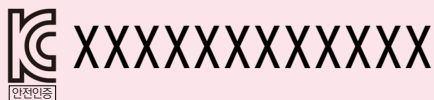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용자가 밑에 깔고 사용하는 유연성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장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속독하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아의 사용 금지
 - 담요와 매트리스의 방향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 전기요에는 (PTC발열소자 제외)
 -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 분리할 수 있는 커버에는 ISO 7000-0790
- ◆ 담요와 분리할 수 있는 커버
 - 명시한 세탁 기호
 - 손세탁 가능
 - 세탁하지 말 것
-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담요, 매트, 전기침대]

전기침대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 1000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침대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기 안에 전열소자가 있고 그 위의 표면이 돌판 또는 침대형태를 가진 절연체로 덮여 있는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침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설명서를 읽으시오
- ◆ 보료에 핀을 꽂아 넣지 마시오
- ◆ 젖은 채로 사용하지 마시오
- ◆ 신체 부자유자나 유아 또는 열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마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방식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한면이 0.3 m² 이하의 발열 면적을 갖는 유연부로 구성되어 인체의 일부를 가열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방식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속독하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아의 사용 금지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K 1002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신체에 접촉하여 일부분에 온열을 가함으로써 신체 일부분을 따뜻하게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찜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속독하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아의 사용 금지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 경고 : 온열에 의한 화상 위험
- ◆ 기기 사용 시, 당뇨병자,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화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를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예) 사용자의 열에 대한 민감 정도에 따라 온열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과 K 1002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발보온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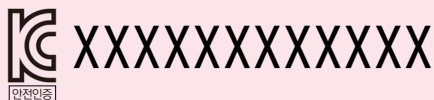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1부: 발 보온기 및 발 보온매트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용자의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발에 신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발보온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용전에 외출용 신발을 벗어라.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온수기]

전기온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1부: 전기 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물을 시이즈 히터 등의 발열체를 사용해서 가열하여 보온탱크 내에 저장하는 전열기로서 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온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압력 표시(파스칼 단위(bar))(물통형 전기 온수기 제외)
- ◆ 정격 용량 표시(리터: L)
- ◆ 물의 입구와 출구 식별(청색은 입구, 적색은 출구)
 - (1) 실외용인 경우: IPX4
 - (2) 기타 전기온수기인 경우: IPX1
 - (3) 밀폐형 전기 온수기인 경우: 기기 자체 감압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기 설치 때 부착해야 한다는 표시
 - (4) 0.6 Mpa보다 작은 정격을 가진 밀폐형 전기 온수기인 경우: 설치 때 감압 밸브 장착해야 한다는 표시
 - (5) 저압 전기 온수기인 경우: 설치 때 감압 밸브 장착해야 한다는 표시
 - (6) 출구 개방형 전기온수기인 경우: 배출구 접속 부분 근처나 기기에 부착된 표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의사항을 표시 “경고 이 배출구는 통기구 역할을 하며 제조자 권유대로 적합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꼭지에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1 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온수기]

순간온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5부 : 순간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탕비기라고도 하며 수도 배관 등에 연결하여 물이 기기를 통해서 흐를 때 히터 등의 전열장치를 이용하여 물을 순간 가열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순간온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순간온수기
 - IPX1
 - 정격 압력 표시(파스칼 단위(bar))
 - 물의 입구와 출구는 식별(청색은 입구, 적색은 출구)
 - (1) 노출 발열체 온수기인 경우
 -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내수성을 표시하고 표시된 값은 1 300 Ωcm이하하여야 한다.
 - (2) 1종 노출 발열체 온수기인 경우
 - 기기가 접지되어야 한다는 문구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냉장·냉동기기

적용기준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
- KC 60335-2-8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9부 : 내장형 또는 원격 냉각 압축기를 가진 상업용 냉동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냉매의 증발열을 이용한 기기로서 주로 콤프레서, 반도체 냉각방식으로 구동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냉장·냉동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A(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가정용 기기
 - 기류등급
 - 램프의 최대 정격 와트(램프가 기기 부품과 함께 제조자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발표제 구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동압축기 타입 기기의 경우
 - 정격전류(A)로만 표기(아이스크림 기기 제외)
 -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2) 그 이외의 기기 경우
 - 정격 전력(W) 혹은 정격 전류(A)로 표기
 - 제상 히터 전력이 기기의 정격 입력 전력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가열 시스템 전력(W)이 100 W보다 큰 경우
 - 가열 시스템 전력(W) 표기
 - (4) 내장형 제빙기이면서 전력이 100 W가 넘는 경우
 - 제빙기 최대 입력전력(W) 표기
- ◆ 상업용 기기
 - 정격 전류(A)로 표기
 - 기류등급
 - 별도의 냉매회로 각각에 대한 냉매의 총질량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발표제 구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열장치의 입력전력(W)이 100 W를 초과할 경우
 - 전열장치 입력전력(W) 표기
 - (2)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백열등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최대 정격 전력(W)
 - (4) 방전램프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정격 전력(W)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4, KC 60335-2-8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제빙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얼음을 만드는 기계이며, 3 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제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A(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가정용 기기
 - 기후등급
 - 램프의 최대 정격 와트(램프가 기기 부품과 함께 제조자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발표제 구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동압축기 타입 기기의 경우
 - 정격전류(A)로만 표기(아이스크림 기기 제외)
 -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2) 그 이외의 기기 경우
 - 제상 히터 전력이 기기의 정격 입력 전력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가열 시스템 전력(W)이 100 W보다 클 경우
 - 가열 시스템 전력(W) 표기
 - (4) 내장형 제빙기이면서 전력이 100 W가 넘는 경우
 - 제빙기 최대 입력전력(W) 표기
- ◆ 상업용 기기
 - 정격 전류(A)로 표기
 - 기후등급
 - 별도의 냉매회로 각각에 대한 냉매의 총질량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발표제 구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열장치의 입력전력(W)이 100 W를 초과할 경우
 - 전열장치 입력전력(W) 표기
 - (2)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백열등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최대 정격 전력(W)
 - (4) 방전램프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정격 전력(W)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4 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아이스크림 프리저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 압축기를 이용하여 고압의 냉매가스를 열교환기(증발기)에서 저압으로 증발하여 냉각시키는 방식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제조에 사용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아이스크림 프리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A(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가정용 기기**
 - 기후등급
 - 램프의 최대 정격 와트(램프가 기기 부품과 함께 제조자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발포제 조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동압축기 타입 기기의 경우
 - 정격전류(A)로만 표기(아이스크림 기기 제외)
 -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2) 그 이외의 기기 경우
 - 제상 히터 전력이 기기의 정격 입력 전력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가열 시스템 전력(W)이 100 W보다 클 경우
 - 가열 시스템 전력(W) 표기
 - (4) 내장형 제빙기이면서 전력이 100 W가 넘는 경우
 - 제빙기 최대 입력전력(W) 표기
- ◆ **상업용 기기**
 - 정격 전류(A)로 표기
 - 기후등급
 - 별도의 냉매회로 각각에 대한 냉매의 총질량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발포제 조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열장치의 입력전력(W) 이 100 W를 초과할 경우
 - 전열장치 입력전력(W) 표기
 - (2)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백열등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최대 정격 전력(W)
 - (4) 방전램프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정격 전력(W)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4 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냉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냉각기를 이용하여 공급된 물을 냉각시켜 냉각수로 만드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냉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A(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가정용 기기
 - 기후등급
 - 램프의 최대 정격 와트(램프가 기기 부품과 함께 제조자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발표제 구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동압축기 타입 기기의 경우
 - 정격전류(A)로만 표기(아이스크림 기기 제외)
 -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2) 그 이외의 기기 경우
 - 제상 히터 전력이 기기의 정격 입력 전력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가열 시스템 전력(W)이 100 W보다 클 경우
 - 가열 시스템 전력(W) 표기
 - (4) 내장형 제빙기이면서 전력이 100 W가 넘는 경우
 - 제빙기 최대 입력전력(W) 표기
- ◆ 상업용 기기
 - 정격 전류(A)로 표기
 - 기후등급
 - 별도의 냉매회로 각각에 대한 냉매의 총질량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발표제 구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1) 전열장치의 입력전력(W)이 100 W를 초과할 경우
 - 전열장치 입력전력(W) 표기
 - (2)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3) 백열등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최대 정격 전력(W)
 - (4) 방전램프 사용의 경우 - 램프의 정격 전력(W)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4 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자레인지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5부 : 전자레인지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음식물을 마이크로파라고 불리는 고주파의 전자파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기기이며, 300 MHz~30 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자레인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자레인지
 - 기기에는 기기가 동작하는 ISM 대역의 공칭 주파수(MHz)를 표시해야 한다.
 - (1) 어떤 덮개를 제거했을 때 32.에 규정한 수치를 초과하는 극초단파 누설이 생기는 경우
 - 다음 내용의 문구가 덮개에 표기되어야 한다. '경 고: 극초단파 에너지이 덮개를 제거하지 말 것.'
 - (2) 전자레인지가 조리호브의 일부일 경우
 - D형 퓨즈 이외의 퓨즈로 보호된 콘센트가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퓨즈의 정격 전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형 퓨즈 링크가 제공된 경우에는 이 표시에 퓨즈 링크가 큰 차단 용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 ◆ 전자레인지(상업용)
 - 기기에는 기기가 동작하는 ISM 대역의 공칭 주파수(MHz)를 표시해야 한다.
 - (1) 어떤 덮개를 제거했을 때 32.에 규정한 수치를 초과하는 극초단파 누설이 생기는 경우
 - 다음 내용의 문구가 덮개에 표기되어야 한다. '경고: 극초단파 에너지이 덮개를 제거하지 말 것.'
 - (2) 전자레인지가 조리호브의 일부일 경우
 - D형 퓨즈 이외의 퓨즈로 보호된 콘센트가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퓨즈의 정격 전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형 퓨즈 링크가 제공된 경우에는 이 표시에 퓨즈 링크가 큰 차단 용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 (3) 기기에 작업 표면 외에 닿을 수 있고 그 온도 상승이 11 의 시험 중에 90 K 를 초과하는 금속 표면이 있는 경우, 이 금속 표면에는 기호 IEC 60417-5041 (2002-10) 또는 다음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주의: 표면 뜨거움.'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충전기]

전기충전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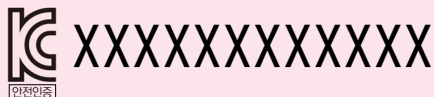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연축전지 및 니켈-카드늄 배터리 등을 충전하기 위하여 교류전원을 직류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충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입력 : AC 220 V 60 Hz 10 mA
- 정격출력 : DC 5.0 V 500 m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출력 단자의 극성 기호
- ◆ 정격 출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초과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건조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1부: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뜨거운 공기나 냉각된 공기를 이용하여 섬유물질을 건조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회전형 전기건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호 ISO 7000-0790 (2004-01) 또는 다음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를 참조할 것."
- ◆ IPX4
- ◆ 고정형 기기 이외의 기기 뒷면에는 온도 상승이 사람이 닿을 수 있는 앞면에 대해 11.8에 규정된 한계를 초과한다면 기호 IEC 60417-5041(2002-10) 또는 "표면이 뜨거우니 주의할 것" 표기
- ◆ 스위치의 꺼짐 위치가 문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단어 "꺼짐"을 사용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건조기]

손건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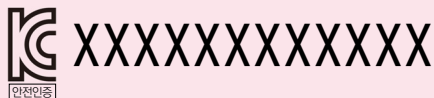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를 이용해 젖은 손을 말리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손건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IPX1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건조기]

전기건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3부: 의류 건조기 및 타월걸이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FAN과 히터를 이용해 기기 내부의 의류 및 타월 등을 건조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건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IPX1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기건조기]

의류관리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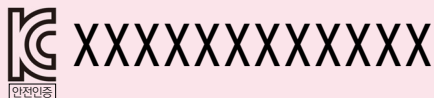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3부: 의류 건조기 및 타월걸이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FAN과 히터를 이용해 기기 내부의 의류 및 타월 등을 관리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의류관리기
- 모델명: KPSA-1100
- 정 격: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IPX1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전기스토브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히터를 이용해 방사된 열로 난방을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스토브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용자가 액체를 채우는 난방기는 액체의 최대 및 최소 레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 ◆ 난방기는 KS S ISO 3864-1의 금지 표시(규정된 색상은 제외)와 결합시키거나 또는 아래 문장과 같이 IEC 60417-5641(2002-10)의 기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 수송이나 보관시에 떨어낼 수 있도록 한 방화 안전망을 가지는 난방기는 "방화안전망"이 없으면 동작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난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 ◆ 온실 또는 건축 현장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적어도 IPX4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전열보드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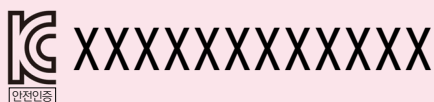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보드에 내장된 발열체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열보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용자가 액체를 채우는 난방기는 액체의 최대 및 최소 레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 ◆ 난방기는 KS S ISO 3864-1의 금지 표시(규정된 색상은 제외)와 결합시키거나 또는 아래 문장과 같이 IEC 60417-5641(2002-10)의 기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 수송이나 보관시에 떨어낼 수 있도록 한 방화 안전망을 가지는 난방기는 "방화안전망"이 없으면 동작해서는 안 되는 문구를 난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 ◆ 온실 또는 건축 현장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적어도 IPX4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전기라디에이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히터를 이용해 주변을 따뜻하게 난방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라디에이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용자가 액체를 채우는 난방기는 액체의 최대 및 최소 레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 ◆ 난방기는 KS S ISO 3864-1의 금지 표시(규정된 색상은 제외)와 결합시키거나 또는 아래 문장과 같이 IEC 60417-5641(2002-10)의 기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 수송이나 보관시에 떼어낼 수 있도록 한 방화 안전망을 가지는 난방기는 "방화안전망"이 없으면 동작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난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 ◆ 온실 또는 건축 현장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적어도 IPX4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전기온풍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히터와 FAN을 이용해 공기를 데워 난방을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온풍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용자가 액체를 채우는 난방기는 액체의 최대 및 최소 레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 ◆ 난방기는 KS S ISO 3864-1의 금지 표시(규정된 색상은 제외)와 결합시키거나 또는 아래 문장과 같이 IEC 60417-5641(2002-10)의 기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 수송이나 보관시에 떨어낼 수 있도록 한 방화 안전망을 가지는 난방기는 "방화안전망"이 없으면 동작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난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 ◆ 온실 또는 건축 현장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적어도 IPX4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축열식 전기난방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6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1부 : 축열식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고밀도의 축열재(산화마스네샤 벽돌 등)에 전기적 에너지로부터 얻어진 열을 저장한 후 임의의 시간에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축열식 전기난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는 정격 축열시간(시간)과 조립된 기기의 무게(kg)을 표시하여야 한다.
- ◆ 난방기기는 19.의 시험 중 측정된 온도 상승이 11.에서 규정한 적절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색깔을 제외하고 KS A ISO 3864-1의 금지 표시와 결합된 IEC 60417-5641의 표시를 다음과 같은 의미의 경고 문구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위험 : 덮지마시오
1개 이상의 전원 접속장치를 가지는 난방기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구모양 히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형상이 전구모양을 하고 있으며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을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구모양 히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 복사 기기는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 주의 : 화재 위험 또는 기호 "경고, 화재 위험/인화성 물질"
 - 동물용 열 방사 기기
 - 기기는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
 - 안전망을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1) 다음 사항도 표기되어야 한다.
 - 대체 가능한 방열기의 최대 정격 : ...W
 - 방열기와 동물 또는 인화성 물질 간의 최소 거리
 - "덮지 말 것" 또는 ISO 3864-1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 IEC 60417-5641(2002-10)
 -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ISO 7000-0790
 - ◆ 병아리 부화기 및 전기 포란기
 - "덮지 말 것" 또는 ISO 3864-1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 IEC 60417-5641 (2002-10)를 표시하여야 한다.
 - ◆ 정격 전압 24 V를 초과하고 인화성 물질로부터 500 mm 이하의 거리에 고정된 난방 기기
 - 동물용 난방 기기
 - "덮지 말 것" 또는 ISO 3864-1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 ISO 7000-0790
 (1) 다음 사항도 표기되어야 한다.
 - 기기는 동물 또는 인화성 물질로부터 최소 고정 거리
 - 지시 사항을 숙지할 것 (또는 ISO 7000-0790).
 - ◆ 통상 사용시 바닥 기준선에서 작동시키거나 바닥보다 500 mm 이상 높지 않은 곳에서 작동시키는 열복사 기기 이외 전열기기
 - IPX7, 기타기기는 IPX4 이상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펠릿 스토브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0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2부 : 전기를 사용하는 가스, 오일, 및 고체연료 연소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를 이용하여 전열소자로 점화하고 연료를 펠릿을 사용하는 난방기기로,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펠릿 스토브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0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전기마사지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전기마사지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 진동자와 같은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 마사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마사지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전열기구]

냉방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 히트 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에어컨이라고도 하며 가정 또는 지역에 조절된 공기를 공급하는 기기로 외함 내에 완성한 조립품. 냉매시스템을 사용하여 냉방 및 제습(혹은 난방, 송풍, 공기정정, 가습을 포함)이 가능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냉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냉매의 질량 또는 공비형 냉매를 제외한 각자의 혼합 성분의 질량
- ◆ 냉매 식별
- ◆ 냉매 회로에 관하여 흡입측 및 방출측에 대하여 각각의 허용 최대 운전 압력
- ◆ 유체의 흐름 방향 표시
 - (1) 실외용인 경우: IPX4
 - (2) 실내용(세탁실제외)인 경우: IPX0
 - (3) 세탁실에서 사용할 경우: IPX1
 - (4) 보조히터가 있을 경우: 보조 히터의 정격입력 표시
 - (5) 인화성 냉매 사용시
 - 사용설명서, 정비지침 및 설치지침을 읽어야 한다는 기호
 - 추가 경고 기호(화염기호: ISO 3864의 B.3.2)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격살충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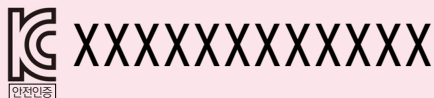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 전기 살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빛으로 해충을 유도하여 두개 이상의 격자 눈금사이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유도된 해충을 감전시키는 기기이며,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함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격살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위험** : 고압
- ◆ 대체 램프에 설치된 기기램프의 관련 형식으로 표시
- ◆ 기기를 파손하거나 파괴되지 않고는 교체할 수 없는 램프를 내장한 기기
 “경고: 이 기기의 램프는 교체할 수 없다. 램프가 작동을 멈추었을 때는 기기를 폐기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팬, 레인지 후드]

선풍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의 축에 날개를 달아 회전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선풍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C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팬, 레인지 후드]

송풍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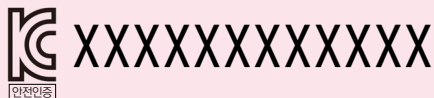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를 이용하여 공기의 유동을 일으켜 바람을 불거나 흡입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송풍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C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팬, 레인지 후드]

환풍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이용조건이나 목적 등에 의해 FAN을 사용하여 공기를 유동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환풍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C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팬, 레인지 후드]

레인지후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1부 : 레인지 후드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구 등에 의해 동작되며 주방용레인지, 허브와 유사한 요리 기기 위에 설치되며 오염된 공기(필터를 통해서 실내로 다시 보내지거나 실외로 배출될 수 있는 공기)를 수집하여 실외로 배출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안전인증

- **제품명** : 레인지후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대체할 수 있는 조명 램프의 최대 전력 입력을 다음과 같이 램프 홀더 가까이에 표시해야 한다.**
 “lamp max... W”
 “램프”라는 단어는 IEC 60417-5012 (2002-10) 기호로 대체할 수 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팬, 레인지 후드]

전기냉풍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FAN과 냉각기를 이용해 냉각된 공기를 배출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냉풍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C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자동으로 세정과 건조를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자동세정 건조식변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IPX4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전기변좌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화장실 이용 시 변좌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변좌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IPX4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오물흡입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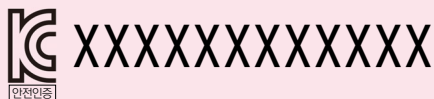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오물을 흡입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오물흡입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IPX4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가습기]

가습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9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8부 : 전기 가습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모터 팬, 히터, 진동자 등을 이용하여 바람으로 물 입자를 분사하거나 증발시켜 가습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가습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주의 : 수증기가 뜨거움
- ◆ 물의 정격용량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9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기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기타 전기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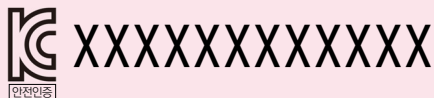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그 밖에 전기기기와 유사한 기타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기타 전기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전기드릴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745-2-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부: 전기드릴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금속, 플라스틱, 나무등과 같이 다양한 재질에 구멍을 뚫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드릴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히 표시한다(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정격무부하속도, 척의 최대 용량 등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전기드라이버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745-2-2,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2부: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 및 임팩트렌치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머리에 홈이 있는 나사를 특정 부위에 결합 또는 분리할 목적으로 회전시키기 위해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드라이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하게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전기그라인더

적용기준

-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C 60745-2-3,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2부: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및 디스크샌더의 개별요구사항
- KC 61029-1,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C 61029-2-4,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4부: 탁상 그라인더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연마재가 디스크의 표면에 부착되어 연마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전기그라인더
- 모델명: KPSA-1100
- 정 격: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하게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3의 8항과 KC 61029-1의 7항과 KC 61029-2-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포리서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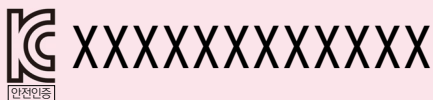
-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C 60745-2-3,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3부: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 및 임팩트렌치의 개별요구사항
- KC 60745-2-4,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4부: 원반형 외의 전기샌더, 포리서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연마재가 디스크의 표면에 부착되어 표면을 닦거나 부드럽게 가공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포리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히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3의 8항과 KC 60745-2-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전기샌더

적용기준

-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C 60745-2-3,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3부: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 및 임팩트렌치의 개별요구사항
- KC 60745-2-4,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4부: 원반형 외의 전기샌더, 포리셔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포 등의 연마지를 가지고 나무 등의 재질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할 목적으로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전기샌더
- 모델명: KPSA-1100
- 정 격: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하게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3의 8항과 KC 60745-2-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전기원형톱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745-2-5,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5부 : 원형톱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금속, 플라스틱, 나무등과 같이 다양한 재질의 절단을 위해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원형톱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히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정격무부하속도, 톱날의 최대 크기 등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전기해머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745-2-6,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6부: 전기해머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다양한 재질을 두드리거나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력을 가하여 못 등의 물체를 특정부위에 고정시킬 목적으로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해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히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정격무부하속도, 척의 최대 용량 등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금속가위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745-2-8,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8부 : 전기가위 및 니블러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금속판 등의 재질을 원하는 크기 또는 모양으로 절단가공하기 위하여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금속가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하게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금속판의 최대 허용 두께 등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8의 8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동공구]

전기레이퍼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745-2-9,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9부: 전기 태퍼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금속, 플라스틱, 나무등과 같이 다양한 재질의 나사산 가공을 위하여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레이퍼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히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동공구]

전기왕복톱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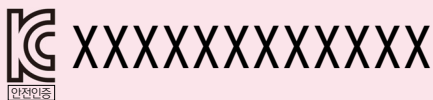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745-2-1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1부: 전기 왕복톱(지그톱 및 사브레톱)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금속, 플라스틱, 나무등과 같이 다양한 재질의 절단을 위해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왕복톱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히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V).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정격무부하속도, 톱날의 최대 용량 등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식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11의 8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동공구]

전기진동기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745-2-12,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2부: 전기콘크리트 진동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콘크리트 타설 시 가동부를 콘크리트에 넣고 진동을 가하여 다지기 위해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진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히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정격무부하속도, 척의 최대 용량 등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식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12의 8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동공구]

전기체인톱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745-2-13,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3부 : 전기콘크리트 진동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주로 벌채 및 묘목자르기, 준비된 목재의 절단을 목적으로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체인톱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히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정격무부하속도, 가드바의 최대 길이 등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13의 8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전기대패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745-2-14,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4부: 전기대패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나무의 거친 면을 다듬거나 원하는 크기 및 형태로 깎기 위해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대패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히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정격무부하속도 등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1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잔디깎이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745-2-15,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5부: 가지치기 및 제초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조경의 목적으로 잔디의 정리 및 묘목의 잔 가지 제거를 위해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잔디깎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히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정격무부하속도 등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동공구]

전기못총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745-2-16,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6부: 태커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목재에 구멍을 뚫는 또는 목재에 못 등을 박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못총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하게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정격무부하속도, 척의 최대 용량 등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1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동공구]

라우터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0745-2-17,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7부 : 전기라우터 및 트리머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목재에 구멍을 뚫는 또는 목재에 형상을 만들기 위한 적당한 회전 카터가 부착되어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라우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하게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정격무부하속도 등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17의 8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동공구]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트리밍기를 포함하여 품목에서 나열되지 않은 기타전동공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하게 표시한다 (가령 230 D/400 Y).
- ◆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정격무부하속도 등
-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 ◆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직류전원장치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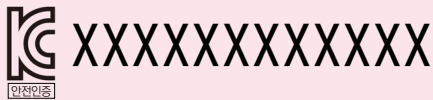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 - 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교류의 상용 전원을 전기제품 혹은 전자제품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직류전원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직류전원장치
- 모델명 : KPSA-1100
- 정격입력 : AC 220 V 60 Hz 1 A
- 정격출력 : DC 5 V 2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 —)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용량이 1 kVA 이하인 것만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보·통신·사무기기 [직류전원장치]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 - 안전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교류의 상용 전원을 휴대전화 전지를 충전하는데 필요한 직류전원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충전 거치대를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입력 : AC 220 V 60 Hz 1 A
- 정격출력 : DC 5 V 2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에도 부착가능)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용량이 1 kVA 이하인 것만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보·통신·사무기기 [단전지]

단전지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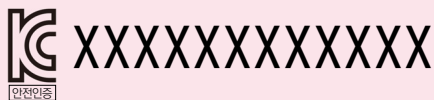
KC 62133-2,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전기를 만들어 내는 장치이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L 이상, 충전전압 4.4 V 이상 되는 리튬이차 단전지이며,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리튬이차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고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단전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3.7 V 1500 mAh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형식명
- ◆ 극성
- ◆ 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지에 대한 주의
KC 62133-2의 8항과 9항 및 KS C IEC 61960-3의 5.2항에 따라 단전지 또는 전지를 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단전지 및 전지 또는 포장지에 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지에 대한 주의 문구를 추가로 표시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L 이상, 충전전압 4.4 V 이상 되는 리튬이차 단전지만 해당된다.
-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리튬이차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보·통신·사무기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기타 정보통신사무기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 - 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그 밖에 정보·통신 사무기기와 유사한 기타 정보통신사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기타 정보통신사무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5 A(m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명기기 [램프홀더]

형광램프 홀더

적용기준

K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홀더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조명기구와 부분적 일체가 되는 것으로서 형광램프를 취부하기 위해 설계된 램프홀더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형광램프 홀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형식
- ◆ 정격 펄스 전압(kv)
- ◆ 정격동작온도(T)
- ◆ 보호등급(IP)
- ◆ 홀더의 뒷판 온도(Tm)
- ◆ 나사 없는 단자용 측정 온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40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명기기 [램프홀더]

에디슨 나사형 홀더

적용기준

KC 60238, 에디슨 나사형 소켓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산업용 조명장비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실내 혹은 실외용으로 나사형태로 램프를 취부하기 위해 설계된 램프소켓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에디슨 나사형 홀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1 A (E17)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형식구분(식별번호)
- ◆ 보호등급(IP)
- ◆ 정격동작온도(T)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23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명기기 [램프홀더]

기타 램프 홀더

적용기준

- KC 60838-1, 기타 램프소켓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 KC 60838-2-1, 기타 램프소켓 제2부 : 제1절 : 램프소켓 S14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KC 60838-2-2, 기타 램프소켓 제2-2부 : LED 모듈형 커넥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 K 61184, 꽃음형 램프소켓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부속서 A에 나열된 베이스가 달린 가로등과 투광 조명등 및 일반용 램프, 영사 램프를 취부하기 위해 설계된 기타 램프 홀더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기타 램프 홀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1 A(GU10)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동작온도(T)
- ◆ 설계된 단자에 대한 도체 크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838-1의 7항과 KC 60838-2-1의 7항과 KC 60838-2-2의 7항과 K 6118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명기기 [램프홀더]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적용기준

K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홀더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조명기구와 부분적 일체가 되는 것으로서 글로우스타터를 취부하기위해 설계된 스타터 홀더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50 V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형식
- ◆ 정격 펄스 전압(kv)
- ◆ 정격동작온도(T)
- ◆ 보호등급(IP)
- ◆ 홀더의 뒷판 온도(Tm)
- ◆ 나사 없는 단자용 측정 온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40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명기기 [일반조명기구]

형광등기구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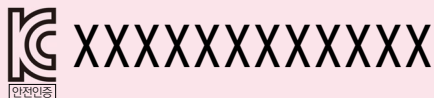
-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과 시험
-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 매립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000 V 이하에서 형광등을 사용하는 조명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형광등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저온 빔
- ◆ 볼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십시오)
- ◆ 이그나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원산지 표시(등록상표, 제조자 마크, 판매자)
- ◆ 2중 등기구 기호
- ◆ 3중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원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갯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598-1의 제3절과 KC 60598-2-1의 5항과 KC 60598-2-2의 6항과 KC 60598-2-4의 4.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명기기 [일반조명기구]

PLS조명기구

적용기준

K 10006,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안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정격전압이 1,000 V 이하의 ISM 대역의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옥내 및 옥외용 PLS방식의 무전극램프를 적용한 조명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PLS조명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저온 빔
- ◆ 불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시오)
- ◆ 이그나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원산지 표시(등록상표, 제조자 마크, 판매자)
- ◆ 2종 등기구 기호
- ◆ 3종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원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갯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시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10006의 3.2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명기기 [일반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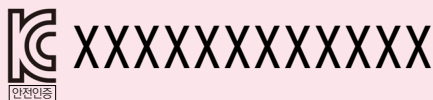
-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과 시험
-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 매립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000 V 이하에서 사용하는 조명기구로,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저온 빔
- ◆ 볼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십시오)
- ◆ 이그나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원산지 표시(등록상표, 제조자 마크, 판매자)
- ◆ 2종 등기구 기호
- ◆ 3종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열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갯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598-1의 제3절과 KC 60598-2-1의 5항과 KC 60598-2-2의 6항과 KC 60598-2-4의 4.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명기기 [일반조명기구]

LED등기구

적용기준

-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과 시험
-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 매립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 1002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안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000 V 이하에서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LED등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저온 빔
- ◆ 볼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시오)
- ◆ 이그나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2종 등기구 기호
- ◆ 3종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원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갯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598-1의 제3절과 KC 60598-2-1의 5항과 KC 60598-2-2의 6항과 KC 60598-2-4의 4.5항 및 K 1002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명기기 [일반조명기구]

할로겐등기구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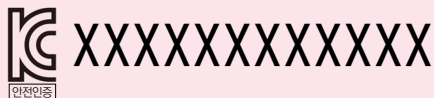
-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과 시험
-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 매립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000 V 이하에서 구동장치가 있는 할로겐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이며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 W 이하인 것에 한정함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할로겐등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저온 빔
- ◆ 볼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시오)
- ◆ 이그니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2종 등기구 기호
- ◆ 3종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원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갯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598-1의 제3절과 KC 60598-2-1의 5항과 KC 60598-2-2의 6항과 KC 60598-2-4의 4.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고압방전등기구

적용기준

-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과 시험
-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 매립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000 V 이하에서 메탈, 나트륨, 수은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로, 램프당 150 W 이하인 것에 한정함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고압방전등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저온 빔
- ◆ 불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시오)
- ◆ 이그나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2종 등기구 기호
- ◆ 3종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모델명 또는 형식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열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갯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598-1의 제3절과 KC 60598-2-1의 5항과 KC 60598-2-2의 6항과 KC 60598-2-4의 4.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명기기 [일반조명기구]

투광조명기구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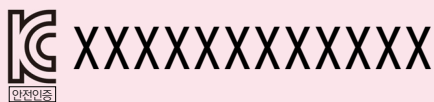
K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과 시험
 KC 60598-2-5, 등기구 제2-5부: 투광조명기구 -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000 V 를 넘지 않는 전원을 가지고 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관형형광램프, 텅스텐 필라멘트 그리고 다른 방전램프 및 LED램프를 사용하는 투광조명기구이며, 램프당 150 W 이하인 것에 한정함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투광조명기구
- **모델명**: KPSA-1100
- **정 격**: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저온 빔
- ◆ 불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시오)
- ◆ 이그나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2중 등기구 기호
- ◆ 3중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원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갯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598-1의 제3절과 KC 60598-2-5의 5.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LED조명 시스템

적용기준

K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과 시험
KC 10030: LED조명 시스템 - 안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000 V 이하에서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를 시스템화 한 것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LED조명 시스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저온 빔
- ◆ 볼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십시오)
- ◆ 이그ナイ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2종 등기구 기호
- ◆ 3종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원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갯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598-1의 제3절과 KC 10030의 6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명기기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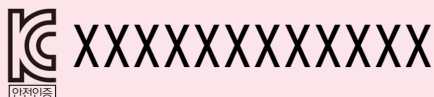
- KC 61347-1, 램프구동장치 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 KC 61347-2-8, 램프구동장치 제2-8부 : 형광램프용 안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 KC 61347-2-9, 램프구동장치 제2-9부 : 방전등용 안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 K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성능 요구사항
- KC 60923, 방전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성능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000 V 이하, 입력 주파수 50 Hz 나 60 Hz 에서 사용하고, 형광 램프 및 고압방전램프를 구동하기 위한 자기식 안정기로, 정격입력이 1,000 W 이하인 것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0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해당하는 경우, 독립형 램프 구동장치 기호
- ◆ 램프 구동장치의 교체형 부품과 교환형 부품(퓨즈 포함) 간의 상호관계는 램프 구동장치 위에 범례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퓨즈를 제외하고 제조사의 카탈로그에 규정해야 한다.
- ◆ 접지단자
- ◆ 단자의 위치와 목적을 나타낸 결선도.
- tc의값
- ◆ 온도를 선언한 열보호 구동장치에 대한 기호
- ◆ 정전압 유형 : 정격 출력 전압
- ◆ 정전류 유형 : 정격 출력 전류와 최대 출력 전압
- ◆ 해당하는 경우 : 구동장치가 LED 모듈과만 동작하기에 적합하다는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347-1의 7항과 KC 61347-2-8의 7항과 KC 61347-2-9의 7항과 KC 61921의 5항 및 KC 60923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적용기준

- KC 61347-1, 램프구동장치 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 KC 61347-2-3, 램프구동장치 제2-3부 :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개별요구사항
- KC 61347-2-12, 방전램프용(형광램프 제외) DC/AC전원공급 전자식 안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 K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성능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 000 V 이하, 입력 주파수 50 Hz나 60 Hz에서 사용하고, 형광 램프 및 고압방전램프를 구동하기 위한 전자식 안정기로, 정격입력이 1,000 W 이하인 것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0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해당하는 경우, 독립형 램프 구동장치 기호
- ◆ 램프 구동장치의 교체형 부품과 교환형 부품(퓨즈 포함) 간의 상호관계는 램프 구동장치 위에 범례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퓨즈를 제외하고 제조자의 카탈로그에 규정해야 한다.
- ◆ 접지단자
- ◆ 단자의 위치와 목적을 나타낸 결선도.
- tc의값
- ◆ 온도를 선언한 열보호 구동장치에 대한 기호
- ◆ 정전압 유형 : 정격 출력 전압
- ◆ 정전류 유형 : 정격 출력 전류와 최대 출력 전압
- ◆ 해당하는 경우 : 구동장치가 LED 모듈과만 동작하기에 적합하다는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347-1의 7항과 KC 61347-2-3의 7항과 KC 61347-2-12의 7항 및 KC 60929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명기기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네온변압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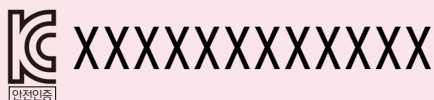
KC 61050, 무부하 출력전압이 1,000 V 초과하는 관형방전램프용변압기(네온변압기) - 일반 및 요구사항
 KC 61347-1, 램프구동장치 제1부 :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C 61347-2-10, 램프구동장치 제2-10부 : 고주파 냉음극방전관(네온관)용 전자식인버터 및 컨버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000 V 이하의 교류전압에서 주로 네온사인, 광고, 표시, 신호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냉 음극 관형 램프(또는 유사 종류의 램프들) 안정하게 점등하고 방전을 유지하도록 하며, 무 부하 출력전압이 1,000 V 를 초과하고 10,000 V 를 넘지 않으며, 입력과 출력권선 이 분리된 독립형 또는 내장형 단상변압기 및 교류 1,000 V 이하 직류 1,000 V 이하에서 작동하고, 출력전압이 1,000 V 이상 10,000 V 이하의 표시 사인이나 방전관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냉음극 방전램프의 고주파 작동을 위한 인버터 및 컨버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네온변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해당하는 경우, 독립형 램프 구동장치 기호
- ◆ 램프 구동장치의 교체형 부품과 교환형 부품(퓨즈 포함) 간의 상호관계는 램프 구동장치 위에 범례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퓨즈를 제외하고 제조사의 카탈로그에 규정해야 한다.
- ◆ 접지단자
- ◆ 단자의 위치와 목적을 나타낸 결선도.
- tc의값
- ◆ 온도를 선언한 열보호 구동장치에 대한 기호
- ◆ 정전압 유형 : 정격 출력 전압
- ◆ 정전류 유형 : 정격 출력 전류와 최대 출력 전압
- ◆ 해당하는 경우 : 구동장치가 LED 모듈과만 동작하기에 적합하다는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050의 7항과 KC 61347-1의 7항 및 KC 61347-2-1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조명기구용 컨버터

적용기준

- KC 61347-1, 램프구동장치 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 KC 61347-2-2, 램프구동장치 제2-2부 : 필라멘트 램프용 직류 및 교류입력 전자식 강압컨버터의 개별요구사항
- KC 61347-2-13, 램프구동장치 제2-13부 : LED모듈용 DC/AC전원 전자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 KC 61047, 필라멘트램프용 직류 또는 교류 입력전자식 강압컨버터 - 성능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텅스텐 할로겐 램프 또는 그 외 필라멘트 램프용으로 사용되는 전자식 강압컨버터 및 전원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LED모듈 사이에 삽입된 장치로, LED모듈에 정격전압이나 정격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컨버터이며 LED 전원공급장치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조명기구용 컨버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0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해당하는 경우, 독립형 램프 구동장치 기호
- ◆ 램프 구동장치의 교체형 부품과 교환형 부품(퓨즈 포함) 간의 상호관계는 램프 구동장치 위에 범례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퓨즈를 제외하고 제조자의 카탈로그에 규정해야 한다.
- ◆ 접지단자
- ◆ 단자의 위치와 목적을 나타낸 결선도.
- tc의값
- ◆ 온도를 선언한 열보호 구동장치에 대한 기호
- ◆ 정전압 유형 : 정격 출력 전압
- ◆ 정전류 유형 : 정격 출력 전류와 최대 출력 전압
- ◆ 해당하는 경우 : 구동장치가 LED 모듈과만 동작하기에 적합하다는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347-1의 7항과 KC 61347-2-2의 7항과 KC 61347-2-13의 7항 및 KC 61047의 6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조명기기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안정기내장형램프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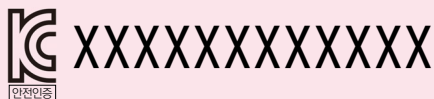
- K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안전요구사항
- K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요구사항
- K 10023,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관형 형광램프의 광원,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부품 및 기타 방전램프 소자를 통합하여 대치 또는 교환 가능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 조립된 유닛으로, LED용을 포함함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안정기내장형램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광속 ("lm"로 표시), 램프전류(A), 색온도(K), 광속유지율(%) 등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968의 4항과 K 10023의 4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리튬이차단전지]

리튬이차단전지

적용기준

KC 62619, 산업용 리튬이차단전지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정치형 용도의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기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300 kWh 이하의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단 전지시스템에 적용되는 단전지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리튬이차단전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1.5 V 5 Ah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별도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의무 표시사항 없음.
- ◆ 비교
 1. 일상생활에서 전지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고주파웰더
전기용접기
권총형 아크접착기
과일 껍질깎이
악스 용해기
초코렛 용해기
파라핀 용해기
두피모발기
삼푸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
전기이발기
안면사우나기
전기이발용의자
전동침대
전기온열의자
각도조절의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 침대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해충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집진기
전기광택기
수하물보관기
지폐교환기
동전교환기
전기에어커티
팬코일유닛
폐열 회수 환기장치
레이저사격기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기구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기타게임기구
전기식기세척기
전기식기건조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수도 동결 방지기
산소이온발생기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초음파세척기
과일아채세척기
기타 전기세척기
오존수 발생장치
전기헬스기구
전기차충전기
자동차 어댑터
가정용 전동재봉기
전기스팀사우나기구
전기사우나기구
사우나기구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기포발생기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
전기분무기
물수건포장기
물수건마는기기
주 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방식기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썰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전격살충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제습기
음식물처리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전기보온기
전기주운기
전기온장고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납땀인두
납땀제거인두
권총형납땀기
열기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기열총
전기조각기
소용돌이욕조
반신·전신욕조
발욕조
기타 전기기기
텔레비전 수상기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디스크 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오디오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
기타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모니터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프린터
프로젝터
문서세단기
천공기
복사기
무정전 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TV
코팅기
노트북컴퓨터
태블릿 PC
전 지
기타 정보·통신·사무기기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상대리아 등
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매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체인형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할로겐등기구
백열전구
LED램프(모듈)
할로겐전구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전기용품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재]

온도조절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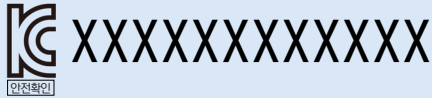
K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60730-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장치 - 온도감지제어장치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이클링 동작을 하는 온도 검출제어기로 보통 운전 상태에서 특정한 2개의 값 사이에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사용자 설정용 사용도구를 갖고 있어도 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온도조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5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부하의 형식
- ◆ 보호 정도
- ◆ 외부 도체 접속에 대한 단자
- ◆ 헤드의 온도 한계치
- ◆ 설치면의 온도 한계치
- ◆ II등급 구조의 기호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30-1의 7항과 K 60730-2-9의 7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재]

온도과승방지장치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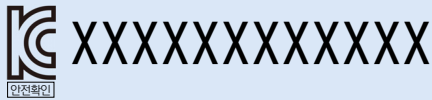
K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60730-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장치 - 온도감지제어장치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이상 동작 상태에서 어느 특정치의 위 아래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온도 감지 제어장치으로, 사용자 설정도구가 없어야 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온도과승방지장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5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부하의 형식
- ◆ 보호 정도
- ◆ 외부 도체 접속에 대한 단자
- ◆ 헤드의 온도 한계치
- ◆ 설치면의 온도 한계치
- ◆ II등급 구조의 기호
- ◆ 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30-1의 7항과 K 60730-2-9의 7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자동압력 스위치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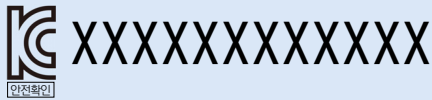
K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60730-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장치 - 자동압력스위치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최소 정격 게이지 압력 60 kPa 및 최대 정격 게이지 압력 4.2 Mpa 을 가진 압력 검출 자동제어장치로서 난방, 에어컨디셔닝 및 유사한 용도를 포함하는 전기, 가스, 기름, 고체 연료, 태양열 에너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 내부 또는 그 위에 설치하여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스위치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자동압력 스위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5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부하의 형식
- ◆ 보호 정도
- ◆ 외부 도체 접속에 대한 단자
- ◆ 헤드의 온도 한계치
- ◆ 설치면의 온도 한계치
- ◆ II등급 구조의 기호
- ◆ 각 수동 동작에 대한 작동 사이클 수
- ◆ 각 자동 동작에 대한 자동 사이클 수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30-1의 7.12항과 K 60730-2-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재]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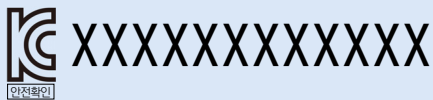
K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60730-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장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타이머란 다음 사이클을 실시하기 전에 조작할 필요가 있는 타임베이스 제어 장치를 의미한다.
타임스위치란 선행 사이클이 완료되었을 때 후속 사이클을 계속하는 타임베이스 제어장치를 의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5 A 100 W 60 Hz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부하의형식
- ◆ 보호정도
- ◆ 외부 도체 접속에 대한 단자
- ◆ 헤드의 온도 한계치
- ◆ 설치면의 온도 한계치
- ◆ II등급 구조의기호
- ◆ 각 자동 동작에 대한 자동 사이클 수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30-1의 7항과 K 60730-2-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재]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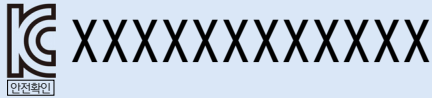
K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60730-2-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장치- 모터기동릴레이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기에 일체화 되거나 조립될 의도로 가정용 기기 및 유사한 응용제품의 단상 모터기동을 위하여 주권선과 보조 기동 권선과의 접속을 제어하기 위해 모터 회로 중에 사용되는 전기적으로 동작하는 제어장치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5 A 100 W 60 Hz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부하의형식
- ◆ 보호정도
- ◆ 외부 도체 접속에 대한 단자
- ◆ 헤드의 온도 한계치
- ◆ 설치면의 온도 한계치
- ◆ II등급 구조의기호
- ◆ 안전상태 모터운전 전류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30-1의 7항과 K 60730-2-1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재]

에너지 레귤레이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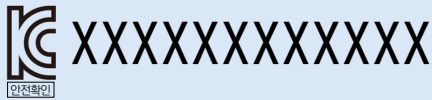
K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60730-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장치- 에너지조절기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부하장치로 공급되는 에너지를 바꾸고 공급되는 평균에너지를 바꾸기 위해 사용자 설정용 도구를 내장하는 것도 있는 자동조절형 제어장치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에너지 레귤레이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5 A 100 W 60 Hz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부하의 형식
- ◆ 보호정도
- ◆ 외부 도체 접촉에 대한 단자
- ◆ 헤드의 온도 한계치
- ◆ 설치면의 온도 한계치
- ◆ II등급 구조의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30-1의 7항과 K 60730-2-1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절연 변압기 [고주파웰더]

고주파웰더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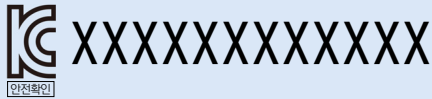
K 60974-1, 아크용접기 제1부: 용접 전원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고주파를 써서 트랜스의 크기를 줄이고 효율을 증대시킨 용접기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고주파웰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5 A 60 Hz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명판
 - a) 식별 : 제조자, 상표, 유형, 기호, 일련번호
 - b) 용접 출력 : 용접 공정 기호, 용접 전원에 대한 기호, 출력 전류의 기호, 정격 무부하 전압, 부하전압, 사용률, 정격 출력 전류 기호, 표준 부하 전압 기호,
 - c) 에너지 입력 : 에너지 입력 기호, IP보호 등급, 2등급 기기에 대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74-1의 15, 16 및 17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용량 5 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접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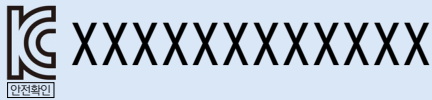
K 60974-1, 아크용접기 제1부 : 용접 전원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산업용과 전문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설계되고 입력전압 1000V 이하, 출력 전력 500kVA를 초과하지 않는 기계적 수단에 의해 구동되는 아크 용접기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용접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5 A 60 Hz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정격 명판

- a) 식별 : 제조자, 상표, 유형, 기호, 일련번호
- b) 용접 출력 : 용접 공정 기호, 용접 전원에 대한 기호, 출력 전류의 기호, 정격 무부하 전압, 부하전압, 사용률, 정격 출력 전류 기호, 표준 부하 전압 기호,
- c) 에너지 입력 : 에너지 입력 기호, IP보호 등급, 2등급 기기에 대한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74-1의 15, 16 및 17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용량 5 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권총형 아크접착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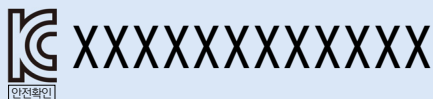
K 60974-1, 아크용접기 제1부: 용접 전원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점(spot)용접 등을 목적으로 한 특수 용접기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권총형아크용접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5 A 60 Hz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명판
 - a) 식별 : 제조자, 상표, 유형, 기호, 일련번호
 - b) 용접 출력 : 용접 공정 기호, 용접 전원에 대한 기호, 출력 전류의 기호, 정격 무부하 전압, 부하전압, 사용률, 정격 출력 전류 기호, 표준 부하 전압 기호,
 - c) 에너지 입력 : 에너지 입력 기호, IP보호 등급, 2등급 기기에 대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74-1의 15, 16 및 17항에 따라 표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용량 5 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과일 껍질깍이]

과일 껍질깍이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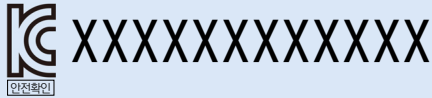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의 껍질을 깎을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과일 껍질깍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과일 껍질깍이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반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과일 껍질깍이(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그 회전 방향이 지정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 용해기]

왁스 용해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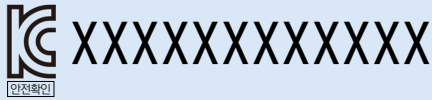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왁스를 용해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왁스 용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 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초코렛 용해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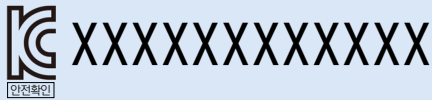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초코렛을 용해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초코렛 용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 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파라핀 용해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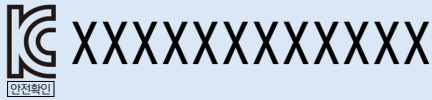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파라핀을 용해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파라핀 용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 시 기기의 일부분을 물에 담그는 기기의 경우
 - 표시된 레벨 이상은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의 경우
 - 권장안전사용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이·미용기기]

두피모발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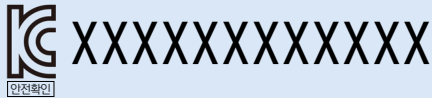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두피와 모발을 손질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두피모발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이·미용기기]

샴푸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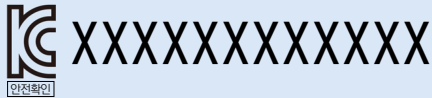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샴푸를 자동으로 제공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샴푸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이·미용기기]

모발가습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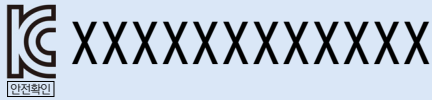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모발에 가습을 하여 머리를 손질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모발가습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이·미용기기]

손톱정리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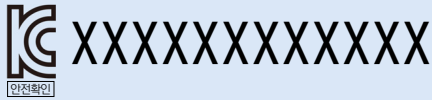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손톱을 정리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손톱정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면도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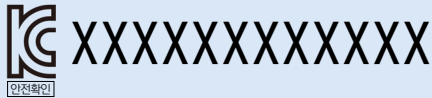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부 : 면도기, 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람의 수염과 동물의 털 등을 깎는 기능을 가진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면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 가능 기호(손잡이)
- ◆ 습식 면도기 기호(손잡이)
- ◆ 물 세척 기호
- ◆ 욕조/샤워기 사용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이·미용기기]

전기이발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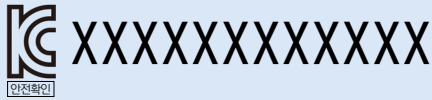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부 : 면도기, 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람의 두발과 동물의 털 등을 깎는 기능을 가진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이발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세척 가능 기호(손잡이)
- ◆ 습식 면도기 기호(손잡이)
- ◆ 물 세척 기호
- ◆ 욕조/샤워기 사용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이·미용기기]

안면사우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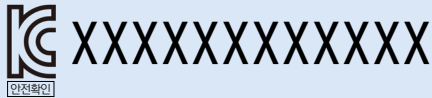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람의 안면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우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안면사우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이발용의자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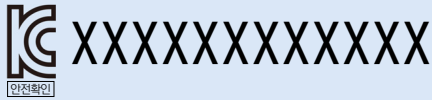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 등을 이용하여 이용원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의자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이발용의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동침대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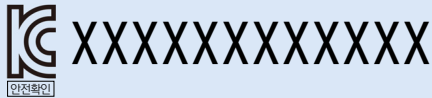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침대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를 이용하여 침대의 높이 혹은 기울기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동침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온열의자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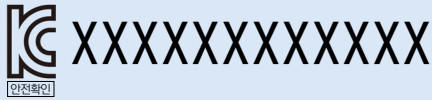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 2-32부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온열 할 수 있는 의자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온열의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각도조절의자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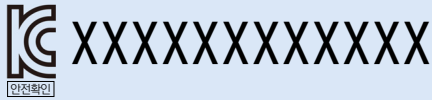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를 이용하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각도조절의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컴프레서]

컴프레서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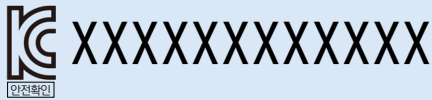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4부 : 전동 압축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와 압축기의 기계적인 장치로 구성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컴프레서(compressor)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3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매트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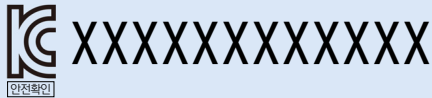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K 1001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K 10019, 전기온수매트 및 침대용 전기보일러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열된 온수를 호스를 통하여 순환시켜 온열하는 매트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온수매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수위 식별, 최대/최소 수위 표시
- ◆ 매트리스는 구겨서 사용 금지
- ◆ 매트리스는 접어서 사용 금지
- ◆ 매트리스를 바늘/날카로운 것으로 찌르지 마시오
- ◆ 누수될 경우 전원플러그를 뽑고 AS센터와 연락하십시오
- ◆ 당뇨환자 및 피부질환 환자는 오랜시간동안 사용시 피부에 화상 위험
- ◆ 분리 가능한 온수조절기 표시 추가
- ◆ 호스가 꼬이거나 꺾인 상태로 사용하지 마시오
- ◆ 저온화상에 주의하십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8의 7항 및 K 1001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 침대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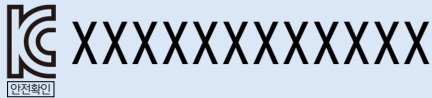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K 10019, 전기온수매트 및 침대용 전기보일러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가열된 온수를 호스를 통하여 순환시켜 온열하는 침대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수위 식별, 최대/최소 수위 표시
- ◆ 매트리스는 구겨서 사용 금지
- ◆ 매트리스는 접어서 사용 금지
- ◆ 매트리스를 바늘/날카로운 것으로 찌르지 마시오
- ◆ 누수될 경우 전원플러그를 뽑고 AS센터와 연락하십시오
- ◆ 당뇨병자 및 피부질환 환자는 오랜시간동안 사용시 피부에 화상 위험
- ◆ 분리 가능한 온수조절기 표시 추가
- ◆ 호스가 꼬이거나 꺾인 상태로 사용하지 마시오
- ◆ 저온화상에 주의하십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8의 7항 및 K 1001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구강청결기]

전동칫솔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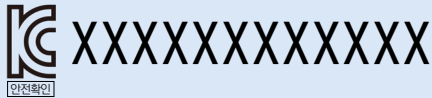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2부 : 전기구강위생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의 힘으로 회전시키거나 떨게(바이브레이션)하여 이를 닦는 기능을 가진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동칫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IPX7 기호(2종기기인 경우)
- ◆ IPX4 기호(3종기기인 경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구강청결기]

구강세척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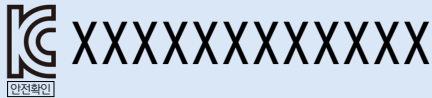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2부 : 전기구강위생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입속의 음식물 및 침샘의 내분비물과 양치 후 치 액들을 소용돌이치는 원통형의 중심에 파이프를 세우고 원통의 아래쪽으로부터 공기를 불어 넣어 파이프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물을 분무시켜 구강을 세척하는 기기(분사 방식에 따라 사이클론 식, 벤투리 식, 제트식이 있음)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구강세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IPX7 기호(2종기기인 경우)
- ◆ IPX4 기호(3종기기인 경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해충퇴치기]

해충퇴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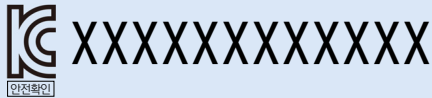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 전기 살충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해충을 퇴치할 목적으로 만든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해충퇴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대체 램프설치된 기기 램프 형식으로 표기
- ◆ 기기의 램프 교체할 수 없고, 램프작동을 멈추었을 때 기기 폐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포충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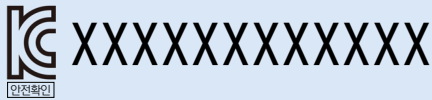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 전기 살충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해충을 잡아 가둘 수 있도록 만든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포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대체 램프설치된 기기 램프 형식으로 표기
- ◆ 기기의 램프 교체할 수 없고, 램프작동을 멈추었을 때 기기 폐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집진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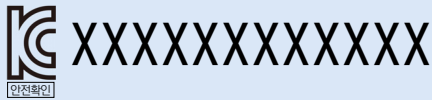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 청정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필터 등을 이용하여 공기중의 유해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집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교체 가능한 UV-C 방사체가 포함된 자외선 복사 공기 청정기에는 방사체의 유형과 다음 취지의 경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경고 — 자외선 복사는 눈과 피부에 유해하다. 기기 밖에서 UV-C 방사체를 작동시키지 말 것.
- ◆ UV-C 방사체를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기기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기호 ISO 7000 - 0790(2004-0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광택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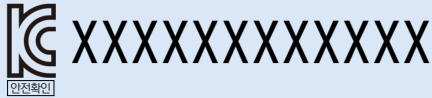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구두 등을 자동으로 광택을 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광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서비스기기]

수하물보관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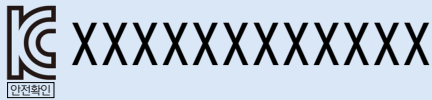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수하물을 보관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수하물보관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지폐교환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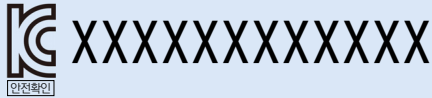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지폐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지폐교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동전교환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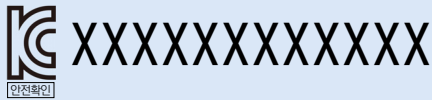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동전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동전교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에어커튼]

전기에어커튼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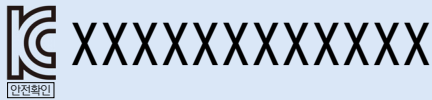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 팬을 이용 공기의 외부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에어커튼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팬코일유닛]

팬코일유닛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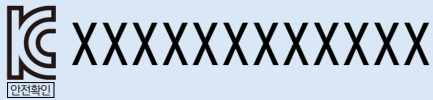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팬 코일 유닛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C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폐열 회수 환기장치]

폐열 회수 환기장치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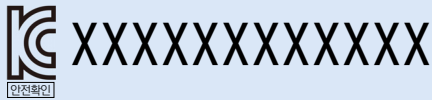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폐열을 회수하여 환기 시킬 수 있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폐열 회수 환기장치
- 모델명: KPSA-1100
- 정 격: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대 기후용 팬 T자 표기
- ◆ 국소 주위온도 40 °C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동작하는 팬은 주위 동작온도 표기
- ◆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 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기기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권장 안전사용기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 주의 문구(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경년 열화에 의한 발화 부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 관련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에 나타낼 수 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게임기구]

레이저사격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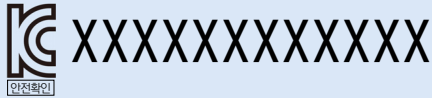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레이저를 이용 사격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레이저사격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를 적용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게임기구]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기구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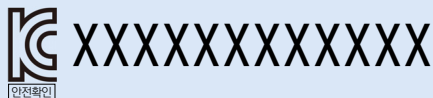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자동차 운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임 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를 적용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게임기구]

인형뽑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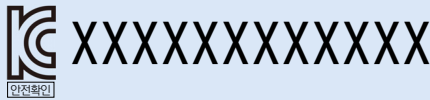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 장치를 조정하여 인형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한 게임 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인형뽑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를 적용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게임기구]

다트판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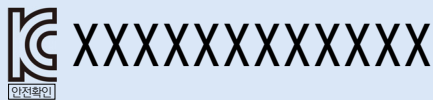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다트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다트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를 적용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게임기구]

농구게임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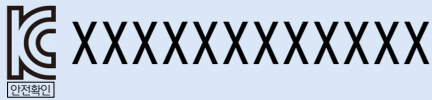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농구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농구게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를 적용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기타 게임기구]

기타게임기구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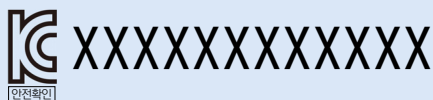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타 게임 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기타게임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 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 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를 적용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식기세척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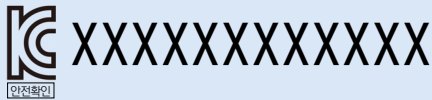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부: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5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8부: 상업용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모터를 이용하여 식기 및 주방용 기구를 세척(헹굼)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전기식기세척기
- 모델명: KPSA-1100
- 정 격: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식기세척기**
 - (1) 배수판 위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기기의 경우
 - IPX1 이상이어야 한다.
 - (2) 자동수위조절이 되지 않는 기기의 경우
 - 최대 허용 수위를 표시해야 한다.
- ◆ **전기식기세척기(상업용)**
 - 기기는 유해한 물의 침입 보호에 관하여 IPX1 이상이어야 한다.
 - (1) 설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다음의 내용을 기기에 표시해야 한다.
 -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들의 수압 또는 압력의 범위 (킬로파스칼 단위(kPa))
 - 최대 허용 증기압(킬로파스칼 단위(kPa))
 - 최대 허용 온수의 수압(킬로파스칼 단위(kPa))
 - 최대 허용 물, 증기, 그리고 온수의 온도(섭씨(°C))
 - (2) 전동기의 회전 방향이 전원 공급선과의 연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역회전이 위험할 수 있는 경우
 - 회전 방향이 분명하고 잘 보이도록 전동기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의 7항 및 KC 60335-2-5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5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식기건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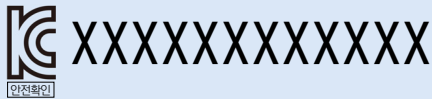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부 :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 KC 60335-2-4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9부 : 상업용 전기보온찬장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식기 및 주방용 기구를 건조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식기건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식기건조기
 - (1) 배수판 위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기기의 경우
 - IPX1 이상이어야 한다.
 - (2) 자동수위조절이 되지 않는 기기의 경우
 - 최대 허용 수위를 표시해야 한다.
 - (3) 기기를 세척할 때 기기가 부분적으로 물에 잠기는 경우
 - 기기를 물에 담글 때 허용되는 최대 수위를 표시해야 하고 다음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물에 담글 때는 표시된 수위를 넘지 않도록 하시오.'
- ◆ 전기식기건조기(상업용)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IPX3 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 이상
 - 250V를 초과하는 사용 전압에서 충전부에 달게 되는 모든 덮개에는 시호 IEC 60417-5036(2002-10) 또는 다음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경고-위험전압'
 - (1) 수도에 접촉하는 기기 중 사용설명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수압 및 수압의 범위(단위: kPa)
 - (2) 유도가열원을 내장한 기기
 - 동작 주파수 또는 동작 주파수 범위(kHz)
 -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유도 가열유닛의 총 입력 전력(W 또는 kW)
 -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모든 비유도 가열유닛의 총 입력전력(W 또는 kW)
 - 유도코일에 달게 되는 덮개에는 기호 IEC 60417-5140 (2003-04) 또는 다음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주의-자기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의 7항 및 KC 60335-2-4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5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훈증살충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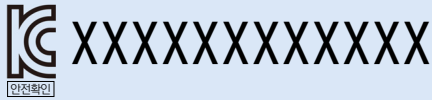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1부 : 전기훈증기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살충제를 확산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훈증살충기
- 모델명 : KPSA-1100
-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입력이 10 W를 넘지 않는 경우, 기기에 최대 10 W 라는 표시가 있을 수 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0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훈증기]

전기방향확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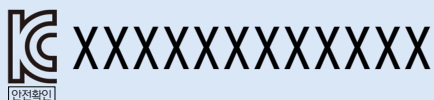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1부 : 전기훈증기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향기를 확산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방향확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입력이 10 W를 넘지 않는 경우, 기기에 최대 10 W 라는 표시가 있을 수 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0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수도 동결 방지기]

수도 동결 방지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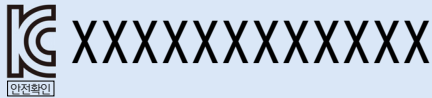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수도동결방지기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 수도의 동파를 막을 수 있도록 구조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수도 동결 방지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산소이온발생기]

산소이온발생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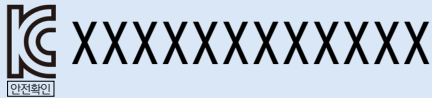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이온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산소와 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산소이온발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교체 가능한 UV-C 방사체가 포함된 자외선 복사 공기 청정기에는 방사체의 유형과 다음 취지의 경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경고 — 자외선 복사는 눈과 피부에 유해하다. 기기 밖에서 UV-C 방사체를 작동시키지 말 것.
- ◆ UV-C 방사체를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기기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기호 ISO 7000 - 0790(2004-0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5 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정수기]

전기정수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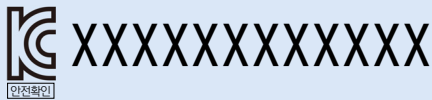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정수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필터 등을 이용하여 물을 정수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정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통형 전기 정수기 이외의 기기들은 정격 압력을 파스칼 단위(bar)로 표시한다.
- ◆ 기기의 정격 용량은 리터(ℓ)로 표시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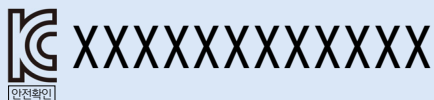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K 1000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이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해조에 물을 넣고 음극과 양극사이에 격막을 설치하고 직류전기를 흘려 물을 전기분해하여 이온화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전기이온수기
- 모델명: KPSA-1100
- 정 격: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의 정격 압력을 파스칼 단위(bar)로 표시한다.
- ◆ 기기의 정격 용량은 리터(L)로 표시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세척기]

초음파세척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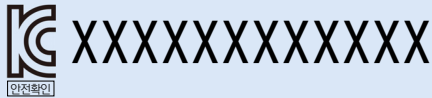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초음파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초음파세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는 최소 IPX1 이상이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세척기]

과일야채세척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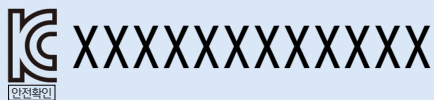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초음파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및 야채를 세척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과일야채세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는 최소 IPX1 이상이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기타 전기세척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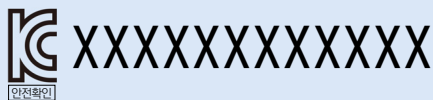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초음파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과일 및 야채 이외 제품 등을 세척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기타 전기세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는 최소 IPX1 이상이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세척기]

오존수 발생장치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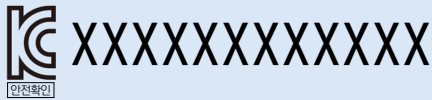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이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오존을 발생시켜 오존수를 이용하여 제품 등을 세척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오존수 발생장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의 정격 압력을 파스칼 단위(bar)로 표시한다.
- ◆ 기기의 정격 용량은 리터(ℓ)로 표시한다.
- ◆ 기기는 최소 IPX1 이상이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0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 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헬스기구]

전기헬스기구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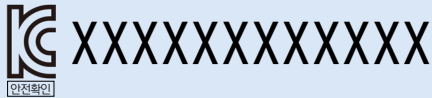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K 1001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헬스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람의 신체를 움직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헬스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러닝벨트가 있는 기기
 - 최대 사용가능 체중(kg)을 표기 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 1001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차충전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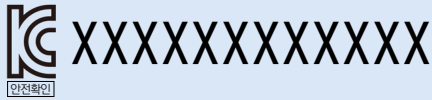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1851-22,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2부 : 교류충전장치
KC 61851-23,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3부 : 직류충전장치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기기로, 정격용량이 200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차충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10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장치의 표기
- ◆ 일련번호
- ◆ 위상 개수
- ◆ 보호 등급
- ◆ 옥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경우 “옥내용” 또는 이에 준하는 것
- ◆ 2중 충전설비 표기
- ◆ 최소 부가정보(계약자의 전화번호, 주소)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851-1의 11.15항과 KC 61851-22의 11.1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차충전기]

자동차 어댑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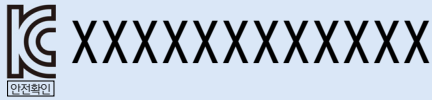
KC 62196-1, 전기차 충전시스템 - 플러그, 소켓 - 아웃렛, 커넥터 및 인렛 - 제1부: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연결 접속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차 어댑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최대 작동 전압(V)
- ◆ 보호 등급에 대한 관련 기호
- ◆ 인용 항목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2196-1의 11.1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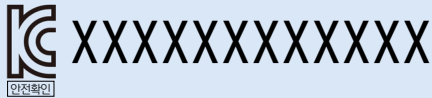
KC 60335-2-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부 : 전기 재봉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옷감, 천 등의 바느질, 오버로크, 자수 등을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가정용 전동재봉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에는 다음과 같이 교체할 수 있는 램프의 최대 입력 전력을 램프 받침 위나 근처에 표시한다.
램프 최대값 (W)
- “램프”라는 단어는 IEC 60417-5012(2002-10)로 대체될 수도 있다.
- 램프의 정격 전압은 기기의 정격 전압보다 낮을 때 표시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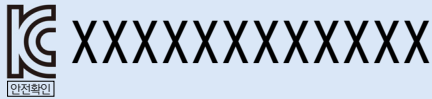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3부 :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열부분과 사람이 들어가는 덮개 등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욕실에 전열장치를 설치하여 스팀을 발생시켜 스팀 욕을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스팀사우나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
 - 적외선 발광체를 정확히 동일한 제조사 및 발광체 모델로 대체하라는 지침을 명시해야 한다.
 - 기호 ISO 7000-0790(2004-01) 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전열기의 상단과 사우나룸의 천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전열기의 하단과 사우나실의 바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러한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보호용 레일을 포함한 사우나룸의 가연성 재료와 전열기 사이의 최소 수평 거리
 - 우묵하게 들어간 공간에 설치하도록 의도된 사우나 전열기가 설치될 공간의 최대 깊이와 최소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에는 “경고 덮지 마시오.” 내용과 함께, 색상을 제외하고, ISO 3864-1의 금지 기호와 기호 IEC 60417-5641 (2002-10)을 표시해야 한다.
- ◆ 조립식 사우나 또는 조립식 적외선 캐빈의 내벽은 사우나 전열기 또는 적외선 발광체와 인접하여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경고 : 히터나 적외선 캐빈을 덮을 경우 화재 위험이 있다
- ◆ 사우나 전열기에는 다음의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 용기에 물을 부적절하게 채우면 화재 위험이 있음.
- ◆ 사우나실 안쪽에 부착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제어장치, 보호장치, 제어판
 - IPX4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사우나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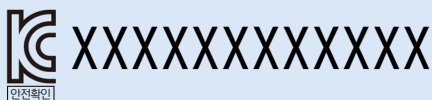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3부: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열부분과 사람들이 들어가는 덮개 등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욕실에 전열장치를 설치하여 핀란드식 사우나를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사우나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
 - 적외선 발광체를 정확히 동일한 제조사 및 발광체 모델로 대체하라는 지침을 명시해야 한다.
 - 기호 ISO 7000-0790(2004-01) 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전열기의 상단과 사우나룸의 천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전열기의 하단과 사우나실의 바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러한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보호용 레일을 포함한 사우나룸의 가연성 재료와 전열기 사이의 최소 수평 거리
 - 우뚝하게 들어간 공간에 설치하도록 의도된 사우나 전열기가 설치될 공간의 최대 깊이와 최소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에는 "경고 덮지 마시오." 내용과 함께, 색상을 제외하고, ISO 3864-1의 금지 기호와 기호 IEC 60417-5641 (2002-10)을 표시해야 한다.
- ◆ 조립식 사우나 또는 조립식 적외선 캐빈의 내벽은 사우나 전열기 또는 적외선 발광체와 인접하여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경고: 히터나 적외선 캐빈을 덮을 경우 화재 위험이 있다
- ◆ 사우나 전열기에는 다음의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용기에 돌을 부적절하게 채우면 화재 위험이 있음.
- ◆ 사우나실 안쪽에 부착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제어장치, 보호장치, 제어판
 - IPX4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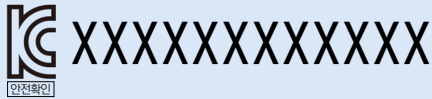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3부: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외곽으로 덮여 있고, 암석 또는 유사한 재료로 채워지는 용기를 가지는 발열체와 팬이 있는 전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
 - 적외선 발광체를 정확히 동일한 제조사 및 발광체 모델로 대체하라는 지침을 명시해야 한다.
 - 기호 ISO 7000-0790(2004-01) 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전열기의 상단과 사우나룸의 천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전열기의 하단과 사우나실의 바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러한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보호용 레일을 포함한 사우나룸의 가연성 재료와 전열기 사이의 최소 수평 거리
 - 우뚝하게 들어간 공간에 설치하도록 의도된 사우나 전열기가 설치될 공간의 최대 깊이와 최소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에는 "경고 덮지 마시오." 내용과 함께, 색상을 제외하고, ISO 3864-1의 금지 기호와 기호 IEC 60417-5641 (2002-10)을 표시해야 한다.
- ◆ 조립식 사우나 또는 조립식 적외선 캐빈의 내벽은 사우나 전열기 또는 적외선 발광체와 인접하여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경고: 히터나 적외선 캐빈을 덮을 경우 화재 위험이 있다
- ◆ 사우나 전열기에는 다음의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용기에 돌을 부적절하게 채우면 화재 위험이 있음.
- ◆ 사우나실 안쪽에 부착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제어장치, 보호장치, 제어판
- IPX4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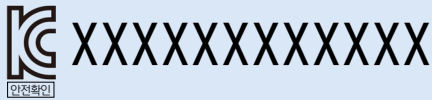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3부: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우나 전열기, 제어기, 보호 장치 및 제어판을 갖춘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
 - 적외선 발광체를 정확히 동일한 제조사 및 발광체 모델로 대체하라는 지침을 명시해야 한다.
 - 기호 ISO 7000-0790(2004-01) 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전열기의 상단과 사우나룸의 천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전열기의 하단과 사우나실의 바닥 사이의 최소 거리
 - 이러한 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보호용 레일을 포함한 사우나룸의 가연성 재료와 전열기 사이의 최소 수평 거리
 - 우묵하게 들어간 공간에 설치하도록 의도된 사우나 전열기가 설치될 공간의 최대 깊이와 최소폭
- ◆ 사우나 전열기 및 적외선 발광체에는 "경고 덮지 마시오." 내용과 함께, 색상을 제외하고, ISO 3864-1의 금지 기호와 기호 IEC 60417-5641 (2002-10)을 표시해야 한다.
- ◆ 조립식 사우나 또는 조립식 적외선 캐빈의 내벽은 사우나 전열기 또는 적외선 발광체와 인접하여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경고: 히터나 적외선 캐빈을 덮을 경우 화재 위험이 있다
- ◆ 사우나 전열기에는 다음의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용기에 물을 부적절하게 채우면 화재 위험이 있음.
- ◆ 사우나실 안쪽에 부착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제어장치, 보호장치, 제어판 - IPX4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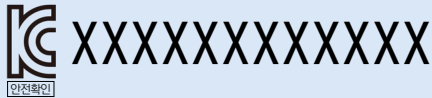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5부 :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수족관 및 정원연못의 수온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관상어용 식물용 히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사용용 기기는 1m 이상이라면 최대 동작 깊이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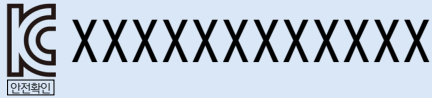
제1부 :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동물을 부화시키거나 사육을 하기 위한 히터를 내장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열 복사 기기는 다음을 표시해야한다.
 - 주의 : 화재 위험 또는 기호 "경고, 화재 위험/인화성 물질"
 - 동물용 열 방사 기기
 - 기기는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
 - 안전망을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 ◆ 다음 사항도 표기되어야 한다.
 - 대체 가능한 방열기의 최대 정격 : ...W
 - 방열기와 동물 또는 인화성 물질 간의 최소 거리
 - "덮지 말 것" 또는 ISO 3864-1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 IEC 60417-5641(2002-10)
 -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ISO 7000-0790
- ◆ 병아리 부화기 및 전기 포란기
 - "덮지 말 것" 또는 ISO 3864-1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 IEC 60417-5641 (2002-10)를 표시하여야 한다.
- ◆ 정격 전압 24 V를 초과하고 인화성 물질로부터 500 mm 이하의 거리에 고정된 난방 기기
 - 동물용 난방 기기
 - "덮지 말 것" 또는 ISO 3864-1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 ISO 7000-0790
 - 다음 사항도 표기되어야 한다.
 - 기기는 동물 또는 인화성 물질로부터 최소 고정 거리 지시 사항을 숙지할 것 (또는 ISO 7000-0790).
- ◆ 통상 사용시 바닥 기준선에서 작동시키거나 바닥보다 500 mm 이상 높지 않은 곳에서 작동시키는 열복사 기기 이외 전열기기
 - IPX7, 기타기기는 IPX4 이상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7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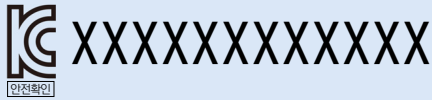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5부 :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수중 산소량을 증가하기 위해 수중에 공기를 주입하는 펌프가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사용용 기기는 1m 이상이라면 최대 동작 깊이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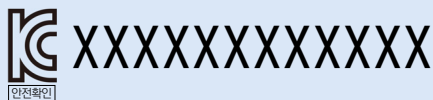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5부 :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관상을 목적으로 조명이나 여과기를 내장한 어항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관상어용 전기어항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사용용 기기는 1m 이상이라면 최대 동작 깊이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기포발생기]

기포발생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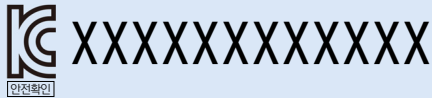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5부 :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관상어용으로 사용되고 수중 산소량을 증가하기 위해 수중에 공기를 주입하는 펌프가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기포발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사용용 기기는 1m 이상이라면 최대 동작 깊이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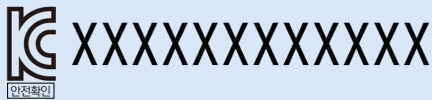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필터 시스템에 공기를 통과시켜 공기가 여과되는 독립된 기기(필터시스템에 이온화장치를 부착한 기기도 있음)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공기청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교체 가능한 UV-C 방사체가 포함된 자외선 복사 공기 청정기에는 방사체의 유형과 다음 취지의 경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경고 — 자외선 복사는 눈과 피부에 유해하다. 기기 밖에서 UV-C 방사체를 작동시키지 말 것.
- ◆ UV-C 방사체를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기기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기호 ISO 7000 - 0790(2004-0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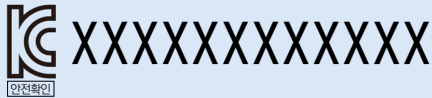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이온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산소와 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교체 가능한 UV-C 방사체가 포함된 자외선 복사 공기청정기에는 방사체의 유형과 다음 취지의 경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경고 — 자외선 복사는 눈과 피부에 유해하다. 기기 밖에서 UV-C 방사체를 작동시키지 말 것.
- ◆ UV-C 방사체를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기기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기호 ISO 7000-0790(2004-0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분무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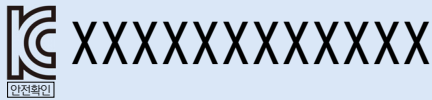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68부 : 산업용과 상업용 분무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 또는 전자전동기의 실린더 압축장치에 의해 내부에 압력을 발생하여 액체를 압력관을 통해 분무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분무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제조업체의 업종 명칭 및 주소 및 해당 시, 정식 담당자. 특정 주소는 우편 연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 ◆ 기기의 일련 번호
- ◆ 제품을 기술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기기 명칭 및 시리즈 또는 종류, 이는 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표기할 수 있다.제조 연도, 이는 제조 공정이 완료된 연도이다.
- ◆ 최대 정격 작동 압력(MPa 또는 bar 단위)
- ◆ 50°C 를 초과할 경우 분무액의 최대 출구 온도(°C 단위)
- ◆ 기기에는 가장 일반적 구성의 질량을 kg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 ◆ 기기가 60 °C를 초과하는 세제를 채우도록 설계된 경우, 충진 입구 근처에 다음의 경고를 부착해야 한다. "경고 뜨거움. 만지지 말 것." 글자의 높이는 4 m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구문은 기호 IEC 60417-5041(2002-10)로 대체할 수 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8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물수건포장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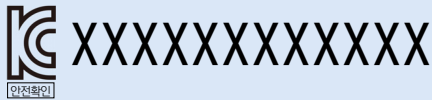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물수건 포장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물수건을 포장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물수건 포장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물수건마는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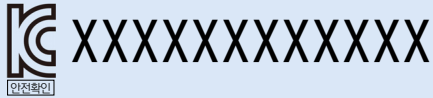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물수건 마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물수건을 말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물수건마는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주 서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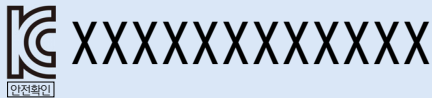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등의 재료를 찌꺼기(residue)와 주스(juice)로 분리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주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주서믹서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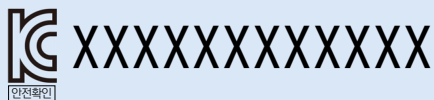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등의 재료를 찌꺼기(residue)와 주스(juice)로 분리 및 혼합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주서믹서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후드믹서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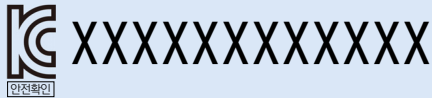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음식 재료를 혼합(mixing)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후드믹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전기녹증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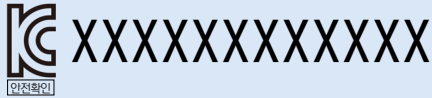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계적 압착을 이용하여 야채의 즙을 얻어 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녹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크림거품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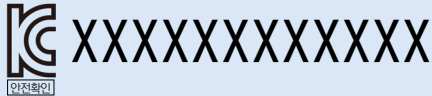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크림의 거품을 얻어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크림거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계란반죽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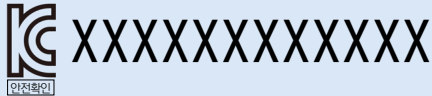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계란을 반죽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계란반죽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혼합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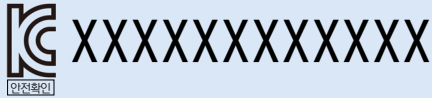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과일 등의 식재료를 혼합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혼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버터제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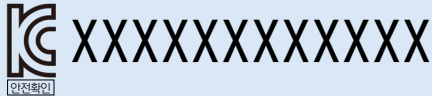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버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버터제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압즙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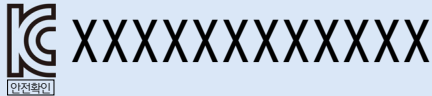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압착하여 즙을 낼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압즙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슬라이스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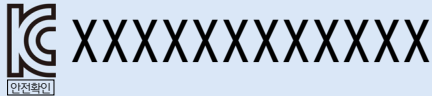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식재료 등을 얇게 썰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슬라이스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커피분쇄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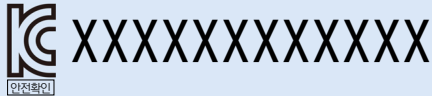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커피를 분쇄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커피분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빙삭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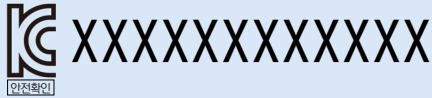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얼음을 잘게 갈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빙삭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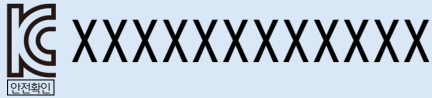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기타주방용 전동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 받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의 7항과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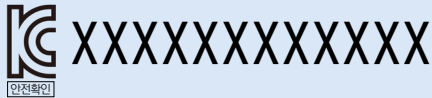
K 1002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찜질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신체에 접촉하여 일부부에 온열을 가함으로써 신체 일부분을 따뜻하게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찜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기찜질기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숙독하십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아의 사용 금지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경고 : 온열에 의한 화상 위험
- 기기 사용 시, 당뇨병자,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화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를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예) 사용자의 열에 대한 민감 정도에 따라 온열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과 K 1002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발보온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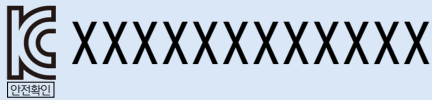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발 보온기 및 발 보온패드
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용자의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발에 신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발보온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사용전에 외출용 신발을 벗어라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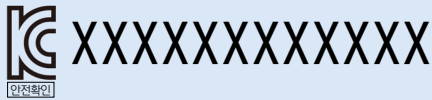
K 1002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찜질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용자의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손난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경고 : 온열에 의한 화상 위험
- ◆ 기기 사용 시, 당뇨병자,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화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를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예) 사용자의 열에 대한 민감 정도에 따라 온열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과 K 1002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전기방석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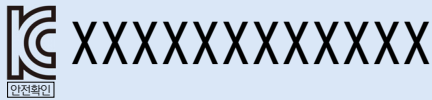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한 면이 0.3㎡ 이하의 발열 면적을 갖는 유연부로 구성되어 인체의 일부를 가열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방석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속독하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아의 사용 금지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온열시트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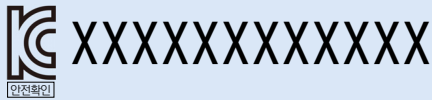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온열시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분리되는 커버에는 제조자, 상표, 식별 표시
 - 사용설명서 속독하시오
 -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
 - 영아의 사용 금지
 - ISO 7000-3114
 - ISO 7000-3124
- ◆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격살충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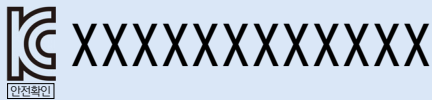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 전기살충기의 개별요구사항
 KC 100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 모기채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빛으로 해충을 유도하여 두 개 이상의 격자 눈금 사이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유도된 해충을 감전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격살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격살충기
 - 위험 : 고압
 - 대체 램프에 설치된 기기램프의 관련 형식으로 표시
 - 기기를 파손하거나 파괴하지 않고는 교체할 수 없는 램프를 내장한 기기 "경고: 이 기기의 램프는 교할 수 없다. 램프가 작동을 멈추었을 때는 기기를 폐기한다"
- ◆ 전격살충기(모기채)
 - 기기는 IEC 60417의 기호 5036으로 표시되어야 하거나 다음 내용으로 표시
 - 배터리 구동기기는 배터리 전압과 극성이 무관하지 않는한 극성을 표시해야 한다.
 - 배터리 구동기기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이름, 상표 또는 제조자의 식별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책임있는 판매자
 - 모델 또는 형식 기준
 - IPX0를 제외한 물 저항 정도를 나타내는 IP 넘버
 - 배터리의 형식 기준
 - 관련있다면, 양극의 단자는 심볼 IEC 60417-5005 (2002-10)로 나타내야하고 음극의 단자는 IEC 60417-5006(2002-10)로 나타내야 한다.
 - 기기가 한개 이상의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배터리의 적절한 극성 연결을 나타내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9의 7항과 KC 1002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자동판매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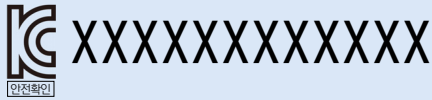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5부 : 상업용 디스펜싱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신문, 담배, 커피, 음료, 기타 제품 등의 판매기로서, 동전을 투입하거나 카드를 넣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물건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자동판매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실외용기기 IPX4 이상표기
- ◆ 물 분사 사용 및 세척시 이용기기 IPX5 이상표기
- ◆ 기기의 정격압력(단위 : MPa)
- ◆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기기인 경우, 최대허용수압(단위 : MPa)
- ◆ **수동으로 물 채우는 기기** : 수위표시 또는 청각이나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
- ◆ **콘센트를 포함하는 기기** : 전압, 전원특성, 전류 또는 전원출력에 대한 내용을 콘센트 근처 표시
- ◆ **기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물에 담그게 되는 기기** : 최대허용수위 표시 및 "표시된 수위 이상 물에 담그지 마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7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소독기]

전기소독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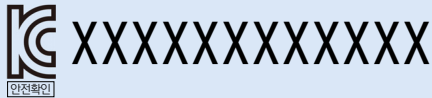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7000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전기소독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자외선 살균등을 내장하여 목적물을 살균 소독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소독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7000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제습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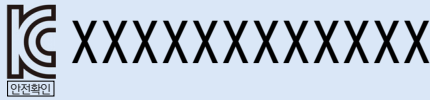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주위의 공기로부터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설계하고, 외함 내에 완성된 조립품. 전기로 동작하는 냉매시스템 및 공기를 순환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기 및 배출물을 모으고 유지 및 처리하는 배수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제습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냉매의 질량 또는 공비형 냉매를 제외한 각각의 혼합 성분의 질량
 - ◆ 냉매 식별
 - ◆ 냉매 회로에 관하여 흡입측 및 방출측에 대하여 각각의 허용 최대 운전 압력
 - ◆ 유체의 흐름 방향 표시
 - ◆ 실외용인 경우 - IPX4
 - ◆ 실내용(세탁실제외)인 경우 - IPX0
 - ◆ 세탁실에서 사용할 경우 - IPX1
 - ◆ 보조히터가 있을 경우 - 보조 히터의 정격입력 표시
 - ◆ 인화성 냉매 사용시
 - 사용설명서, 정비지침 및 설치지침을 읽어야 한다는 기호
 - 추가 경고 기호(화염기호: ISO 3864의 B.3.2)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4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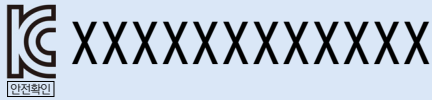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6부 :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기 개별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음식물 쓰레기를 모터를 이용하여 압축, 분쇄하거나 히터를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기기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음식물처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음식물처리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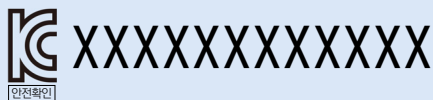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6부 :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기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주방용 싱크대에 설치하여 모터를 이용하여 음식물분쇄기를 분쇄하는 기기로, 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주방용 오물분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보온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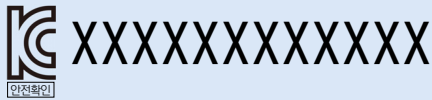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2부 :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열장치를 이용해서 식품(음식) 또는 용기(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 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보온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020년 10월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를 세척할 때 기기가 부분적으로 물에 잠기는 경우
 - 기기를 물에 담글 때 허용되는 최대 수위를 표시해야 하고, 다음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물에 담글 때는 표시된 수위를 넘지 않도록 하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1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주온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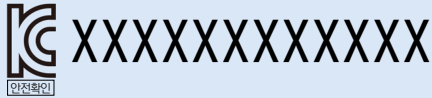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2부 :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술을 보온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주온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기기를 세척할 때 기기가 부분적으로 물에 잠기는 경우
 - 기기를 물에 담글 때 허용되는 최대 수위를 표시해야 하고, 다음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물에 담글 때는 표시된 수위를 넘지 않도록 하시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1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온장고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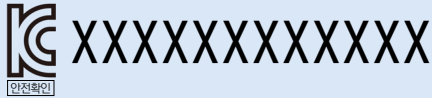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9부: 상업용 전기 보온찬장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식품 및 식기 등을 전기적 가열장치에 의하여 보온을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온장고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온장고**
 - 통상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IPX3 이상
 - 그 밖의 기기는 IPX4 이상
 - 250V를 초과하는 사용 전압에서 충전부에 달게 되는 모든 덮개에는 기호 IEC 60417-5036 (2002-10) 또는 다음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경고-위험전압'
- ◆ **수도에 접속하는 기기 중 사용설명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수압 및 수압의 범위(단위: kPa)
- ◆ **유도가열원을 내장한 기기**
 - 동작 주파수 또는 동작 주파수 범위(kHz)
 -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유도 가열유닛의 총 입력 전력(W 또는 kW)
 -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모든 비유도 가열유닛의 총 입력전력(W 또는 kW)
 - 유도코일에 달게 되는 덮개에는 기호 IEC 60417-5140 (2003-04) 또는 다음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주의-자기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9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유체펌프]

유체펌프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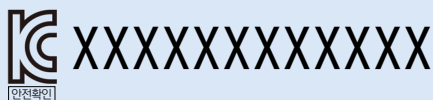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1부 : 전기 펌프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력을 이용하여 기계적 수압을 발생시켜 액체 및 오수를 이동시키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유체펌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50W 초과 펌프는 다음 표시
 - 총 수두
 - 최대 동작 깊이
 - 회전방향
 - 최대 액체온도, 동작 기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C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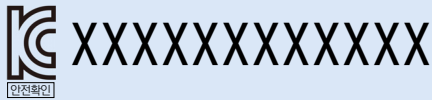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1부 : 전기 펌프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계적 수압을 발생시켜 온수를 이동시키는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온수펌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50W 초과 펌프는 다음 표시
 - 총 수두
 - 최대 동작 깊이
 - 회전방향
 - 최대 액체온도 , 동작 기간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C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납땀인두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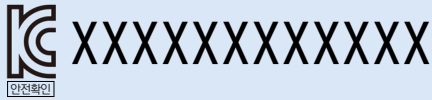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납땀을 녹이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납땀인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납땀제거인두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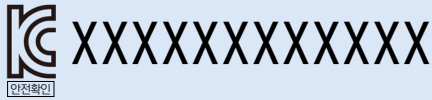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납땀을 녹이고 제거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납땀제거인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권총형납땀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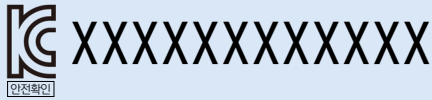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납땀을 녹이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권총형납땀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020년 10월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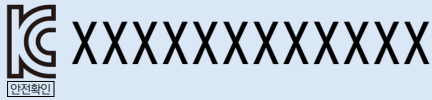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일체화된 가열소자를 가지며 가연성재를 부분적으로 녹여 도관을 용접하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열가소성도관용접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필름접착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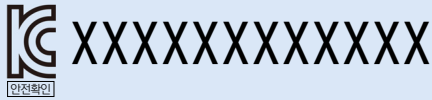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필름을 전기가열부분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가열되어진 부분에 열가소성 필름을 접착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필름접착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플라스틱절단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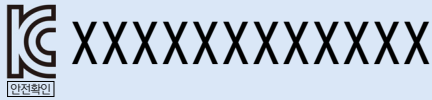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재료가 고정되는 전기가열부분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가열된 부분에 플라스틱을 절단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플라스틱절단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페인트제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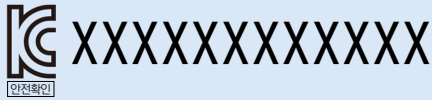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도료연화용(페인트)으로 전기적으로 가열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가열총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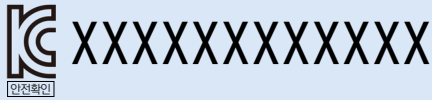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뜨거운 공기를 분사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가열총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가열기기]

전기조각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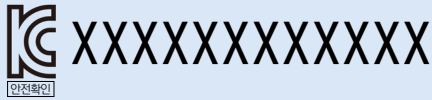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5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조각기를 이용하여 나무나 다른 물질을 조각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조각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접촉시 점화기에는 연료 안으로의 삽입 한계를 표기
- ◆ 적어도 IPX4가 아닌 접촉시 점화기에는 다음 내용 표기
 - * 비나 습기에 노출 금지
 - * 열가소성 전선관 용접 기구에는 함께 사용되는 금구류의 유형과 그 설정값을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4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욕조]

소용돌이욕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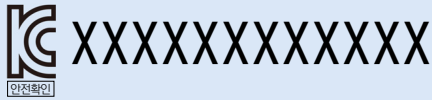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0부 : 전기기포 발생욕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진공성형 등으로 제작된 욕조에 전기모터(Pump) 및 흡입구, 히터, 배관 등을 하나로 시스템화 시켜 일체형으로 만든 기기로,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소용돌이욕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C 60335-2-6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욕조]

반신·전신욕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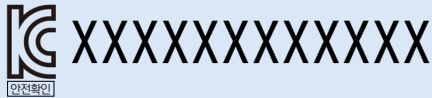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2, 반신욕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기 안에 전열소자가 내장되어 있고, 그 전열소자에 의해 따뜻해진 물에 몸을 담글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반신·전신욕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최대 욕조 물 수위를 나타내는 수위표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위를 나타내는 표시
- ◆ 반신욕조의 경고문
 - 경고: 온수에 의한 화상 위험
 - 기기 사용시, 당뇨병자,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화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를 보기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사용자가 열의 민감 정도에 따라 물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 10002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전기욕조]

발욕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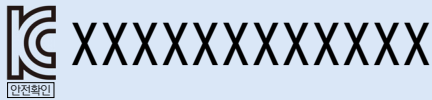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3, 발욕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기 안에 전열소자가 내장되어 있고, 그 전열소자에 의해 따뜻해진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발욕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IPX4 표기
- ◆ 욕조의 최대 물 수위표시
- ◆ '경고: 온수에 의한 화상 위험'
- ◆ '사용자가 열의 민감 정도에 따라 물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 및 K 10003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기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기타 전기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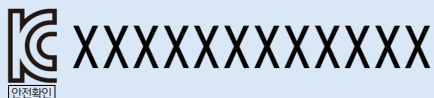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그 밖에 전기기기와 유사한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기타 전기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전기차 충전기는 정격용량이 200 kVA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수상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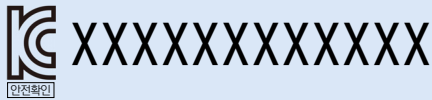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안테나 단자를 통해 입력된 텔레비전방송신호를 내장된 튜너를 이용하여 선국 및 영상과 음성으로 변환시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텔레비전수상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중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기계·기구류에 부속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철판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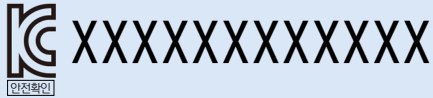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텔레비전이 내장된 전자철판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철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중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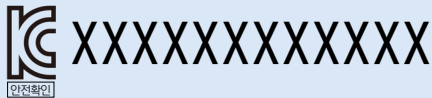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텔레비전이 내장된 전자테이블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기계·기구류에 부속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디스크 플레이어]

디스크 플레이어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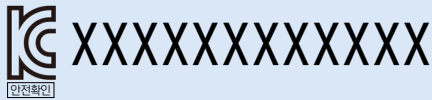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디스크 형태의 저장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 하거나 또는 외부입력단자로 공급되는 신호를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디스크플레이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중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㉑)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기계·기구류에 부속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오디오시스템]

오디오시스템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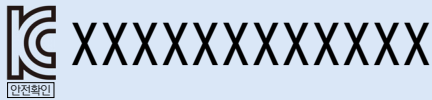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Disk, Amp, Cassette Deck, Tuner등의 복합기능을 하나의 시스템(하나의 전원 사용)으로 조합하여 음성의 기록, 방송신호 및 음성 신호를 증폭하여 스피커의 구동, 재생된 영상신호를 다른 기기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오디오시스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기계·기구류에 부속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오디오프로세서]

오디오프로세서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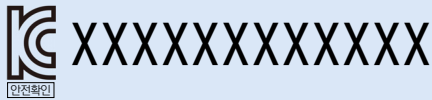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음성신호를 입력단자를 통해 공급받아 변조시켜 다른 기기로 전달하는 장치로, 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오디오프로세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중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기계·기구류에 부탁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영상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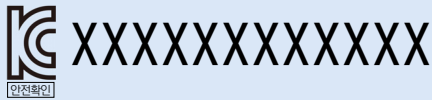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영상신호를 입력단자를 통해 공급받아 변조시켜 다른 기기로 전달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영상프로세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기계·기구류에 부탁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기타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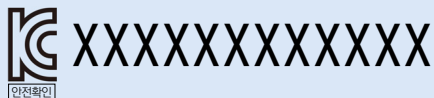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그 밖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와 유사한 기타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기타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정보·통신·사무기기 [모니터]

모니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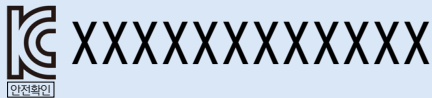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컴퓨터 혹은 정보사무기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영상 출력장치로서 기기의 동작 혹은 실행신호를 표시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모니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모니터 내장형 전자철판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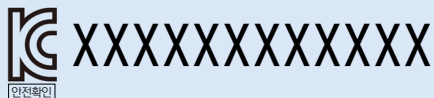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모니터가 내장되어 모니터로도 사용가능하며 전자철판의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모니터 내장형 전자철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정보·통신·사무기기 [모니터]

모니터 내장형 전자레이블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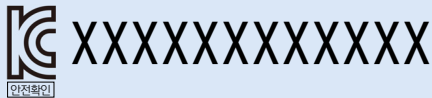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모니터가 내장되어 모니터로도 사용가능하며 터치 테이블의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모니터 내장형 전자레이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정보·통신·사무기기 [프린터]

프린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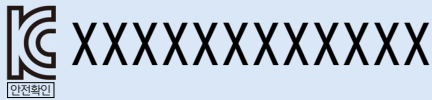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컴퓨터 주변장치의 하나로써 컴퓨터에서 작업된 텍스트 혹은 그래픽 등을 종이에 인쇄하는 출력장치로, 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프린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정보·통신·사무기기 [프로젝터]

프로젝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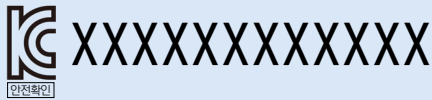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영상재생장치(VCR, DVD 또는 컴퓨터 등)로부터 제공된 신호를 입력단자를 통해 공급받아 스크린에 투사하여 화상으로 보여주는 장치(빛을 이용하므로 빔 프로젝터라고 함)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프로젝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정보·통신·사무기기 [문서세단기]

문서세단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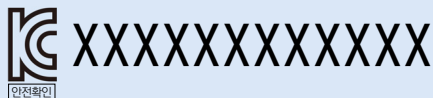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보안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서류나 영수증 등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문서세단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 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표시 및 설명
문서/매체 투입구 주변에 기호 (ISO 7000-0434)와 기호 (ISO 7000-1641)를 표시하여야 하며, 기호의 설명이 사용자 설명서에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정보·통신·사무기기 [천공기]

천공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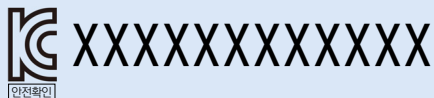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일정한 간격이나 크기로 문서에 구멍을 내어 제본이나 철을 쉽게 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천공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복사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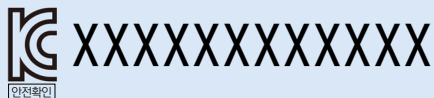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서류와 그림의 원본(Original)에서 사본(寫本)을 얻어내는 장치이며, 광원의 정격출력이 1.2 KW이하인 것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복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정보·통신·사무기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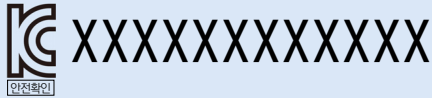
K 62040-1, 무정전 전원 시스템 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교류의 상용전원이 공급될 때에는 축전지에 전원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정전 혹은 입력 측에 문제 발생 시는 축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변환하여 기기에 연속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정격용량이 10 kVA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무정전 전원장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2040-1의 4.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정보·통신·사무기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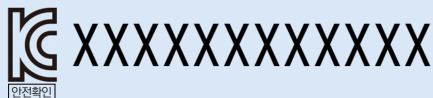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교류의 상용전원이 공급될 때에는 축전지에 전원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정전 혹은 입력 측에 문제 발생 시는 축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변환하여 기기에 연속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정격용량이 10 kVA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무정전 전원장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디지털TV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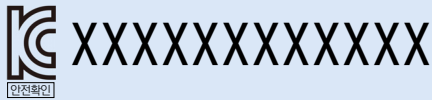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디지털방식에 의해 방송되는 고화질, 고음질을 구현하여 기존 방식보다 화질이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 수상기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디지털TV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코팅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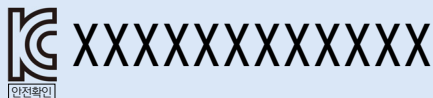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진, 서류 등에 얇은 막을 덮어 씌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롤러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코팅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정보·통신·사무기기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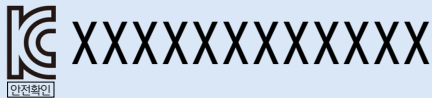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컴퓨터를 휴대용으로 만들어 여러모로 활용성이 높은 간편한 컴퓨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노트북컴퓨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태블릿 PC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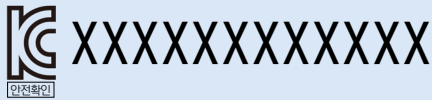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키보드 없이 손가락 또는 전자펜을 이용해 직접 LCD(액정) 화면에 글씨를 써서 문자를 인식하게 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을 주 입력 방식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기로,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cm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음성통화기능이 있는 경우도 태블릿 PC로 본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태블릿 PC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정격 표시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외부 표면 어느 곳이나 부착가능)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대상으로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정보·통신·사무기기 [전지]

전 지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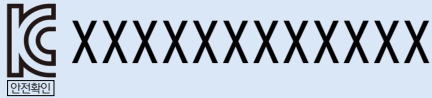
KC 62133,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
 KC 62133-2,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K 10024, 소형 밀폐 2차 전지의 유해 물질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전기를 만들어 내는 장치이며, 충전지만 해당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3.7 V 1500 mAh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형식명
- ◆ 극성(외부 커넥터 설계가 반대 극 접촉을 방지하는 경우는 표시할 필요가 없음)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2133의 10항, KC 62133-2의 9항과 K 10024의 8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 ◆ 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지에 대한 주의
 KC 62133-2의 8항과 9항 및 KS C IEC 61960-3의 5항에 따라 단전지 또는 전지를 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단전지 및 전지 또는 포장지에 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지에 대한 주의 문구를 추가로 표시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리튬이차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정보·통신·사무기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기타 정보·통신·사무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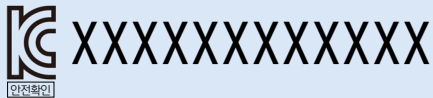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그 밖에 유사한 기타 정보·통신·사무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기타 정보·통신·사무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명기기 [백열등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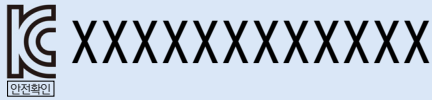
-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 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000 V 이하에서 백열등을 사용하는 조명기구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저온 빔
- ◆ 볼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십시오)
- ◆ 이그나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2종 등기구 기호
- ◆ 3종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 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원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개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그림1참조)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598-1의 제3절과 KC 60598-2-1의 5항과 KC 60598-2-2의 6항과 KC 60598-2-4의 4.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명기기 [백열등기구]

상데리아 등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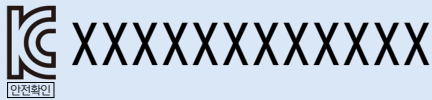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000 V 이하에서 백열등을 사용하는 조명기구로,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상데리아 등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저온 빔
- ◆ 볼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시오)
- ◆ 이그나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2중 등기구 기호
- ◆ 3중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 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원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개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그림1참조)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598-1의 제3절과 KC 60598-2-1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명기기 [방전램프]

형광램프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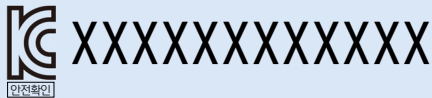
- KC 61195, 이중 형광램프 - 안전
- K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 - 성능
- K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 - 안전
- K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 - 성능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자외선 방사에 의해 여기되는 형광물질층에 의해 대부분의 빛이 발광하는 이중 캡 및 싱글 캡 저압 수은 방전램프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형광램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195의 2.2항과 KC 61199의 2.2항과 KC 60081의 1.5.8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000 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명기기 [방전램프]

무전극램프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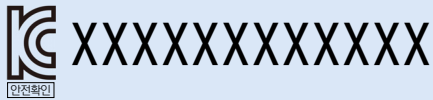
K 10005, 무전극 형광램프에 관한 안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램프 방전 공간내에 전극이 없고 램프 벌브에 형광체와 봉입가스를 주입하며 외부 유도코어에 고주파(3 kHz~300 MHz)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램프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무전극램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10005의 2.2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000 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수은램프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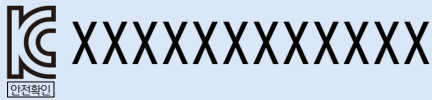
KC 62035, 방전램프 - 안전요구사항(형광램프 제외)
KC 60188, 고압 수은램프 - 성능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수은 방사에 의해 빛의 주요 부분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고휘도 방전램프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수은램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2035의 4.2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000 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명기기 [방전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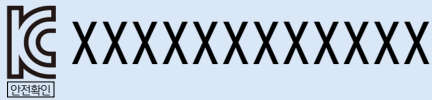
KC 62035, 방전램프 - 안전요구사항(형광램프 제외)
KC 60167, 메탈할라이드램프 - 성능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주로 빛이 금속 증기와 할로겐 화합물의 해리성 화합물과의 혼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휘도 방전램프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메탈할라이드램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2035의 4.2항과 KC 60167의 1.4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000 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명기기 [방전램프]

나트륨램프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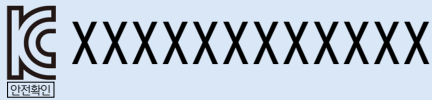
- KC 62035, 방전램프 - 안전요구사항(형광램프 제외)
- K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 - 성능
- KC 60192, 저압나트륨램프 - 성능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나트륨 방사에 의해 빛의 주요부분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고휘도 방전램프(칼라램프 포함)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나트륨램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2035의 7.12항과 KC 60662의 4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000 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명기기 [백열등기구를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기]

체인형 조명기구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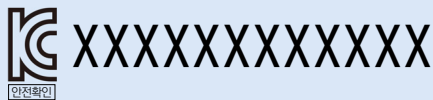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20, 등기구 제2-20부 : 체인형 조명기구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250 V 이하인 공급 전압으로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용되는,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되는 백열등에 적합한 조명등 체인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체인형 조명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저온 빔
- ◆ 볼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십시오)
- ◆ 이그나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2중 등기구 기호
- ◆ 3중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 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원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개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그림1참조)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598-1의 제3절과 KC 60598-2-20의 20.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명기기 [백열등기구를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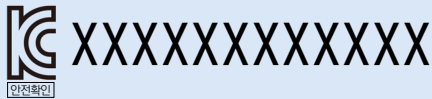
K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8, 조명기구 제2-8부: 충전식 휴대전등의 안전 요구 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정격전압이 250 V 이하이며, 광원과 함께 사용하여 손에 쥐거나 벽에 거는 손전등 및 유사한 휴대 등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충전식휴대전등
- 모델명: KPSA-1100
- 정 격: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저온 빔
- ◆ 불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십시오)
- ◆ 이그나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2중 등기구 기호
- ◆ 3중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 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원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개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그림1참조)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598-1의 제3절과 KC 60598-2-8의 8.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명기기 [백열등기구를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기]

투광조명기구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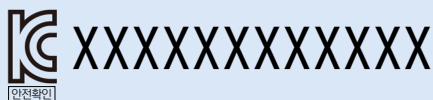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5, 등기구 제2-5부 : 투광조명기구 -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000V를 넘지않는 전원을 가지고 관형형광램프, 텅스텐 필라멘트 그리고 다른 방전 램프 및 LED 램프를 사용하는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인 투광조명기구로,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 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투광조명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저온 빔
- ◆ 볼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십시오)
- ◆ 이그나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2중 등기구 기호
- ◆ 3중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 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원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개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그림1참조)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598-1의 제3절과 KC 60598-2-5의 5.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명기기 [백열등기구를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기]

할로겐등기구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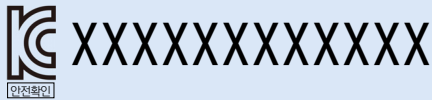
-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 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1000V이하에서 구동장치가 없는 할로겐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할로겐등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특수램프
- ◆ 자온 빔
- ◆ 불 미러 램프
-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시오)
- ◆ 이그나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 자기차폐램프
-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 2중 등기구 기호
- ◆ 3중 등기구 기호
-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 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전원단자 접지단자 기호
-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개수
-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그림1참조)
- ◆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598-1의 제3절과 KC 60598-2-1의 5항과 KC 60598-2-2의 6항과 KC 60598-2-4의 4.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명기기 [방전램프를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백열전구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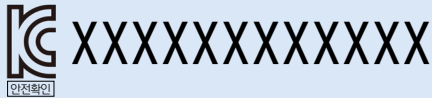
KC 60432-1, 백열전구 - 안전 제1부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기용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
KC 600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기용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 - 성능 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텅스텐 필라멘트 백열전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백열전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다이크로의 반사 전구와 볼 거울 전구의 표시
- ◆ 점등 위치 제한을 갖는 전구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432-1의 4.2항과 KC 60064의 3.2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일상생활에서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PCB LED 모듈은 LED램프(모듈)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명기기 [방전램프를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LED램프(모듈)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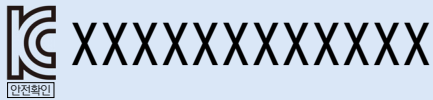
K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 - 안전요구사항
KC 10025,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 컨버터 내장형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일정한 전압, 일정한 전류 또는 일정한 전력 하에서 동작하는 일체형 제어장치가 없거나 50 Hz 또는 60 Hz 에서 250 V 이하 직류 전원 또는 1,000 V 이하 교류 전원에서 사용하는 안정기 내장형 LED 모듈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LED램프(모듈)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다이크로의 반사 전구와 볼 거울 전구의 표시
- ◆ 점등 위치 제한을 갖는 전구 표시, 램프전류 등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2031의 7항과 KC 10025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 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일상생활에서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PCB LED 모듈은 LED램프(모듈)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명기기 [방전램프를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할로겐전구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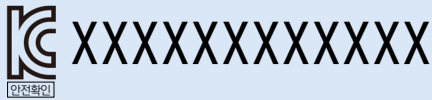
KC 60432-2, 백열전구(텅스텐전구) - 안전 제2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기용 텅스텐 할로겐 전구
 KC 60432-3, 백열전구(텅스텐전구) - 안전 제3부 텅스텐 할로겐 램프 (비차량용)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할로겐 및 할로겐 화합물을 포함한 기체가 채워진 램프, 필라멘트는 텅스텐으로 되어 있고, 250 W 이하인 것에 한정하며 칼라램프를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할로겐전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다이크로의 반사 전구와 볼 거울 전구의 표시
- ◆ 점등 위치 제한을 갖는 전구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432-2의 2.2항과 KC 60432-3의 2.2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일상생활에서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PCB LED 모듈은 LED램프(모듈)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력변환장치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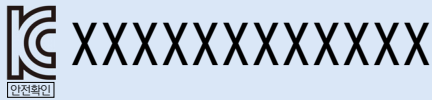
K 62477-1, 전력전자 변환기기 및 시스템(PECS) - 제1부: 일반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정격용량이 2 M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력변환장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5 A(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안전확인신고 마크
- ◆ 안전확인신고 번호
- ◆ IP등급
- ◆ 접촉전류, 위상
- ◆ 캐패시터 방전시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2477-1의 6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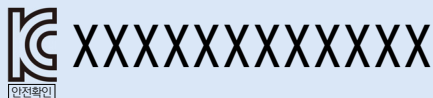
KC 62619,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정격용량이 300 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800 V 100Ah 1000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외부 표면에 극성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외부커넥터 설계가 반대극 접속을 방지하는 경우 제외)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전기 빵 자르개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주류숙성기
전기사계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분수기
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트립 투영기
OHP
필름투영기
착유기
보풀제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 작동 도어록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
전동형 롤스크린
기타 전기기기
전기드릴
전기드라이버
전기그라인더
전기해머
전기잔디깎기
전기못총
기타 전동공구
비디오카메라

튜너
라디오 수신기
리시버
음성기록계
음성플레이어
위성방송수신기
비디오폰
음질조절기
AD/DA변환장치
컴프레서 게이트
전기사계
CCTV 카메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기록계
A/V신호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턴테이블
모듈레이터
비디오 게임기구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앰프
앰프 내장형 스피커
편집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전자악기
기타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스캐너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어학실습기
전자칠판
전자보드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 충전기
번호표 발행기
티켓 발행기
순번대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설비의 기기:
HF주파수대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설비의 기기:
VHF/UHF주파수대
생활무선국용 무전설비의 기기
해상이동전화용 무전설비의 기기
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
무선 헤드셋
IP 주소 공유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재단기
실물화상기

입체영상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전화기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팩시밀리기기
홈오디오메이션
비디오오디오폰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금융단말기기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내비게이션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제본기
스테이플러
그 밖에 유사한 기기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감자탈피기]

감자탈피기

적용기준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감자의 껍질을 깎을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감자탈피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감자탈피기 (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발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감자탈피기 (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정미기]

전기정미기

적용기준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쌀의 껍질을 깎을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정미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정미기(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발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전기정미기(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이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 빵 자르개]

전기 빵 자르개

적용기준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를 이용 빵을 절단 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전기 빵 자르개
- 모델명: KPSA-1100
- 정 격: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 빵 자르개 (가정용)
 - (1) 무선제품과 함께 제공된발침대 표기사항
 -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이름, 상표, 식별표지
 - 모델 또는 형식 참조
- ◆ 전기 빵 자르개 (상업용)
 - (1) IPX1 표기
 - (2) 기기에 정격 “켜짐” 시간과 “꺼짐” 시간이 표시된 경우, “켜짐” 시간 표시가 “꺼짐” 시간 표시보다 앞에 위치하며 두 표시는 사선으로 구분
 - (3)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수압 또는 압력 범위를 킬로파스칼 (kPa) 단위로 표기
 - (4)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역전 위험하다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을 지정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14, KC 60335-2-6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주류숙성기]

공급자 적합성

애완동물 목욕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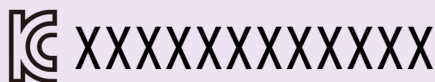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애완동물 목욕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애완동물을 목욕시킬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애완동물 목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7항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주류숙성기]

전기주류숙성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 전기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발열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숙성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주류숙성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5 A 100 W 60 Hz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전기주류숙성기
 - 기후등급
 - 램프의 최대 정격 와트 (램프가 기기 부품과 함께 제조자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발표제 주성분의 화학명 또는 냉매번호
- ◆ 전동압축기 타입 기기의 경우
 - 정격전류(A)로만 표기(아이스크림 기기 제외)
 - 제상 전력과 연관된 전류가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냉매 종류 및 냉매량
- ◆ 그 이외의 기기 경우
 - 제상 히터 전력이 기기의 정격 입력 전력보다 클 경우 제상 히터 전력(W) 표기
- ◆ 가열 시스템 전력(W)이 100 W보다 클 경우
 - 가열 시스템 전력(W) 표기
- ◆ 내장형 제빙기이면서 전력이 100 W가 넘는 경우
 - 제빙기 최대 입력전력(W)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4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시계]

전기시계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6부 : 전기시계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교류전원을 사용하고 시간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측정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시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6항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7부 : 피부관리용 자외선 및 적외선 방사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적외선 방출기를 내포하는 어떤 스크린이나 보호막의 스크린 효과에 관계없이 800nm 혹은 그 이상의 파장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방 사원을 가진 피부 관리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상업용 UV기기의 경우
 - 가정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 ◆ UV방사기가 있는 경우

경고 : 자외선은 피부 노화나 피부 암 같이 눈과 피부에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는다. 제공된 보호 고글을 착용한다. 특정한 약과 화장품은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 ◆ 휘도가 100,000 cd/m²를 초과하는 UV 방사기가 있는 기기의 경우

경고 : 빛이 강함. 방사기를 응시하지 말 것.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7항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7부 : 피부관리용 자외선 및 적외선 방사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자외선 방출기를 내포하는 어떤 스크린이나 보호막의 스크린 효과에 관계없이 400nm 혹은 그 이하의 파장에서 전자기적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방사원을 가진 피부 관리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상업용 UV기기의 경우
 - 가정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 ◆ UV방사기가 있는 경우
 - 경고 : 자외선은 피부 노화나 피부 암 같이 눈과 피부에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는다. 제공된 보호 고글을 착용한다. 특정한 약과 화장품은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 ◆ 휘도가 100,000 cd/m²를 초과하는 UV 방사기가 있는 기기의 경우
 - 경고 : 빛이 강함. 방사기를 응시하지 말 것.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27항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분수기]

전기분수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5부 :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분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분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사용용 기기는 1 m 이상이라면 최대 동작 깊이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5항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투영기]

슬라이드 투영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슬라이드의 스틸 투영(정지영상)을 위한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슬라이드 투영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투영 램프의 입력 전력을 램프홀더 근처나 위에 표기
- ◆ 램프의 정격전압 또한 표시.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투영기]

필름스트립 투영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필름 스트립 또는 룰(Loop)에서 각각의 틀의 순차적 또는 무작위 방식 투영을 위한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필름스트립 투영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투영 램프의 입력 전력을 램프홀더 근처나 위에 표기
- ◆ 램프의 정격전압 또한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투영기]

공급자 적합성

OHP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스틸 투영 용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OHP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KPSA-1100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투영 램프의 입력 전력을 램프홀더 근처나 위에 표기
- ◆ 램프의 정격전압 또한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투영기]

필름투영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스크린 위에 동영상 필름을 보기 위한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필름투영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투영 램프의 입력 전력을 램프홀더 근처나 위에 표기
- ◆ 램프의 정격전압 또한 표기.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5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착유기]

공급자 적합성

착유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0부 : 전기착유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진공 시스템, 진동 시스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클러스터 그리고 다른 부품들을 포함하는 젖을 짜기 위한 기계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착유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물 분무 세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IPX6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는 착유기 또는 중간조립품
 - "호스로 물을 뿌리지 말 것" 이라는 문구 또는 ISO 3864-1 의 금지 표지(색상 제외)와 결합된 기호 ISO 7000-0073 을 표기하여야 한다.
 - 호스로 물을 뿌리지 말 것.
- ◆ 진공 펌프와 맥동 장치
 - 정격 진공(단위 : kPa)을 표기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7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보풀제거기]

보풀제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부 : 면도기, 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회전하는 칼날을 이용하여 옷에 붙은 보풀을 제거하는 기기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보풀제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8의 7항에 따라 제품 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K 100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0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기 작동 도어록]

전기 작동 도어록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K 100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작동 도어록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건을 자동으로 동작 시킬 수 있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 작동 도어록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 1001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필터 시스템에 공기를 통과시켜 공기가 여과되는 독립된 기기로, 필터시스템에 이온화 장치를 부착한 기기도 있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공기청정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교체 가능한 UV-C 방사체가 포함된 자외선 복사 공기 청정기에는 방사체의 유형과 다음 취지의 경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경고 : 자외선 복사는 눈과 피부에 유해하다. 기기 밖에서 UV-C 방사체를 작동시키지 말 것.
- ◆ UV-C 방사체를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기기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기호 ISO 7000-0790(2004-0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살균이온을 배출하여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기기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이온발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5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교체 가능한 UV-C 방사체가 포함된 자외선 복사 공기 청정기에는 방사체의 유형과 다음 취지의 경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경고 : 자외선 복사는 눈과 피부에 유해하다. 기기 밖에서 UV-C 방사체를 작동시키지 말 것.
- ◆ UV-C 방사체를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기기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것.” 또는 기호 ISO 7000-0790(2004-0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6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전동형 롤스크린]

공급자 적합성

전동형 롤스크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9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7부 : 회전식 셔터, 차양, 블라인드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동기를 이용 스위치 조작으로 스크린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는 롤 스크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동형 롤스크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구동장치를 말한다)

- (1) 구동부 없이 공급되는 구동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정격토크(단위 : Nm)
 - 정격동작시간(단위 : 분).
 - 연속사용 용도의 기기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구동부를 제공하는 구동장치
 - 정격동작주기가 표기되어야 한다.
 - 연속사용 용도의 기기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과 KC 60335-2-9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기기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기타 전기기기

적용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그 밖에 유사한 전기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기타 전기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335-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전기드릴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부 : 전기드릴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금속, 플라스틱, 나무등과 같이 다양한 재질에 구멍을 뚫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드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10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7.12항과 KC 60745-2-1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전기드라이버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2,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2부 : 전기스크류 드라이버 및 임팩트렌치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머리에 홈이 있는 나사를 특정 부위에 결합 또는 분리할 목적으로 회전시키기 위해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드라이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10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2의 7항에 따라 제품 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전기그라인더

적용기준

-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0745-2-3,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3부 :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및 디스크샌더의 개별요구사항
- KC 61029-1,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C 61029-2-4, 이동형 전동공구 안전성 제2-4부 : 탁상그라인더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연마재가 디스크의 표면에 부착되어 연마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그라인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10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3의 8항과 KC 61029-1의 7항과 KC 61029-2-4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전기해머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6,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6부 : 전기해머의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다양한 재질을 두드리거나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력을 가하여 못 등의 물체를 특정부위에 고정시킬 목적으로 설계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해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10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6항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공급자 적합성

전기잔디깎기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15,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5부 : 가지치기 및 제초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잔디의 잎줄기를 잘라 잔디밭을 고르게 손질하는 수지형 전동 공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잔디깎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10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15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전기못총

적용기준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16,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6부 : 태커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목재에 구멍을 뚫는 또는 목재에 못 등을 박기 위한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기못총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10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항과 KC 60745-2-16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기타 전동공구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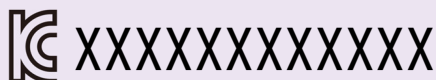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기타 전동공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기타전동공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DC 24 V 10W(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745-1의 8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비디오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렌즈에 맺힌 피사체(被寫體)의 이미지(像)를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다른 기기로 전송하거나 또는 내장되는 자기데이터프 등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비디오카메라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튜너]

튜너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안테나 단자를 통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신호를 내장된 튜너로 수신하여 다른 영상기기 또는 음향기기로 전달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튜너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라디오 수신기]

라디오 수신기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안테나를 통해 수신한 방송신호를 내장된 튜너를 이용하여 선국 및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라디오 수신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㉑)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리시버]

공급자 적합성

리시버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튜너가 내장되어 안테나 단자를 통해 수신된 방송신호를 증폭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리시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음성기록계]

음성기록계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외부입력단자에 공급된 음성신호를 저장장치에 기록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음성기록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2020년 10월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음성플레이어]

음성플레이어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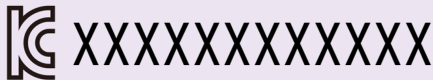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외부입력단자에 공급된 음성신호를 기록된 내용을 재생시키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음성플레이어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위성방송수신기]

위성방송수신기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입력단자를 통해 공급된 위성방송신호를 증폭하거나 잡음을 제거하여 TV 등의 영상장치에 신호를 공급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위성방송수신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㉑)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비디오폰]

비디오폰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음성만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폰과는 달리 화면을 이용 하여 상대방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본체는 거실, 카메라는 외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비디오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㉑)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음질조절기]

음질조절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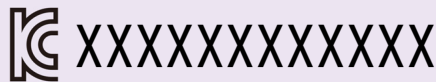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음성만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폰과는 달리 화면을 이용 하여 상대방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본체는 거실, 카메라는 외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음질조절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신호변환장치]

AD/DA변환장치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단자를 통해 공급받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다른 기기로 전달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AD/DA변환장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㉑)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컴프레서 게이트]

컴프레서 게이트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음성신호를 입력단자를 통해 공급받아 압축/해제 등의 방법으로 변조시켜 다른 기기로 전달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컴프레서 게이트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전자시계]

전자시계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숫자 표시로 시간을 알리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자시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CCTV 카메라]

CCTV 카메라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장소의 한정된 모니터로 신호를 전송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CCTV 카메라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영상 신호(디지털 또는 아날로그)를 입력단자를 통해 공급받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다른 기기로 전달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㉑)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영상기록계]

영상기록계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외부입력단자에 공급된 영상 신호를 저장장치에 기록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영상기록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A/V신호수신기]

A/V신호수신기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외부입력단자에 공급된 영상 및 음성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A/V신호수신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CATV방송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입력단자를 통해 공급된 유선방송신호를 증폭하거나 잡음을 제거하여 TV 등의 영상장치에 신호를 공급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CATV방송수신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㉑)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턴테이블]

공급자 적합성

턴테이블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LP음반을 놓고 모터의 구동을 통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할 때 픽업이 음반에 닿으면서 기록을 재생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턴테이블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모듈레이터]

모듈레이터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디지털 신호를 입력 받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모듈레이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비디오 게임기구]

비디오 게임기구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영상 및 음성신호가 내장된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임의로 제어하여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비디오 게임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종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332-2-82에 규정된 상업용 비디오게임기, 폴리머게임기, 전자게임기, 상업용스쿠어링 머신은 별표2 제7호 하목(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영상 및 음성신호가 내장된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학습할 수 있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앰프]

앰 프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외부입력단자에 공급된 음성신호를 증폭시켜 다른 기기(스피커 또는 파워앰프)로 전달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앰프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앰프]

앰프 내장형 스피커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앰프와 스피커가 하나의 외장케이스에 들어있으며, 입력단자를 통해 공급된 음성신호를 증폭시켜 내장된 스피커를 구동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앰프 내장형 스피커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편집기]

공급자 적합성

편집기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외부입력단자로 공급된 오디오/비디오 신호를 의도하는 형태로 편집/변경하는 장치로,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편집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㉑)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입력단자를 통해 공급받은 단일 음성 단일 영상신호를 여러 개의 음성 및 영상 신호로 분배하여 다른 기기로 전달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음성 및 영상분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㉑)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영상전송기]

공급자 적합성

영상전송기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영상 신호를 입력 받아 신호를 다른 기기로 전송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영상전송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전자악기]

전자악기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용자가 건반 혹은 페달 등을 조작하여 음악을 연주 하거나 또는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자악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기타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적용기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그 밖에 유사한 기타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기타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2종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㉑)
- ◆ 전원의 종류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로 표시가능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065 의 5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스캐너]

스캐너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그림, 사진 혹은 글자를 부호로 변환하여 글자 혹은 그림 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주변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스캐너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지폐계수기]

공급자 적합성

지폐계수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고무롤러에 의해 한 장씩 끌어올려 젖거나 혹은 공기압에 의해 한 장씩 잡아당겨진 지폐를 광학센서(적외선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하여 계수를 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지폐계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금전등록기]

금전등록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돈을 넣는 서랍이 있고 판매액이나 결산내용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업용 기계로서 고객과 상인이 볼 수 있도록 거래량의 표시, 현금거래에 대한 영수증의 인쇄·발행 및 자동거스름돈 계산기능 등을 가진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금전등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어학실습기]

어학실습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기기에 내장되었거나 별도로 제공된 외국어 콘텐츠의 음성 신호를 구간 반복, 속도조절 등의 여러 기능을 통해 어학을 실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어학실습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전자칠판 및 보드]

전자칠판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화면부 표면의 센서를 통해 입력기능을 보유하고 스크린으로 출력하며, 학교 등에서 칠판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자칠판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전자칠판 및 보드]

전자보드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동일한 문서를 놓고 컴퓨터로 화상 회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거나 쓰도록 도와주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자보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동전계수기]

동전계수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동전을 권종별로 구분하여 계수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동전계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전동타자기]

공급자 적합성

전동타자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자모의 부호나 숫자, 기호 등의 활자가 딸린 키를 손가락으로 눌러 종이 위에 문자를 찍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동타자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전기소자기]

전기소자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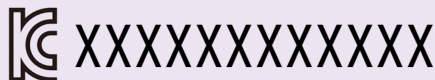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기장, 자기장을 감쇄시키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동소자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교통카드 충전기]

교통카드 충전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무선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와 카드 내부의 IC 칩간 데이터 교환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교통카드 충전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번호표 발행기]

번호표 발행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일련 번호를 출력 수요에 맞추어 인쇄 출력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번호표 발행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번호표 발행기]

티켓 발행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티켓을 인쇄 출력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티켓 발행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번호표 발행기]

순번대기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순번 대기에 맞추어 인쇄 출력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순번대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생활무선국용무전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설비의 기기 : HF주파수대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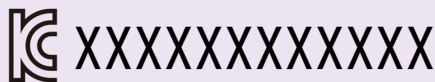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HF주파수대 기기에 한정하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를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생활무선국용무전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설비의 기기 : VHF/UHF주파수대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VHF/UHF주파수대 기기에 한정하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를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설비의 기기 (VHF/UHF주파수대)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생활무선국용무전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를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전자칠판 및 보드]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를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무선마이크 시스템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무선마이크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정보·통신 사무기기
적합성확인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무선스피커 시스템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무선스피커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무선스피커 시스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정보·통신 사무기기
적합성확인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무선 헤드셋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무선 헤드셋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무선 헤드셋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정보·통신 사무기기
적합성확인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IP 주소 공유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IP 주소 공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IP 주소 공유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 장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IPTV 셋톱박스와 같은 기기가 해당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가입자 단말장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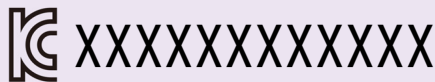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과 같은 기기가 해당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공급자 적합성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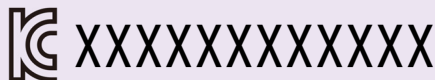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지상파 디지털 TV용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 신호수신기와 같은 기기가 해당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 해 주는 셋톱 박스와 같은 기기가 해당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A/D 및 D/A 신호변환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셋톱박스 등)]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에 해당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신호 처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에 해당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신호 처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재단기]

공급자 적합성

재단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일정한 간격이나 크기로 문서를 잘라 규격을 맞출 때 사용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재단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실물화상기]

실물화상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실물을 카메라를 통해 직접 투영하여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에 전송하기 위한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실물화상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입체영상기]

공급자 적합성

입체영상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특별히 제작된 안경과 함께 영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입체영상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휴대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휴대폰에 해당하며, 이동통신 서비스 지역 안을 임의로 이동하면서 기지국을 통해 일반 전화 가입자 또는 다른 이동통신 전화기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휴대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스마트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스마트폰에 해당하며,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스마트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TRS 휴대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TRS 휴대폰에 해당하며, 휴대폰과 무전기를 결합한 디지털 무전기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TRS 휴대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전화기]

전화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음성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먼 곳에 전송하고, 이 신호를 다시 음성으로 재생하여 상호간의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유선·무선 공중전화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하며, 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화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전화기]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접속 기기로. 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화기, 자동응답기와 같은 기기에 해당하며, 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팩시밀리기기]

공급자 적합성

팩시밀리기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그림, 문자, 도표 등의 이미지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전화선을 통해 전송하고, 이를 다시 원래의 이미지로 복원하는 장치로,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팩시밀리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

홈오토메이션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화기능을 내장하고 영상, 음성 및 신호 등을 집안 내·외부로 전달해 주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홈오토메이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

비디오도어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화기능을 내장하고 영상, 음성 및 신호 등을 문밖에서 집안으로 전달해 주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비디오도어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전화기능을 내장하고 영상, 음성 및 신호 등을 전달해 주는 각종 기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 시스템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단말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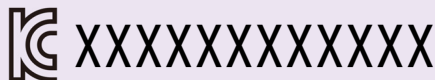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단말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신용 카드 가맹점에서 신용 카드 발급 회사의 주 컴퓨터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용 카드 이용 한도액의 확인, 카드 사고·무효 여부의 조회, 매상의 처리 등에 사용하는 단말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금전등록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예금주가 현금으로 예금을 출금하거나 입금하는 등의 현금을 취급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현금자동취급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금융기관 업무 관련하여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금융단말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얻은 버스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내비게이션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지도를 보이거나 길을 찾아 주어 자동차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내비게이션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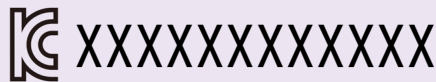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학교, 아파트,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도록 원격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송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원격제어방송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제본기]

제본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사진, 서류 등에 얇은 막을 덮어 씌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롤러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기기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제본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제본기]

스레이플러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인쇄된 서류를 하나로 묶을 때 쓰는 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스테이플러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정보·통신 사무기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적용기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그 밖에 유사한 기타 정보·통신 사무기기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기타 정보·통신 사무기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 A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식별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한 기호(□)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 60950-1(2.0) 의 1.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

공급자 적합성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적용기준

KC 60155,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네온 또는 아르곤을 봉입하고 극의 하나는 바이메탈로 된 방전관으로서 초기에는 글로우 방전을 하고 그 열로 바이메탈이 다른 극에 접촉하여 램프의 음극으로 통전하고 회로 적으로 끊어지는 동작을 하는 형광램프 시동기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 적합성확인

- 제품명 :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이나 등록 상표
- ◆ 형식 또는 카탈로그
- ◆ 스타터를 적용할 램프
 - KC 60081 또는 KC 60901의 해당 범위 내의 모든 표준화된 소비전력 값을 기재
 - 전력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포장 또는 제조자 발행 카탈로그에 표시
 - 경우에 따라서 스타터에 적용하는 온도 범위
-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0155항의 6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적용기준

KC 61347-1, 램프구동장치 제1부: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KC 61347-2-1, 램프구동장치 제2-1부: 시동장치(글로우스타터 제외)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KC 60927, 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 제외)

적용범위 및 제품설명

자체 또는 회로에서 다른 부품과 결합하여 방전 램프를 점등하기에 적절한 전기적 조건을 공급하는 장치 대개 형광 램프용이며 전극에 필요한 예열을 공급하고 안정기의 직렬 임피던스와 결합하여 램프에 가해지는 시동전압을 일으키는 시동장치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 모델명 : KPSA-1100
- 정 격 : AC 220 V 60 Hz 100 W
- 제조년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A/S 연락처 :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인 경우)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스타터를 적용할 램프

- KC 60081 또는 KC 60901의 해당 범위 내의 모든 표준화된 소비전력 값을 기재
- 전력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포장 또는 제조자 발행 카탈로그에 표시
- 경우에 따라서 스타터에 적용하는 온도 범위

◆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KC 61347-1의 7항과 KC 61347-2-1의 7항과 KC 60927의 7항에 따라 제품별 특성에 맞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쓰여져야 한다.

적용기준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중 세부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

공통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1. 전선 및 전원코드



안전기준) KC 60227-1 :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제조자 표시 및 케이블 식별

- 케이블에는 제조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는 연속적인 식별표기나, 제조자 명 또는 상표의 반복 표기로 할 수 있다.
- 도체의 최고온도가 70℃ 이상인 케이블은 그 기호 또는 도체의 최고 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는 절연체 또는 외피 표면에 인쇄 혹은 요철(凹凸) 각인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표기의 연속성

각각의 명시된 표기는 연속적이어야 하며, 표기의 끝과 다음 표기 시작점과의 간격이 아래에 열거하는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표기를 케이블 외피 표면에 하는 경우 550 mm
- 275 mm 마다 할 경우
표기를 외피가 없는 절연체 위에 할 때,
표기를 외피가 있는 케이블의 절연체 위에 할 때,
표기를 외피가 있는 케이블 내의 테이프 위에 할 때.

안전기준) KC 60245-1 :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고무절연케이블,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제조자 표시 및 케이블 식별

케이블에는 제조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는 연속적인 식별표기나, 제조자 명 또는 상표의 반복 표기로 할 수 있다. 표시는 절연체 또는 외피 표면에 인쇄 혹은 요철 각인 중 선택하여 표시하거나 검증된 테이프 또는 별도의 표시 테이프 위에 인쇄할 수도 있다.

• 표기의 연속성

각각의 명시된 표기는 연속적이어야 하며, 표기의 끝과 다음 표기 시작점과의 간격이 아래에 열거하는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표기를 케이블 외피 표면에 하는 경우 550 mm
- 275 mm 마다 할 경우
표기를 외피가 없는 절연체 위에 할 때,
표기를 외피가 있는 케이블의 절연체 위에 할 때,
표기를 외피가 있는 케이블 내의 테이프 위에 할 때.

안전기준) KC 60799 : 전기용 부속품 - 코드셋 및 상호연결 코드셋

플러그, 커넥터 및 플러그 커넥터는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코드셋과 상호 연결 코드셋이 전기 기구와 동일한 제조자가 제작하지 않은 전기 기구 플러그나 플러그 커넥터 및 커넥터와 함께 납품되지 않은 경우, 완전 코드셋이나 상호 연결 코드셋의 제조자나 책임 공급자의 성명, 상표명 또는 식별 기호를 표시한다. 이 표시는 포장에만 부착하는 것은 아니다.

비고) 예를 들어 코드셋에 부착한 고리에 제조자 또는 책임 공급자의 성명, 상표나 식별 기호를 붙일 수 있다.

II등급 기기 결선용 플러그, 커넥터, 코드셋이나 상호 연결 코드셋에는 II등급 구조를 나타내는 기호(이중 사각형)를 표시하지 않는다.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안전기준) KC 61058-1 : 기기용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스위치 제조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증하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 기기 제조자가 스위치를 선택 및 설치할 수 있다.
- 최종 사용자가 스위치 제조자가 의도한 것처럼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 이 규격에 일치하는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정보는 표3에 상세히 나타내는 것처럼 다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방법으로 준비한다.

- 표지(Ma) 정보는 스위치 자체상의 표지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

- 문서(Do) 이 정보는 전단, 시방서 또는 도면 등으로 구성되는 별개의 문서에 의해 주어진다.

이 문서의 내용은 언제나 적절한 임의의 서식으로 기기 제조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비 고 1) Ma/Do가 지시하고 있을 경우, 정보는 표지나 문서에 의해 주어진다. 비고 2) 이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양식은 이 규격의 적용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스위치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정격 전류(A) 또는 정격 형광등 부하 전류(AX)나 2개의 다른 정격을 조합하였을 경우에는 양쪽조합의 정격 정격 전압(볼트)

전원의 성질 기호

- 제조자 명, 판매자 명, 상표 또는 식별 기호
- 형번(카탈로그 번호일 경우도 있다.)
- 미니 갭 구조의 기호(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마이크로 갭 구조의 기호(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반도체 개폐 장치의 기호(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유해 부품에 대한 노출 및 고형물 침투로 인한 유해 영향에 대한 보호 등급을 나타내는 첫 번째 특성수. 이것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특성수도 같이 표시해 주어야 한다.
- 물 침투로 인한 유해 영향에 대한 보호 등급을 나타내는 두 번째 특성수. 이것이 0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특성수도 같이 표시해 주어야 한다.

비 고 1) 스위치에 대한 외관 검사에서 그 접속을 알기 어려울 경우에는 한 패턴 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이 패턴 번호는 형번 안에 표시해도 된다.

비 고 2) 조작 장치가 분리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스위치를 베이스가 갖고 있을 경우에는 패턴 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1 + 6이라든가 1 + 1 + 10이다.

또한 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로 사용 제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단한 전선만 다는데 적합 한가를 표시한다. 정보는 스위치 또는 포장 또는 양쪽에 기재해도 된다.

- 다음의 내용이 스위치의 주요 부분에 표시되어야 한다.

- 정격 전류, 정격 전압 및 전원의 특성
- 제조자 또는 책임있는 판매자의 명칭, 상호 또는 식별 기호
- 나사 없는 단자가 있을 경우, 도체를 삽입하기 전에 도체에서 제거해야 할 절연의 길이
- 미니 갭 구조, 마이크로 갭 구조 또는 반도체 개폐 장치용 기호가 사용될 경우 이들 기호
- 형 번

비 고 1) 형번은 연속 번호뿐이어도 상관없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별도로 판매되는 커버 플레이트와 같은 부품은 제조자 명 또는 책임있는 판매자 명, 상호 또는 식별 기호와 형번을 표시하여야 한다.

IP 코드가 사용될 경우, 스위치가 설치되고 정상 사용 상태로 배선되었을 때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정상 사용 상태에서 스위치를 장착하여 배선하더라도 물의 유해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의 기호 또는 설명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외곽의 외측에 표시할 수 있을 경우에는 표시한다. 표시는 스위치가 정상 사용 상태에서 장착되고 배선되었을 때 존재할 지도 모르는 커버나 플레이트를 벗겼을 때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스위치의 전면 또는 조합한 외곽의 내측 부분이나 또는 스위치의 주요 부분에 표시하여 육안 또는 확대하지 않는 교정 시력으로 확실히 보여야 한다. 이 같은 표시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벗길 수 있는 부품에는 붙이지 않는다.

비 고 2) 추가 형번은 주요 부분 또는 조합한 외곽의 외측이나 내측에 표시해도 된다.

비 고 3) "주요 부분"은 접점을 지지하는 부품 및 그것들과 일체가 된 부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놉(knob), 핸들, 이와 유사한 것 또는 별도로 판매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접속 방법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상(phase) 도체(전원 도체)의 접속 단자는 확실한 경우 또는 배선도에 나타나 있는 경우 이외에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식별하는 데에는 문자 L을 사용하고 그러한 단자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L1, L2, L3 등의 문자를 해당 단자나 복수개의 단자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함께 사용한다.**

이러한 표시는 나사나 기타 쉽게 제거되는 부분을 피해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그 이외의 경우, 단자 표면은 나황동 또는 니구리아이어야 한다. 다른 단자는 다른 색의 금속층으로 덮는다.

어느 하나의 극에 조합한 패턴 번호 2, 3, 03 및 6/2번 스위치 단자는 다른 극과의 관계가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극에 접속하는 단자의 식별과는 다른 유사한 식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비 고 1) 배선도는 스위치에 동봉되는 취급 설명서이어도 좋다.

비 고 2) "쉽게 제거되는 부분"이란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장착하였을 때 떼낼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 **중성선 전용 단자는 기호 N으로 표시한다.**

접지 단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이 표시는 나사나 기타 쉽게 떼낼 수 있는 부품에는 붙이지 않는다.

스위치의 주 기능의 일부분이 아닌 도체에 접속하는 단자는 분명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다만 그 목적이 분명하여 배선도(부속품에 고정되어야 함) 안에 나타낼 때는 제외된다.

스위치 단자의 식별은

- IEC 60417의 도식 기호나 색 또는 영숫자(alphanumeric)시스템 또는 양쪽을 사용하여 기기단자에 표시한다.
- 그것의 물리적인 치수이거나 상대적인 위치

이 항목의 목적에 대해서는 네온 또는 지시기의 리드선을 도체라고 보지 않는다.

- **스위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스위치에 표기를 할 경우, 그 스위치에는 각 위치 또는 실제 위치에 대하여 조작부의 이동 방향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표기해야 한다. 조작부가 두 개 이상인 스위치의 경우에 그 표기에는 조작부 각각에 대하여 조작부의 동작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야 한다.**

이 표시는 스위치의 커버 또는 커버 플레이트를 닫았을 때 스위치의 정면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표시가 커버나 커버 플레이트 또는 분리할 수 있는 조작부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표시가 울바르지 않은 위치에 그것들을 고정하지 않도록 한다.

"ON"과 "OFF" 기호는 이들이 조작부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위치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비 고 1) 스위치의 위치를 표시하는 적절한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램프 표시를 사용해도 된다.

"ON"의 위치를 표시하는 짧은 직선은 로터리 스위치에서는 방사상으로, 텀블링 배럴 스위치나 로커스위치에서는 돌리(dolly) 회전 축에 대해 수직으로, 그리고 수직으로 장착한 푸시 버튼 스위치에서는 수직으로 각각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은 줄당김 스위치와 패턴 번호 6, 6/2, 7의 스위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2) 푸시 버튼 스위치에 대해서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 버튼을 제어 회로의 개로를 위해 사용할 경우만 적색으로 한다. 또한 제어 회로나 파일럿 램프등을 위한 보조 접점을 단기 위해 사용해도 된다.
- 스위치를 장착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스위치에 첨부되는 취급 설명서에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취급 설명서는 한국의 공용어로 기록한다.

비고 1) 예를 들면 비밀폐형 스위치와 장착용 스위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비고 2) 장착후 이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이 달성되어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취급 설명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해 명확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스위치에 필요한 공간의 치수
- 스위치를 그 공간 내에서 유지하고 고정하는 도구의 치수와 위치
- 장착된 장소에서 스위치의 각 부분과 주위와의 최소 거리
- 필요할 경우 환기용 개구부의 최소 치수 및 그것들의 올바른 배치
- 교체 가능한 파일럿 램프가 달린 스위치인 경우에는 사용될 램프에 대한 상세한 내용

안전기준) K 60947-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교류용 차단기

• 제품정보

• 정보의 성질

관련제품규격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조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명시사항:

- 제조자의 명칭 또는 상표
- 형식명 또는 제조번호
- 제조자가 적합성을 주장하는 경우, 관련제품규격 번호

특성:

- 정격사용전압(4.3.1.1 및 5.2의 비교 참조)
- 기기의 정격사용전압에 대한 사용범주 및 정격사용전류(또는 정격전력 또는 정격연속전류)(4.3.1.1, 4.3.2.3, 4.3.2.4 및 4.4 참조). 경우에 따라서, 이 정보는 기기가 교정된 기준주위 온도의 값에 의해서 완전히 질 수 있다.
- 정격주파수의 값. 예를 들면, 50 Hz, 50 Hz/60 Hz, 및/또는 "직류" 표시 또는 기호
- 정격책무, 간헐책무인 경우에는 등급을 표시(4.3.4 참조)
- 정격투입용량 및/또는 정격차단용량. 이런 표시는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사용범주의 표시로 대체될 수 있다.
- 정격절연전압
- 정격임펄스내전압
- 릴레이 또는 릴리스 특성
- 개폐 과전압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지속시간을 포함한 정격단시간내전류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정격단락투입용량 및/또는 정격단락차단용량,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정격조건부단락전류
- 폐쇄된 기기의 경우, IP 코드
- 오손등급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단락보호장치의 형식 및 최대정격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등급

- 정격제어회로전압, 전류의 종류 및 주파수
- 제어코일의 전압과 다른 경우, 정격제어전원전압, 전류의 종류 및 주파수
- 공기압의 정격공급압력 및 압력 변화의 한계(공기압식 제어기기의 경우)
- 이격(isolation)에 대한 적합성
- 도체를 단자에 삽입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할 절연체의 길이
- 고정할 수 있는 최대 도체의 수

비 범용(non-universal screwless) 비나사형 단자

- 경도체-단선용 단자에 "s" 또는 "sol"을 명시
- 경도체-단선용 단자에 "s" 또는 "sol"을 명시
- 경도체(단선 및 연선)용 단자에 "r"을 명시
- 연도체용 단자에 "f"를 명시

전자식 제어 전자석의 경우, 제어회로 구성과 같은 기타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 제조자의 명칭 또는 상표, 형식명 또는 제조번호의 표시는 제조자로 부터 얻은 전체의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 기기, 가능한 한 명판에 표시되어야 한다.

- a) 3상 4선식 계통에 사용되는 기기의 경우, 상 전압과 선간 전압 모두 표시. 예를 들면, 277/480V
- b) 3상 3선식 계통에 사용되는 기기의 경우, 선간 전압으로 표시. 예를 들면, 480V.

또한 다음의 정보가 설치 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조작기의 동작방향
- 조작기의 위치 표시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승인 또는 인증 표시
- 소형화된 기기의 경우, 기호, 색코드, 또는 문자기호
- 단자식별 및 표시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IP코드와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등급(가능한 한 기기상에 표시)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이격에 대한 적합성은, IEC 60617-7, 07-01-03의 이격기능의 기호로부터, 기기에 대해 적절한 기능의 기호를 조합해서 완성시켜도 좋다

이 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 명확하고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기기가 통상의 사용상태로 취부되어 조작될 때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기기가 7.1.11에 따르는 외함을 갖는 것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요구사항은 또한 기호가 결선도에 표시되어 있고 이 결선도가 이격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시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전자식 제어 전자석의 경우, 5.1에 제시되어 있는 이외의 정보가 요구될 수도 있다.

비범용 비나사용 단자에 대한 "s", "sol", "r" 또는 "f" 표시는 장치에 표시하거나, 공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최소 포장 단위 또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기술 정보에 표시해야 한다.

같은 곳에 위치한 단자들의 경우, 장치 상의 단일 표시가 허용된다.

• 설치, 동작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

제조자는 설치와 관련하여 동작중 및 고장후의 기기의 동작 및 유지보수 조건을 필요에 따라 문서 또는 카탈로그에 명기해야 한다.

제조자는 또한 필요하다면, EMC와 관련된 대책을 규정해야한다. 환경 A(7.3.1 참조)에만 적합한 기기에 대해서 제조자는 다음 주의사항을 문서에 기술해야 한다.

주 의

이 제품은 환경 A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환경 B에서의 이 제품의 사용은 불필요한 전자기 방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완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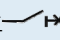

필요하다면, 기기의 운송, 설치 및 동작에 관한 지시서에는 적절하고 올바른 설치, 취급 및 동작에 관해 특별히 중요한 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필요하다면, 유지보수의 범위 및 주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비 고) 이 기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기가 반드시 유지보수 되도록 설계될 필요는 없다.

안전기준) KC 60947-2 :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차단기에는 영구적인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a) 다음 데이터들은 차단기 본체 또는 차단기에 부착된 명판에 표기되어야 하고, 차단기가 설치된 상태에서 잘 보이고 읽을 수 있도록 위치해야 한다.
- 정격 전류(In)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기호 와 함께 이격 기능에 대한 적합성
 - 개로 및 폐로 위치의 표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와 |로 표시
- b) 아래의 데이터들도 a)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차단기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단, 이것들은 차단기가 설치되었을 때 보일 필요는 없다.
- 제조자명 또는 상호
 - 형식명 또는 제조번호
 - 제조자가 적합성을 주장하는 경우, KS C IEC 60947-2
 - 사용범주
 - 정격사용전압
 - 정격임펄스내전압(Uimp)
 - 정격 주파수 값(또는 범위)(예를 들면, 50 Hz) 및/또는 “d.c.” 표시(또는 기호)
 - 상응하는 정격전압(Ue)에서의 정격서비스단락차단용량 (Ics)
 - 상응하는 정격전압(Ue)에서의 정격극한단락차단용량 (Icu)
 - 사용범주 B의 경우, 정격단시간내전류(Icw) 및 단시간 지연시간
 - 전원측과 부하측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전원 및 부하 단자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문자 N으로 표시한 중성극 단자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기호 로 표시한 보호접지단자
 - 30 °C와 다른 경우, 보장되지 않은 열동형 릴리스에 대한 기준온도
- c) 아래의 데이터들은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차단기 위에 표시되거나, 제조자가 발행하는 자료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규정된 값보다 높은 경우, 정격 단락 투입 용량(Icm)
 - 최대 정격 사용 전압보다 높은 경우, 정격 절연전압(Ui)
 - 오손등급 3 이외의 경우, 오손등급
 - 정격전류와 다른 경우, 협약폐쇄열적전류(Ithe)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IP 코드
 - 표시된 정격에 적용되는 최소 외함 크기와, 통풍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
 - 외함이 없이 사용할 차단기의, 차단기와 접지된 금속부 사이의 최소거리의 상세 내용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환경 A 또는 환경 B에 대한 적합성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실효치 검출
- d) 차단기의 개폐조작장치에 관한 다음의 데이터들이 조작장치의 명판 또는 차단기의 명판에 기재되어야 한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판 대신에 제조자가 발행하는 자료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폐로장치의 정격제어회로전압과, 교류의 경우, 정격주파수
 - 섀트 릴리스 및/또는 부족전압 릴리스(또는 무전압 릴리스)의 정격제어회로전압과, 교류의 경우, 정격주파수
 - 간접 과전류 릴리스의 정격전류
 - 보조접점의 수와 형식, 주회로와 다른 경우, 보조 스위치 전류의 종류, 정격주파수(교류의 경우) 및 정격전압
- e) 단자 표시



안전기준 K 61095 : 가정용과 유사 용도를 위한 전기 기계적 접촉자

다음 정보는 제조업자에 의해서 주어져야 한다:

- a) 제조업자의 이름이나 상표;
- b) 유형 지정이나 일련 번호;
- c) 제조업자가 확인을 요구한다면, 이 표준의 수치.

• 특성, 기초 정격 값과 사용

- d) 정격 작동 전압
 - e) 정격 작동 전압에서 사용 범위와 정격 작동 전류(또는 정격 전력)
 - f) 정격 주파수/주파수들의 값. 예: 50Hz 또는 50Hz/60Hz;
 - g) 필요하다면, 주기적인 효율의 분류의 지시사항을 갖는 정격 효율
- 관련된 값들:
- h) 정격 형성 용량과 차단 용량. 이 지시사항들은 사용 범위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적용가능한 곳에서 대체된다.

안전성과 설치:

- i) 정격 절연 전압
- j) 공표되었을 때, 정격 임펄스 내성 전압
- k) 밀폐 접촉자의 경우, IP 코드
- l) 오염 등급
- m) 정격 조건 단락회로 전류와 유형, 전류 등급과 관련된 SCPD의 특성
- n) 개폐 과전압

조절 회로

조절 회로와 관련된 다음 정보는 코일이나 접촉자 위에 놓여진다:

- o) 정격 조절 회로 전압(Uc), 전류의 종류와 정격 주파수;
- p) 전류의 종류가 필요하다면, 정격 주파수와 정격 조절 공급 전압(Us);

접촉자의 경우, SELV 공급원에 연결된 조절 회로:

- q) SELV 회로의 보다 큰 전압 값을 갖고 공급되는 SELV 공급원, 주 회로에 연결된 조절회로의 적합성.

부속 회로:

- r) 부속 회로의 등급

• 표시

표시는 지울 수 없고 쉽게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업자로부터 얻는 완전한 자료를 이용 가능하도록, 제조업자의 이름이나 상표와 유형 지정이나 연속 번호의 표시는 접촉자 위에, 필요하다면 오히려 명찰 위에, 의무적으로 행한다.

- a) 상-접지 전압과 상-상 전압의 값에 의해서, 3상-4선 시스템의 경우 장비 위에 표시.
예 277/480V;
- b) 상-상 전압의 값에 의해서 3상-3선 시스템의 경우 장비 위에 표시. 예 480V.

다음 정보도 설치된 후에 표시되고 보여야 한다.

- 적용 가능하다면, 구동기의 움직임의 방향
- 구동기 위치의 지시사항
- 적용 가능하다면, 승인 또는 보증 표시
- 소형화된 접촉자의 경우, 기호, 색깔 코드나 문자 코드
- 단락 식별과 표시
- 적용될 때,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 장치의 IP 코드와 등급 (가능한 한 차라리 접촉자 위에 표시된다.)

표시는 나사, 제거할 수 있는 와셔나 다른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 위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있다면, k) 상황에서 자료는 외곽 위에 놓여진다.

만약에 있다면 c) 상황에서 자료와 승인 표시(보증)은 명판 위에 놓여진다.
 d)에서 j)와 l)에서 r)까지의 상황에서 자료는 명판이나 접촉자나 제조업자의 출판물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단자의 표시는 이 표준의 부속서 A와 일치하여야 한다.
 주 - IEC 947-4-1에 따른 추가 사용 범위도 표시된다.

● **설치, 작동과 유지를 위한 지시사항**

만약에 있다면, 제조업자는 문서나 범위에서 작동하는 동안과 누전 후에 접촉자의 설치, 작동과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접촉자의 이송, 설치와 작동을 위한 지시사항은 적절하고 정확한 설치, 주문과접촉자의 작동의 경우 특별히 중요한 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만약에 있다면, 이 문서들은 추천된 내용과 유지하는 주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기준) KC 60947-4-1 :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4-1부: 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

- a) 제조자의 이름 또는 등록 상표
- b) 형식 명칭 또는 일련 번호
- c) 제조자가 승낙을 요구한다면 이 규격의 번호

● **특성, 기본 정격값 그리고 이용**

특 성

- d) 정격 작동 전압
- e) 설비의 정격 작동 전압에서 이용 범주 및 정격 작동 전류(또는 정격 전력)
- f) 정격 주파수/주파수의 값, 예를 들면 50 Hz 또는 60 Hz 또는 “d.c.”
 표시(또는 기호)
- g) 만일의 경우 단속 책무의 사용 등급을 표시한 정격 책무 관련된 값
- h) 정격 투입 용량과 차단 용량. 이들 표시는 적용할 수 있다면 이용 범주의 표시로 대체될 수 있다. 안전 및 설치
- i) 정격 절연 전압
- j) 정격 임펄스 내전압
- k) 밀폐된 설비의 경우는 IP 코드
- l) 오손 등급
- m) 정격 조건부 단락 전류와 접촉기 또는 기동기의 협조 형식 그리고 조합된 SCPD의 형식, 전류 정격과 특성
- n) 개폐 과전압

● **제어 회로**

코일 또는 설비에는 제어 회로에 관한 다음 정보가 있어야 한다.
 o) 정격 제어 전압(U c), 전류와 정격 주파수의 특성
 p) 필요하다면 전류, 정격 주파수와 정격 제어 공급 전압의 특성(Us)
 압축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기동기 또는 접촉기용 공기 공급 시스템
 q) 8.2.1.2에서 명시된 것과 다르다면 압축 공기의 정격 공급 압력과 이 압력의 변화의 한계

● **보조 회로**

- r) 보조 회로의 정격
 과부하 릴레이와 릴리스

- s) 릴레이와 릴리스(과부하 릴레이)의 특성 에 따른 특성
접촉기와 기동기의 일정한 형식에 대한 추가 정보
저항식 회전자 기동기
- t) 회로도
- u) 기동의 엄밀성
- v) 기동 시간
단권 변압기 기동기
- w) 정격 기동 전압(들), 즉 탭 단자에서의 전압(들)
비 고 이 값은 기동기의 정격 작동 전압의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 진공 접촉기와 기동기

- x) 만일 2 000 m 미만이라면 설치 부지의 최대 허용 고도
EMC
- y) 환경 A 또는 환경 B, KS C IEC 60947-1의 7.3.1 참조
- z) 특수 요구 사항, 예를 들면 적용할 수 있다면 차폐선 또는 연선 도체
비 고 차폐되지 않은 또는 꼬이지 않은 도체는 정상 설치 조건을 고려한다.

• 표 시

다음은 추가하여 제1부의 5.2의 접촉기, 기동기와 과부하 릴레이에 적용한다. 6.1.2의 d)와 x) 항목의 내용은 명판 또는 설비상에 또는 제조자의 간행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6.1.2의 c)와 k) 항목의 자료는 우선적으로 설비상에 표기되어야 한다. 전자식으로 제어된 전자기인 경우 6.1.2의 o)와 p)에 주어진 것을 제외한 정보 또한 필요하다. 5.5와 부속서 E도 참조 6.3 설치, 운전 그리고 유지를 위한 지침서

다음은 추가하여 제1부의 5.3을 적용한다. 제조자는 단락 시 취하여야 할 측정과 EMC에 관한 측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권고하는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보호된 기동기의 경우 제조자는 필요한 설치와 배선 지침서 역시 제공하여야 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안전기준) KC 60384-14 :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1부 : 품목규격

표시되는 정보는 통상적으로 다음 항목에서 선택된다.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은 위치 순서로 나타난다.

- a) 제조자의 이름 또는 상표명
- b) 제조자에 의한 형명 또는 개별규격에 의한 형명
- c) 커패시터 등급 및 하위등급
- d) 인정된 인증 표시
- e) 정격 커패시턴스와 정격 저항
- f) 정격 전압과 전원 성질(교류 전압은 ~표시로, 직류 전압은 또는 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 g) 결선 방법(필요시)
- h) 도체의 정격 전류(리드관통형 커패시터의 경우)
- i) 정격 커패시턴스의 허용오차, $\pm 20\%$ 가 아닌 경우
- j) 기후 범주와 수동 가연성 범주를 나타내는 글자
- k) 정격 온도
- l) 제조 연월(또는 주)
- m) 개별규격의 참고사항

1.6.1 커패시터에는 a), b), c)를 명확하게 표시하며, b)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d), e), f)를 표시한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제조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많은 항목을 표시한다.

표시는 제조된 부품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비 고 표면실장부품은 a), b)만 의무적이다

안전기준) KC 60939-2 : 전자파장해 방지용 필터소자 제2부:품종규격-시험방법의 선택과 일반사항

표시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다음으로부터 선택된다.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은 위치 순서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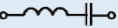
- a) 제조자의 이름(또는 상표)
- b) 제조자의 형식명
- c) 정격 전압
- d) 정격 전류
- e) 정격 온도
- f) 기후 범주
- g) 제조 연월(또는 주)(부호 형태일 수도 있다.)
- h) 모든 소자를 나타내는 내부 배선의 회로도와 모든 정전 용량값, 그 등급 및 인덕턴스 값
- i) 개별 규격에의 연관성

- 필터에는 위의 a)와 b)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남은 항목을 가능한한 많이 같이 표시해야 한다. 필터에 표시되는 정보는 중복을 피해야 한다.
- 필터를 담은 포장에는 목록에 있는 모든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어떤 부가적 표시도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안전기준) KC 61048 : 램프 보조장치 형광램프 및 방전램프용 커패시터-일반 및 안전

• 다음의 사항을 커패시터에 읽기 쉽게 표기하여야 한다.

- a) 제조자나 판매 책임자의 이름이나 상표
 - b) 제조자의 상품 번호나 모델 참조 번호
 - c) 정격용량과 허용오차
 - d) 정격전압
 - e) 방전 저항기가 있을 때, 그 기호 
 - f) 전류 퓨즈가 있을 때, 그 기호 
 - g) 정격주파수나 주파수 범위
 - h) 정격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예를 들면 -10 °C/70 °C)
 - i) 자기복원 커패시터의 기호
 - j) 직렬로 동작하기 위한 비-자기복원 커패시터의 경우 
- 비-복원 기호가 있는 커패시터에 위 기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비 고 이 형식의 커패시터는 주 전원 사이에 연결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 k) 적용에 따른 A형 또는 B형

• 추가 정보

- a) 방전 저항기가 있을 때, 그 값의 선언
- b) 커패시터가 (tc+10) °C에서 액체 상태인 성분의 포함 여부 선언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안전기준) KC 60320-1 :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커넥터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격 전류(A). 다만 0.2 A 커넥터 제외

- 정격 전압(V) -공급 전원 종류의 기호
 - 제조자명, 제조자의 상표 또는 식별 표시 또는 책임 판매자의 명칭
 - 형식명
 - 나사 없는 단자에 적합한 도체 형식을 나타내는 IEC 60999-1의 7.5항에 지정한 표시
- 비 고) 형식명은 카탈로그 번호이어도 된다.

- 기기용 인입구이면서 기기 또는 장치와 일체로 된 것 또는 기기나 장치의 내부에 조립된 것 이외의 것은 형식명, 제조자명, 제조자의 상표 또는 식별 또는 책임 있는 판매자의 명칭 및 식별 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식명은 기기용 인입구가 올바르게 부착되었을 때이거나 또는 커넥터가 꽂혔을 때 그 표시가 외부에서 보이도록 안된다. 0.2 A용 및 2.5 A용 기기용 인입구의 표시는 그것이 기기 자체의 표시와 틀릴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여도 된다.
- 비 고) 형식명은 카탈로그 번호이어도 된다.

- II종 기기용 커넥터와 기기용 인입구에는 II종 구조라는 기호가 표시되면 안된다.

- 기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전류	A
전압	V
교류	~
접지	또는

비 고) 가능하면 동그라미 기호를 사용한다. 정격 전류 및 정격 전압을 표시할 경우에는 숫자만 사용해도 되나 그 때는 정격 전류를 정격 전압의 앞 또는 위에 두고 선을 그어 정격 전압과 분리한다. 공급 전압의 종별 기호는 정격 전류 및 정격전압 표시 뒤에 표시되어야 한다.

비 고 1) 전류, 전압 그리고 전원 종별 표시의 예를 아래에 나타낸다.

$$10A250V\sim \text{ 또는 } 10/250\sim \text{ 또는 } \frac{10}{250} \sim \text{ 또는 } \left(\frac{10}{250} \right) \sim$$



비 고 2) 공구의 구조 상 형성된 선은 표시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8.5 8.1에 규정한 표시는 사용하기 위해 커넥터를 결선할 때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비 고) “사용하기 위해” 라는 용어는 커넥터를 기기용 인입구에 꽂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반대로 끼울 수 없는 커넥터에서는 커넥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커넥터 꽂음면에서 본 위치에서 정하고 그 배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접지극 : 상부 중심 위치
 전압극 : 하부 우측 위치
 중성극 : 하부 좌측 위치

코드 교환형의 반대로 끼울 수 없는 커넥터의 단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접지용 단자 : 기호  또는 

중성선 전용 단자 : 문자 N

코드 비교교환형의 반대로 끼울 수 없는 커넥터는 접점 표시를 할 필요는 없으나 코드의 선심은 22.1에서 규정한 대로 접속하여야 한다. 기기 또는 장치의 내부에서 일체로 된 또는 조립된 것 이외의 기기용 인입구는 이 항에 따르는 커넥터와 사용함에 있어 이 항에 대응하는 단자 표시가 있어야 한다. 표시 사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호 또는 문자는 나사, 분리 가능한 와셔 또는 기타 해체할 수 있는것에 있지 말아야 한다.

비 고 도체의 단자 및 접속 표시와 관련한 요구사항은 각국이 기존에 규정한 전원극 체계를 참작하여 도입하며 통합 플러그와 소켓-콘센트 체계의 추가 도입은 극성 체계를 크게 확장하게 될 것이다. 이 요구사항은 현재 무극 플러그 및 소켓-콘센트 체계를 갖는 국가에 참작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교환형 커넥터는 다음의 지침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 a) 도체 접속 방법 특히 접지 도체의 길이(초과분) 및 코드 고정 용구의 작동 방법을 표시하는 도면
- b) 탈피면 슬리브 및 절연 길이를 표시하는 실제 크기 도면
- c) 적합한 코드의 크기와 형식

비 고 1) 접지 도체의 접속에 대한 지침 사항은 되도록이면 개략도에 필수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비 고 2) 설비 제조업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커넥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안전기준) KC 60884-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접속 기구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정격 전류 A
- 정격 전압 V
- 전원 종류의 기호
- 제조자 및 판매자명, 상표 또는 마크
- 형번(카탈로그 번호도 가능)
- 위험물로의 접근과 고형 이물질의 침입에 따른 유해 결과에 대한 보호 등급의 첫 번째 고유 숫자. 만일 2 이상이면 두 번째 고유 숫자도 표시되어야 한다.
- 침수의 유해 결과에 대한 보호 등급의 두 번째 고유 기호. 만일 0 이상이면 첫 번째 고유 숫자도 표시되어야 한다. 어떤 IP 정격 플러그가 다른 IP 정격을 가진 콘센트에 삽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플러그/콘센트 조합의 최종 보호 등급은 양쪽 중 낮은 쪽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콘센트와 관련된 제조사의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비고 1) 보호 등급은 KS C IEC 60529에 기초한다.

또한 나사 없는 단자의 콘센트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도체를 나사 없는 단자에 삽입하기 전에 제거될 절연의 길이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
- 콘센트가 경도체로만 한다는 제한이 있을 경우 경도체만을 허용하는 적합성 표시

비고 2) 추가 표시는 콘센트와 포장 유닛에 기재되어 있으며 또는 콘센트에 첨부되는 설명서에도 기재될 수 있다.

• 기호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전류	A
전압	V
교류	~
중립	N
보호 접지	
관련 보호 등급	IPXX
거친 표면에 설치되는 고정형접속 기구류 보호 등급(그림 15의 시험벽)	IPXX
나사없는 단자일 경우, 단지 경도체만 허용한다.	

비 고 1) 구조 기호에 관한 상세 설명은 IEC 60417-2에 기재되어 있다.

비 고 2) IP 코드의 문자 "X"는 적절한 숫자로 대체된다.

비 고 3) 기구의 구조로 생긴 선은 표시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정격 전류 및 정격 전압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숫자만 사용해도 된다. 이러한 숫자는 사선에 의해 분리되거나 또는 정격 전류를 정격 전압의 상부에 수평인 선으로 분할하여 표시한다.

전원의 성질에 대해서는 정격 전류 및 정격 전압 다음에 표시한다.

비 고 4) 전류, 전압 및 전원 종류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16 \text{ A } 440 \text{ V} \sim \text{ 또는 } 16/440 \sim \text{ 또는 } \frac{16}{440} \sim$$

● 고정형 콘센트에서는 다음의 표시가 주요 부분에 표시되어야 한다.

- 정격 전류, 정격 전압 및 전원 종류
- 상호, 상표 또는 제조자별 표시 또는 판매자명 표시
- 필요 시 나사 없는 단자의 도선 삽입 전 제거될 절연체 길이
- 형번(카탈로그 번호도 가능)

비 고 1) 형번은 시리즈 번호만으로도 가능하다.

안전에 필수적이고 별도 판매되는 커버 플레이트와 같은 부속품은 제조자나 책임 판매자의 이름, 상표 또는 식별 기호와 형번으로 표시된다.

비 고 2) 추가적인 형번은 주요 부분이나 연관된 외함의 외부에 표시된다.

비 고 3) "주요 부분"이란 콘센트의 통전 부분을 의미한다.

IP 코드를 적용할 경우 콘센트가 일반 용도로 설치되고 배선될 때 그 코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7.2.5의 b)에 의해 분류되는 고정형 콘센트는 삼각형으로 표시되며 이것은 일반 회로에 사용되는 것과 다른 연결 구성을 갖지 않으면 설치 후 보이게 된다.


비 고 4) 일부의 국가에서는 자국 설치 규정에 따라 주황색 삼각형이 사용된다.

● 플러그와 이동형 콘센트에 대하여 형번 이외 8.1의 표시는 접속 기구류가 배선되고 조립될 때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II등급 장비용 플러그와 이동형 콘센트는 II등급 구조용 기호로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비 고) 코드 교환형 이동형 접속 기구류의 형번은 외함 또는 커버의 안쪽에 표시된다.

● 중성선 전용 단자는 N으로 표시된다.

보호 도체의 연결을 위한 접지 단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이러한 표시는 나사나 분리가 용이한 다른 부품에 표시되지 않는다.

비 고 1) "분리가 용이한 부품"이란 콘센트의 일반 설치 및 플러그의 조립 시에 분리 가능한 부품을 말한다.

비 고 2) 코드 비교체형 접속 기구류의 영구 고정용 단자는 표시되지 않아도 된다.

콘센트의 주요 기능 부품을 형성하지 않는 도체 연결용 단자는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식별되거나 접속 기구류에 고정되는 배선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 IEC 60417-2에 의한 그래프 기호나 색깔 및 문자 숫자 방식
- 물리적 치수나 상대적 위치

이 항목에서는 네온 램프나 표시 램프의 리드선을 도체로 보지 않는다.

● IP20보다 높은 IP 코드의 콘센트의 중요 부품을 이루는 노출형 설치 박스에서는 콘센트가 일반용도와 동일하게 설치되고 배선될 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결된 외함의 외부에 IP 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

- IPX0보다 높은 IP 등급의 매입형 및 반매입형 고정형 콘센트의 보호 등급이 어느 등급에 있는지 또는 어떤 규정(가령 박스, 설치면의 유형, 플러그 등)에 대해 승인 받았는지를 표시나 제조자의 카탈로그 또는 취급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적합성 여부는 검사를 통해 판정된다.

- 표시는 지워지지 않고 읽기 쉬워야 한다.

적합성 여부는 검사나 다음의 시험을 통해 판정된다.

물에 적신 헝겊으로 15초간 손으로 문지른 후 석유 용제를 문힌 헝겊으로 15초간 다시 문지른다.

비 고 1) 각인, 몰딩, 프레스, 조각에 의한 표시는 이러한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비 고 2) 사용되는 석유 용제는 최대 0.1%, 약 29의 카우리부탄올 (kauributanol)값, 최초 비등점 약 65℃, 건조점 약 69℃, 농도 약 0.68g/cm³인 방향족 화합물 헥산 용액을 권장한다.

안전기준) K 10026 :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

-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정격전류 A
- 정격전압 V
- 작동시 소비전력 W
- 차단시 소비전력 W
- 과부하 차단전류 A
- 전원종류의 기호
- 대기전력 차단방법 (부하감지, 조도, 기타)
- 제조자 및 판매자 명, 상표 또는 마크
- 형번 (카탈로그 번호도 가능)
-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표시 (표시는 문자 또는 녹색으로 표시함)
- 미니 갭 구조의 기호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마이크로 갭 구조의 기호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반도체 개폐 장치의 기호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위험물로의 접근과 고형 이물질의 침입에 따른 유해결과에 대한 보호등급의 첫 번째 고유숫자. 만일 2 이상이면 두번째 고유숫자도 표시되어야 한다.
- 침수의 유해결과에 대한 보호등급의 두번째 고유기호. 만일 0 이상이면 첫 번째 고유숫자도 표시되어야 한다.

비 고 1) 보호등급은 K 60529에 기초한다.

또한 나사없는 단자의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도체를 나사없는 단자에 삽입하기 전에 제거될 절연의 길이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

-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가 경도체로만 한다는 제한이 있을 경우 경도체만을 허용하는 적합성 표시

비 고 2) 추가표시는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와 포장 유닛에 기재되어 있으며 혹은 첨부되는 설명서에도 기재될 수 있다

- 기호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전류	A
전압	V
교류	~, AC
중성	N
보호접지	

관련 보호등급	IPXX
거친 표면에 설치되는 고정형의 보호등급(그림 15의 시험벽)	IPXX
나사 없는 단자의 경우, 경도체만 허용한다는 적합성 표시	r

비 고 1) 구조 기호에 관한 상세설명은 K 60417-2에 기재되어 있다.

비 고 2) IP 코드의 문자 "X"는 적절한 숫자로 대체된다.

비 고 3) 기구의 구조로 생긴 선은 표시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정격 전류 및 정격 전압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숫자만 사용해도 된다. 이러한 숫자는 사선에 의해 분리 되거나 또는 정격 전류를 정격 전압의 상부에 수평인 선으로 분할하여 표시한다.

전원의 성질에 대해서는 정격 전류 및 정격 전압 다음에 표시한다.

비 고 4) 전류, 전압 및 전원종류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16 A 250 V~ 또는 16/250~

● 고정형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는 다음의 표시가 주요 부분에 표시되어야 한다.

- 정격전류, 정격전압 및 전원종류
- 상호, 상표 또는 제조자별 표시 또는 판매자명 표시
- 필요시 나사없는 단자의 도선 삽입 전 제거될 절연체 길이
- 단극 차단시 개폐소자에 연결되는 상도체의 접속단자는 L로 표시
- 형번(카탈로그 번호도 가능)

비 고 1) 형번은 일련번호만으로도 가능하다. 안전에 필수적이고 별도 판매되는 커버 플레이트와 같은 부속품은 제조자나 책임판매자의 이름, 상표 혹은 식별기호와 형번으로 표시된다.

비 고 2) 추가적인 형번은 주요 부분이나 연관된 외함의 외부에 표시된다.

비 고 3) 사용설명서에 다음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설치방법(L, N 구분) 설명
- 단극형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는 L, N 연결이 잘못될 경우 감전위험 있음을 경고할 것
- 단극형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는 단상3선식 건물에는 설치하지 말 것

IP 코드를 적용할 경우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가 일반 용도로 설치되고 배선될 때 그 코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고정형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는 다음의 표시가 주요 부분에 표시되어야 한다.

- 정격전류, 정격전압 및 전원종류
- 상호, 상표 또는 제조자별 표시 또는 판매자명 표시
- 필요시 나사없는 단자의 도선 삽입 전 제거될 절연체 길이
- 단극 차단시 개폐소자에 연결되는 상도체의 접속단자는 L로 표시
- 형번(카탈로그 번호도 가능)

비 고 1) 형번은 일련번호만으로도 가능하다. 안전에 필수적이고 별도 판매되는 커버 플레이트와 같은 부속품은 제조자나 책임판매자의 이름, 상표 혹은 식별기호와 형번으로 표시된다.

비 고 2) 추가적인 형번은 주요 부분이나 연관된 외함의 외부에 표시된다.

비 고 3) 사용설명서에 다음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설치방법(L, N 구분) 설명
- 단극형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는 L, N 연결이 잘못될 경우 감전위험 있음을 경고할 것
- 단극형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는 단상3선식 건물에는 설치하지 말 것

IP 코드를 적용할 경우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가 일반 용도로 설치되고 배선될 때 그 코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형번 이외의 표시는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가 배선되고 조립될 때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비 고) 코드 교환형 이동형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의 형번은 외함 또는 커버의 안쪽에 표시된다.

● **중성선 전용 단자는 N으로 표시된다.**

보호도체의 연결을 위한 접지단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이러한 표시는 나사나 분리가 용이한 다른 부품에 표시되지 않는다.

비 고 1) “분리가 용이한 부품”이란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의 일반 설치시에 분리 가능한 부품을 말한다.

비 고 2) 코드 비교환형의 영구 고정용 단자는 표시되지 않아도 된다.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의 주요 기능 부품을 형성하지 않는 도체 연결용 단자는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식별되거나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에 고정되는 배선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 K 60417-2에 의한 그래프 기호나 색깔 및 문자숫자 방식
- 물리적 치수나 상대적 위치

이 항목에서는 네온램프나 표시램프의 리드선을 도체로 보지 않는다.

● **IP20보다 높은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의 중요부품을 이루는 노출형**

설치박스에서는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가 일반용도와 동일하게 설치되고 배선될 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결된 외함의 외부에 IP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

- IPX0보다 높은 IP 등급의 매입형 및 바닥 매입형의 보호등급이 어느 등급에 있는지 또는 어떤 규정(가령 박스, 설치면의 유형, 플러그 등)에 대해 승인 받았는지를 표시나 제조자의 카탈로그 또는 취급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안전기준) KC 61242 : 전기용부속품-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케이블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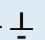



● **케이블 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

- 정격 전압(V)
- 교류 또는 직류 구별
- 제조자 또는 책임 판매자의 명칭, 상표 또는 식별 기호
- 형번(카탈로그 번호라도 된다.)
- IP20보다도 높을 경우에는 물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의 기호에 규정된 용어

보 기) 「1 500 W-230 V 유연 케이블 완전 감기, 3 000 W-230 V 유연 케이블 완전 신장」 과대한 온도에 대해 보호되지 않는 케이블 릴에 대해서는 최대 허용 부하 표시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주지(主旨)를 표시한다. 「경고-최대 허용 부하를 초과하면 화재 위험이 있다.」

온도 과속 방지 장치 또는 전류 차단 장치를 부착한 케이블 릴에는 장치의 리셋 방법을 표시한다.

비 고) 케이블 릴에는 정격 전류(A)를 표시할 수도 있다. 기호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암페어	A
볼트	V
와트	W
교류	~ 또는 AC
중성	N
접지	 또는 
완전 감기 케이블 릴	
완전 신장 케이블 릴	



보호(splashing water)	IPX4
보호(water jet)	IPX5

비 고 1) 기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선은 표시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비 고 2) 교류 및 접지 기호의 상세에 대해서는 IEC 417을 참조한다. 3. 문자 X는 관련하는 숫자로 바꾸어야 하고 이 규격에 대해서는 최소가 2이다. 7.3 6.3 a) 및 6.3 b)의 1)에 따른 부류의 케이블 릴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중성선 전용으로 의도된 단자는 문자 N으로 표시한다.
- 접지용 단자는 접지 기호로 표시한다.
- 유연 케이블의 단면적, 종류 및 길이를 나타내는 표시는 확실하게 보이는 장소에 표시한다. 이러한 표시는 유연 케이블을 교환할 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나사, 떼낼 수 있는 와셔 또는 도체를 접촉할 때 쉽게 떼낼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부착하면 안 된다.

• 6.3 a)의 1)에 따른 부류의 케이블 릴:

- 중성점 도체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단자는 문자 N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접지 단자는 보호 접지 기호(IEC 60417-5019(2006-08))로 표시한다.
- 단면적을 나타내는 표시는 연성 케이블의 형식 및 길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한다.
이 표시는 연성 케이블을 교체하는 경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하며 나사, 제거 가능한 와셔 또는 접촉한 도체를 쉽게 제거하는 기타 부품을 배치하면 안 된다.

• 6.3b)에 따른 부류의 케이블 릴:

- 코드 연장 세트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시(단면적, 연성 케이블의 형식 지정 및 길이 그리고 정격 전류와 플러그 및 휴대용 콘센트)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한다. 이 표시는 연성 케이블을 교체하는 경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하며 나사, 제거 가능한 와셔 또는 접촉한 도체를 쉽게 제거하는 기타 부품을 배치하면 안 된다.

비 고) 이 표시는 하나 이상의 코드 연장 세트 형식을 포함한다.

- 규정된 정보는 케이블 릴이 통상 사용 상태에서 확실하게 보여야 하고 기호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호로 표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어로 표시한다. 또한 물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을 나타내는 기호 또는 용어 그리고 최대 부하는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확실히 식별할 수 있게 하려면 확대 문자 사용, 대조적인 색 사용, 밑줄, 다른 행에 배치하는 등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파점을 내장하는 케이블 릴의 제조자는 최대 부하를 초과하는 경우 케이블 릴의 추가 사용이 손상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제품 및 포장에 주어져도 된다.
- 표시판 또는 라벨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들을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이 규격의 모든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라벨의 모서리나 가장자리가 말리거나 떨어질 것같이 되면 안 된다.



5. 전기용품보호용 제품



안전기준) KC 60127-1 : 소형 퓨즈 : 소형 퓨즈의 정의 및 소형 퓨즈링크의 일반 요구사항

표시사항

이후 다른 언급이 없으면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 퓨즈링크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a) 1 A 미만의 정격전류는 mA단위로 표시하고, 1 A 이상의 정격전류는 A로 표시한다. 정격전류는 정격 전압보다 앞서 표기하되, 정격전압에 인접하게 표시한다.

현재 몇몇 나라에 존재하는 관행을 수용하기 위해, 전류는 분수로도 표시될 수 있다.

b) 정격전압은 V로 표시

c) 제조자의 이름이나 상표

d) 관련 표준시트에 주어진 대로 상대 용단 시간/전류 특성을 나타내는 기호 표시
이들 기호는 다음과 같다.

FF : 매우 빠른 동작 표시

F : 빠른 동작 표시

M : 중간 시간 지연 표시

T : 시간 지연 표시

TT : 긴 시간 지연 표시

• 표시사항은 잘 지워지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물에 적신 천조각으로 15 초간 손으로 문지르고, 석유 원액에 적신 천조각으로 15초간 문지르는 시험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한다.
비 고 1) 석유 원액으로 최대 0.1 % 정도의 방향 성분을 가진, 카우리 부탄올 29, 비등점 약 65 °C, 마른 점 약 69 °C 그리고 비중 약 0.68 정도의 지방성 용매 hexan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비 고 2) 컬러 코딩의 경우, 지워지지 않는지에 대한 시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 표시사항은 이 기준 및 해당되는 표준시트 번호와 함께 포장에 인쇄되어야 한다. 포장의 표시에는 A 및 mA 단위를 포함해야 한다.

• 전류 정격 및 시간/전류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컬러 밴드가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추가 표시는 부속서 A를 따라야 한다.

안전기준) KC 60691 : 온도 퓨즈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각 온도 퓨즈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a) 모델명 또는 관련 카탈로그

b) 제조자의 이름 또는 상표

c) 정격 동작 온도(Tf 기호 삽입가능)를 섭씨온도로 표시(°C 또는 C로 표시)

d) 온도 퓨즈 표면이나 가장 작은 포장에 최소 10년 동안 중복될 수 없는 제조일자 코드와 공장위치 코드 표시

비 고 1) 만약 공장이 하나만 있다면, 공장위치의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정격 동작 온도 Tf의 표시는 다른 모델명 또는 관련 카탈로그가 각기 다른 동작 온도에 대해 사용된 경우 생략될 수 있다.
크기가 허용된다면 정격전압(V), 정격전류(A), 그리고 기타 필요한 표시사항이 온도 퓨즈에 표시될 수 있다. 표시는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읽기 쉬워야 한다. 지워지지 않음은 물에 적신 천으로 15 초간 가볍게 문질러 확인한다. 읽기 쉬움은 검사로 확인한다. 11.4항의 노화시험 후 검사에 의해 본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한다.

비 고 2) “가볍게 문지르기” 대신에 그림 G.1의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온도 퓨즈의 크기가 작다면, 그리고 교체되어지지 않도록, 상기 a), b), c) 및 d)에 따른 표시는 이 기준 번호와 함께 포장에 인쇄되어야 한다.

• **제품 정보**

제조자는 7항에서 요구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삽입하여 기술문서, 카탈로그 또는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6항에 따른 분류
- b) 아래 분류 사항
 - 1) 온도 특성 Tf, Th, Tm
 - 2) 전류 특성 Ir, Ib, Ip
 - 3) 정격전압 Ur c) 봉인의 적합성 또는 주입액이나 세정제의 사용여부
- d) 온도 퓨즈 설치에 대한 정보
- e) 크기가 작은 온도 퓨즈 그리고 교체되어지지 않음

비 고 1) 온도 퓨즈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최종사용자의 제품사용이 봉인 또는 세정제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제조자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비 고 2) 안전을 위하여 기술문서에는 온도 퓨즈는 수리 불가 항목이며, 교체의 경우, 같은 제조자의 카탈로그 번호가 같은 제품으로 반드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비 고 3) 카탈로그나 관련번호로 온도 퓨즈를 분류하는 온도, 전류 및 전압 같은 파라미터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기준) KC 60934 : 기기보호용 차단기(CBE)

표시와 기타 제품 정보

각각의 CBE에 내구적인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a) 제작자의 이름 또는 상표 마크
- b) 형식 설계 또는 일련번호
- c) 정격 전압(류)
- d) 정격 전류(기화된 기준 허용, 예를 들면 다음의 형식 설계에서 기호 A가 없는 전류값) 저항성 부하만을 위한 CBE라면 이는 제작자의 설명서에 기술해야 한다. e) CBE가 50 Hz와 60 Hz 외의 주파수를 위해 설계된 경우의 정격 주파수
- f) 표준값(5.2.2 참조)과 다른 기준 주위 온도에서 교정한 CBE의 기준 주위 온도, 예를 들면 40 °C의 기준 주위 온도를 T40으로 표기
- g) (전압-감도 CBE의) 동작 전압 한계
- h) 심볼 m로 표시된 공간 거리보다 작은 접촉 간극을 갖는 형식의 CBE
- i) 동작 R, M, S 또는 J의 방법
- j) 트리핑 모드
- k) 트립-자유 특성의 등급
- l) II와 다른 경우의 과전압 범주, 2와 다를 경우의 오염 등급
- m) 정격 조건부 단락 전류, 성능 범위 PC1(Inc1)
- n) 적절한 경우, 정격 조건부 단락 전류, 성능 범위 PC2(Inc2)
- o) 정격 임펄스 내전압
- p) 적용할 경우 정격 단락 용량 Icn
- q) 자체 복귀 시간
- r) 해당하는 경우, 장치 절연 적합성 기호

작은 장치에서 모든 표시사항을 표기할 공간이 불충분할 경우, 최소한 a)와 b) 그리고 적용 가능할 경우 g)와 h) 및 s)는 장치 위에 표시되어야 하며, 가능할 경우 c)와 d) 및 다른 정보는 제작자의 설명서에 주어져야 한다.

비 고 1) 정면에 표시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CBE 필수 규정이 아니다. CBE는 CBE 제조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그 장비에 OEM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대개 소형 CBE에서 공간이 부족하여 설치 후 눈에 보이는 정면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CBE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제조자는 OEM에게 자신의 장비를 이와 같이 표기하였음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푸시 버튼 방법으로 동작되는 것 이외의 CBE에 있어서 개방 지점은 기호 "O", 그리고 닫힘 지점은 기호 "I"(짧은 수직 직선 라인)로 표시해야 한다. 2개의 푸시 버튼 방법으로 동작되는 CBE는 단지 개방 동작을 위해 설계된 푸시 버튼을 붉은색 및/ 또는 기호 "O"로 표시되어야 한다.

비 고 2) "O"와 "I" 이외의 기호도 국가 기호로 허용된다. 붉은색은, 예를 들면 핸들, 잠금 장치와 같이 ON과 OFF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공된 기동기의 특정 형식을 위해 사용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푸시 버튼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원과 부하 단자 사이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 전자는 CBE를 가리키는 화살표로 표시하고 후자는 CBE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화살표로 표시해야 한다.

비 고 3) 예를 들면 전원 단자를 위한 1, 3, 5와 부하 단자를 위한 2, 4, 6과 같은 다른 국가 또는 국제적 표시는 허용된다. 중성점 전용으로 고안된 단자는 문자 "N"으로 표기한다. 어떤 보호성 도체를 위한 단자가 있다면 이는 심볼 로 표시해야 한다(KS X IEC 60417-2-5019).


적합성은 9.3의 검사 및 시험으로 확인한다. 정확한 연결 모드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곳에서 CBE는 배선도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배선도상 단자는 심볼로 표시해야 한다.

표기는 영구적이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나사, 와셔 또는 기타 제거될 수 있는 부품 위에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기준) KC 60898-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 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차단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a) 제조자명 또는 상호
 - b) 설계 유형, 카타로그 번호 또는 일련번호
 - c) 정격전압
 - d) 순시트립기호(B, C 또는 D) 다음에 "A"를 표시하지 않는 정격전류, 예를 들어 B 16
 - e) 정격주파수
 - f) 정격단락차단용량
 - g) 결선도 (결선 방법이 확실치 않은 경우)
 - h) 기준 주위 대기온도 (30 °C와 다를 경우)
 - i) 보호 등급 (IP20과 다를 경우에만)
 - j) D형 차단기의 경우: 20 In (표 2 참조) 보다 높다면, 최대순시트립전류
 - k) 정격임펄스내전압 Uimp (2.5 kV 인 경우)
- d)는 차단기를 설치하였을 때, 쉽게 판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기가 작아서 사용 공간이 불충분한 경우, a), b), c), e), f), h), i) 및 j)는 차단기 측면 또는 차단기 뒤쪽에 표시할 수 있다. g)는 전원선을 연결하기 위해 제거해야 하는 덮개의 안쪽에 표시할 수 있지만, 차단기에 느슨하게 부착된 라벨에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표시하지 않은 기타 다른 정보는 제조자의 제품설명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이 규격의 모든 차단기에 의해 제공되는 이격 성능은 장치에 기호  로 표시되어야 한다. 부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부하 보호와 같은 기호나 또는 IEC의 제 3 기술위원회 또는 다른 기호와 조합할 경우, 이 기호를 결선도에 포함할 수도 있다. 기호를 결선도 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의 기호와의 조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KS C IEC 60529에 따라서 IP20보다 높은 보호등급을 기기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면, 설치 방법이 어떤 형태이든 보호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약 특정한 설치방법 및/ 또는 특정한 액세서리(즉 단자덮개, 외함 등)를 사용하여 보다 높은 보호등급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내용이 제조자의 설명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요청을 있을 시, 제조자는 I2 t 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요청을 있을 시, 제조자는 I2 t 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I2 t 에 따른 분류를 표시하고, 이에 맞게 차단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누름버튼 이외의 방법으로 동작되는 차단기의 경우, 개로워치는 기호 “O”로, 폐로워치는 “|”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시를 위해 추가로 사용되는 국내용 기호는 허용된다. 국내용 기호만 사용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기호들은 차단기가 설치되었을 때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두 개의 누름버튼으로 동작되는 차단기의 경우, 개방동작만을 위한 누름버튼은 적색이어야 하고/하거나 기호“O”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에 따른 분류를 표시하고, 이에 맞게 차단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누름버튼 이외의 방법으로 동작되는 차단기의 경우, 개로워치는 기호 “O”로, 폐로워치는 “|”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시를 위해 추가로 사용되는 국내용 기호는 허용된다. 국내용 기호만 사용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기호들은 차단기가 설치되었을 때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두 개의 누름버튼으로 동작되는 차단기의 경우, 개방동작만을 위한 누름버튼은 적색이어야 하고/하거나 기호“O”로 표시되어야 한다.


적색은 차단기의 다른 누름버튼에 대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누름버튼이 접점을 투입하는데 사용되고 그러한 것으로 명백히 구분되어지는 경우, 그것의 눌러진 위치는 폐로워치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접점을 투입하고 개방하는데 하나의 누름버튼이 사용되고 그러한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경우, 눌러진 위치에 있는 버튼은 폐로워치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반면에 버튼이 눌러진 상태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가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중 전류정격인 차단기의 경우, 최대값은 d)에 따라 표시하고, 추가로 가변이 가능한 값은 차단기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전원 및 부하 단자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 전원은 화살표가 차단기 방향을 가리키도록, 부하 단자는 화살표가 차단기로부터 나오는 방향을 가리키도록 해야 한다.

중성선 회로의 접속만을 위한 단자는 문자 N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보호도체를 접속하기 위한 단자가 있다면, 그것은 기호  (KS X IEC 60417-5019 a))로 표시되어야 한다.

비 고 전에 사용되었던 기호 (KS X IEC 60417-5017)는 위에 주어진 권장된 기호 KS X IEC60417-5019로 점진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표시는 지워지지 않고 잘 볼 수 있어야 하며, 나사, 와셔 또는 다른 제거 가능한 부분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기준) KC 60947-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교류용 차단기

• 관련제품규격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조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조자의 명칭 또는 상표
- 형식명 또는 제조번호
- 제조자가 적합성을 주장하는 경우, 관련제품규격 번호
- 특성:
 - 정격사용전압(4.3.1.1 및 5.2의 비교 참조)
 - 기기의 정격사용전압에 대한 사용범주 및 정격사용전류(또는 정격전력 또는 정격연속전류) 경우에 따라서, 이 정보는 기기가 교정된 기준주위
 - 온도의 값에 의해서 완전해 질 수 있다
 - 정격주파수의 값. 예를 들면, 50 Hz, 50 Hz/60 Hz, 및/또는 “직류” 표시 또는 기호
 - 정격책부, 간헐책무인 경우에는 등급을 표시
 - 정격투입용량 및/또는 정격차단용량. 이런 표시는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사용범주의 표시로 대체될 수 있다.
 - 정격절연전압
 - 정격임펄스내전압
 - 릴레이 또는 릴리스 특성
 - 개폐 과전압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지속시간을 포함한 정격단시간내전류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정격단락투입용량 및/또는 정격단락차단용량,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정격조건부단락전류
 - 폐쇄된 기기의 경우, IP 코드
 - 오손등급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단락보호장치의 형식 및 최대정격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등급
 - 정격제어회로전압, 전류의 종류 및 주파수
 - 제어코일의 전압과 다른 경우, 정격제어전원전압, 전류의 종류 및 주파수
 - 공기압의 정격공급압력 및 압력 변화의 한계(공기압식 제어기기의 경우)
 - 이격(isolation)에 대한 적합성
 - 도체를 단자에 삽입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할 절연체의 길이
 - 고정할 수 있는 최대 도체의 수
 - 비 범용(non-universal screwless) 비나사형 단자
 - 경도체-단선용 단자에 “s” 또는 “sol”을 명시
 - 경도체(단선 및 연선)용 단자에 “r”을 명시
 - 연도체용 단자에 “f”를 명시
 - 전자식 제어 전자석의 경우, 제어회로 구성과 같은 기타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 비 고) 상기 목록이 전부는 아니다.

● 표시사항

기기에 표시해야 하는 모든 관련정보는 관련제품규격에서 규정한다.

표시는 지워지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제조자의 명칭 또는 상표, 형식명 또는 제조번호의 표시는 제조자로부터 얻은 전체의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 기기, 가능한한 명판에 표시되어야 한다.

비 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정격사용전압 Ue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 3상 4선식 계통에 사용되는 기기의 경우, 상전압과 선간전압 모두 표시. 예를 들면, 277/480V

b) 3상 3선식 계통에 사용되는 기기의 경우, 선간전압으로 표시. 예를 들면, 480V.

또한 다음의 정보가 설치 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조작기의 동작방향
- 조작기의 위치 표시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승인 또는 인증 표시
- 소형화된 기기의 경우, 기호, 색코드, 또는 문자기호

- 단자식별 및 표시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IP코드와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등급(가능한한 기기상에 표시)
-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이격에 대한 적합성은, IEC 60617-7, 07-01-03의 이격기능의 기호로부터, 기기에 대해 적절한 기능의 기호를 조합해서 완성시켜도 좋다.

예를 들면,



이격에 적합한 차단기



단로기용 스위치

이 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 명확하고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기기가 통상의 사용상태로 취부되어 조작될 때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기기가 7.1.11에 따르는 외함을 갖는 것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요구사항은 또한 기호가 결선도에 표시되어 있고 이 결선도가 이격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시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전자식 제어 전자식의 경우, 5.1에 제시되어 있는 이외의 정보가 요구될 수도 있다.

비범용 비나사용 단자에 대한 "s", "sol", "r" 또는 "f" 표시는 장치에 표시하거나, 공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최소 포장 단위 또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기술 정보에 표시해야 한다.

같은 곳에 위치한 단자들의 경우, 장치 상의 단일 표시가 허용된다.

설치, 동작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

제조자는 설치와 관련하여 동작중 및 고장후의 기기의 동작 및 유지보수 조건을 필요에 따라 문서 또는 카탈로그에 명기해야 한다.

제조자는 또한 필요하다면, EMC와 관련된 대책을 규정해야 한다. 환경 A(7.3.1 참조)에만 적합한 기기에 대해서 제조자는 다음 주의사항을 문서에 기술해야 한다.

주 의

이 제품은 환경 A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환경 B에서의 이 제품의 사용은 불필요한 전자기 방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완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기기의 운송, 설치 및 동작에 관한 지시서에는 적절하고 올바른 설치, 취급 및 동작에 관해 특별히 중요한 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필요하다면, 유지보수의 범위 및 주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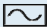
비 고) 이 기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기가 반드시 유지보수 되도록 설계될 필요는 없다.


안전기준) KC 61008-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 제1부 : 일반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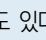
각 RCCB에는 영구적인 방법으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또는 작은 기기의 경우에는 일부를 표시해야 한다.

- a) 제조자명 또는 상호
- b) 형식명, 카탈로그 번호 또는 제조번호
- c) 정격전압
- d) 정격주파수
- e) 정격전류
- f) 정격감도전류
- g) 다중 감도전류 설정을 갖는 RCCB의 경우, 감도전류의 설정값
- h) 정격투입 및 차단 용량
- j) 보호등급(IP20과 다른 경우)

- k) 필요한 경우, 사용위치(IEC 60051에 따른 기호)
- l) 정격투입 및 차단용량과 다른 경우, 정격누전투입 및 차단용량
- m) S형 기기에 대한 기호 
- n) 회로전압 의존형 RCCB일 경우의 표기(검토 중)
- o) 문자 T에 의한 시험장치의 동작기구 표시
- p) 결선도
- q) 직류성분을 갖는 누전전류 발생시의 동작특성

AC형 RCCB의 기호 

A형 RCCB의 기호 

표시사항은 RCCB 본체 또는 RCCB에 부착된 명판에 표시되어야 하고, RCCB가 설치된 상태에서 읽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표준의 모든 RCCB가 갖고 있는 이격에 대한 적합성은 기기상에 기호  를 사용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 이 표시는 결선도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 결선도에서 다른 기능의 기호들과 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기기상에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즉, 결선도에 표시하지 않고), 다른 기능의 기호들과 조합해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KS C IEC 60529에 따른 IP20보다 더 높은 보호등급을 기기상에 표시한 경우, 설치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만족해야 한다. 특정의 설치방법에 의해서만, 그리고/또는 특정 부속품(예를 들면, 단자 덮개, 외함 등)의 사용으로 더 높은 보호등급이 얻어진다면, 제조자의 안내 책자에 이것을 명시해야 한다. 모든 사항을 표시할 공간이 없는 작은 기기의 경우에는 최소한 e), f) 및 o)의 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기기가 설치되었을 때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a), b), c), k), l) 및 p)의 사항은 기기의 옆이나 뒷면에 표시할 수도 있고, 기기가 설치되기 전에만 보이게 할 수도 있다. p)의 사항은 전원선들을 접속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하는 덮개의 안쪽에 표시할 수도 있다.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사항들은 제조자의 제품설명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RCCB의 주울 적분값과 파고전류의 내량을 제시해야 한다. 제시되지 않은 경우, 표 17에주어진 최소값이 적용된다. 제조자는 제품명세서와 각각의 RCCB에 수반되는 인쇄물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적절한 SCPD를 제시해야 한다.

4.1.2.1에 따라 분류되고 회로전압이 상실되었을 때 시간지연을 가지고 개로되는 RCCB의 경우, 제조자는 그러한 시간지연의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누름버튼 이외의 방법으로 동작되는 RCCB의 경우, 개로위치는 기호 "O"로, 폐로위치는 "I"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시를 위해 추가로 사용되는 국내용 기호는 허용된다. 국내용 기호만 사용하는것은 임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기호들은 RCCB가 설치되었을 때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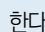
두 개의 누름버튼으로 동작되는 RCCB의 경우, 개방동작만을 위한 누름버튼은 적색이어야 하고/하거나 기호 "O"로 표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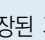
적색은 RCCB의 다른 누름버튼에 대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누름버튼이 접점을 투입하는 데 사용되고 그러한 것으로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그것의 눌러진 위치는 폐로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충분하다.

접점을 투입하고 개방하는 데 하나의 누름버튼이 사용되고 그러한 것으로 구분되는 경우, 눌러진 위치에 있는 버튼은 폐로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충분하다. 반면에 버튼이 눌러진 상태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가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전원단자와 부하단자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대응하는 단자 가까이 "전원"과 "부하"라는 표시를 하거나, 전원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표시를함).

중성선 회로의 접속만을 위한 단자는 문자 N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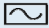

보호도체를 접속하기 위한 단자가 있다면, 그것은 기호  [IEC 60417-5019 a)]로 표시되어야 한다.

비 고 전에 사용되었던 기호  [IEC 60417-5017 a)]는 위에 주어진 권장된 기호 IEC60417-5019 a)로 점진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표시는 지워지지 않고 잘 볼 수 있어야 하며, 나사, 와셔 또는 다른 제거 가능한 부분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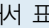
안전기준) KC 61009-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RCBO)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표시 및 기타 제품정보

- 각 RCBO에는 영구적인 방법으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또는 작은 기기의 경우에는 일부를, 표시해야 한다.
- a) 제조자명 또는 상호
- b) 형식명, 카탈로그 번호 또는 제조번호
- c) 정격전압
- d) 과전류 순시트립의 기호(B, C 또는 D)를 앞에 붙이고 기호 "A"를 생략한 정격전류. 예를 들면, B 16과 같이 표시한다.
- e) 정격주파수 RCBO가 둘 이상의 정격주파수를 가진 경우, 예를 들면 50/60 Hz로 표시되어야 한다.
- f) 정격감도전류
- g) 다중 감도전류를 갖는 RCBO의 경우, 감도전류의 설정
- h) 정격단락용량

- i) 30 °C와 다른 경우, 기준 교정온도
- j) 보호등급(IP 20과 다른 경우)
- k) 필요한 경우, 사용위치(K 60051에 따른 기호)
- l) 정격단락용량과 다른 경우, 정격누전 투입 및 차단용량
- m) S형 기기에 대한 기호
- n) 회로전압 의존형 RCBO일 경우의 표기
- o) 문자 T에 의한 시험장치의 동작기구 표시
- p) 결선도
- q) 직류성분을 갖는 누설전류 발생시의 동작특성
- AC형 RCCB의 기호 
- A형 RCCB의 기호 
- r) D 형 RCBO : 최대트립순시전류, 20 In 보다 큰 경우

표시사항은 RCBO 본체 또는 RCBO에 부착된 명판에 표시되어야 하고, RCBO가 설치된 상태에서 읽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기준의 모든 RCBO가 갖고 있는 이격에 대한 적합성은 기기상에 기호  를 사용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

이 표시는 결선도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 결선도에서 다른 기능의 기호들과 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비 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차단기상에 이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단, 설치 후에 보여야 할 필요는 없다.

기기상에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즉, 결선도에 표시하지 않고), 다른 기능의 기호들과 조합해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K 60529에 따른 IP20보다 더 높은 보호등급을 기기상에 표시한 경우, 설치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만족해야 한다. 특정의 설치방법에 의해서만, 그리고/또는 특정 부속품(예를들면, 단자 덮개, 외함 등)의 사용으로 더 높은 보호등급이 얻어진다면, 제조자의 안내 책자에 이것을 명시해야 한다.

모든 사항을 표시할 공간이 없는 작은 기기의 경우에는, 최소한 d), f), n) 및 r) (A 형만 해당)의 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기기가 설치되었을 때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a), b), c), h),

i) (AC 형만 해당) 및 s)의 사항은 기기의 옆이나 뒷면에 표시할 수도 있고, 기기가 설치되기전에만 보이게 할 수도 있다.

r)의 사항은 전원선들을 접속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하는 덮개의 안쪽에 표시할 수도 있다. 표시 되지 않은 나머지 사항들은 제조자의 제품설명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누름버튼 이외의 방법으로 동작되는 RCBO의 경우, 개로위치는 기호 "O"로, 폐로위치는 "I"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시를 위해 추가로 사용되는 국내용 기호는 허용된다. 국내용 기호만 사용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기호들은 RCBO가 설치되었을 때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두 개의 누름버튼으로 동작되는 RCBO의 경우, 개방동작만을 위한 누름버튼은 적색이어야하고/하거나 기호 "O"로 표시되어야 한다.

적색은 RCBO의 다른 누름버튼에 대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누름버튼이 접점을 투입하는데 사용되고 그러한 것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지는 경우, 그것의 눌린 위치는 폐로위치를 나타내기 에 충분하다.

접점을 투입하고 개방하는데 하나의 누름버튼이 사용되고 그러한 것으로 구분되어 지는 경우, 눌린 위치에 있는 버튼은 폐로위치를 나타내기 에 충분하다. 반면에 버튼이 눌린 상태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가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전원단자와 부하단자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대응하는 단자 가까이 "전원"과 "부하"라는 표시를 하거나, 전원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표시를 함).

중성선 회로의 접속만을 위한 단자는 문자 N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보호도체용 단자가 있다면, 그것은 기호  (K 60417-5019 a))로 표시되어야 한다.

비 고 2) 전에 사용되었던 기호  (K 60417-5017 a))는 위에 주어진 권장된 기호 K 60417-5019 a)로 점진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표시는 지워지지 않고 잘 볼 수 있어야 하며, 나사, 와셔 또는 다른 제거 가능한 부분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6. 절연변압기



안전기준) KC 61558-1 :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표시 및 사용 설명서

- 변압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a) 볼트 단위 정격 공급 전압 또는 정격 공급 전압 범위

정격값 범위를 가지고 그 범위 전체를 통틀어 조정 없이 작동될 수 있는 변압기는 하이픈(-)에 의해 분리된 최저 범위와 최고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비 고 1) 예로 115~230 V : 변압기는 표시 범위 내 임의의 어떠한 값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정격이 달라 사용자나 설치자가 특정값에서 사용시 수정해야 하는 변압기는 그 값을 사선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비 고 2) 예로 115-230 V : 이 변압기는 표시된 값에서만 사용해야 한다(셀렉터 스위치를 가진 변압기).

비 고 3) 이러한 요구 사항은 또한 단상이나 다상 공급원 두 가지 모두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를 가진 변압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230 V/400 V : 이 변압기는 단상 작동을 위한 지정 전압이 230 V이고, 3상 작동을 위한 지정 전압이 400 V일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두 개 공급원을 위한 터미널을 갖춘 변압기).

b) 볼트 또는 킬로볼트 단위 정격 출력 전압

정류기 통합 변압기들에 있어서 정류기를 통과하고 난 후 정격 출력 전압은 대수적인 평균값으로 표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출력 전압이 r.m.s.값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명시되어야 한다.

비 고) r.m.s.값은 표시상에 r.m.s.를 표기하여 대수적 평균값과 구분한다.

c) 정류기에 있어서의 볼트-암페어 또는 킬로볼트-암페어 및 VAR 혹은 kVAR 단위 정격 출력

비 고) 정류기와 조합된 변압기들의 경우 출력은 볼트-암페어 또는 킬로볼트-암페어 대신에 와트 단위로 표현된다.

d) 정격 출력 표시를 대신하여 암페어나 밀리암페어로 표시한 정격 출력 전류

e) 헤르츠 단위 정격 주파수

f) 정격 전력을, 25 VA가 넘는 변압기용으로 통일되지 않은 경우

g) 정류기가 조합된 변압기의 출력 전류의 특성에 대해 기호 또는 약어(DC)

h) 관련된 2부에서 지시한 것처럼 변압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i) 제조자나 책임 판매상의 이름이나 상표

j) 모델 또는 형별 내용

k) IEC 60076-1에 따르는 벡터 그룹(3상 변압기에 해당)

l) 2종 구조에 해당하는 기호, 2종의 변압기에만 해당

m) 3종 구조에 해당하는 기호, 3종의 변압기에만 해당

n) IP00 또는 보통의 변압기들이 아닌 다른 경우 보호색인 IP에 대한 표시

o) 25°C 이상이면 정격 최고 주위 온도 t_a

비 고) t_a 의 값이 $t_a \leq 50^\circ\text{C}$ 일 경우 5°C 단위로 주어지며, t_a 의 값이 $t_a > 50^\circ\text{C}$ 일 경우에는 10°C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p) 만약 작동 시간이 변압기의 구조에 의해 제한받지 않거나 관련된 2부에서 명시된 동작 조건에 상응하지 않을 경우, 단시간 작동하는 변압기나 주기적으로 작동하는 변압기는 정격 작동 시간이나 정격 작동 시간과 함께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단시간 작동 또는 주기적 작동에 대한 표시는 일반적인 사용시의 표시 방법과 일치해야 한다.

주기적인 동작의 표시는 정격 작동 시간을 먼저 표시하고 정격 휴지 시간을 나중에 쓴 뒤, 사이에 사선(/)을 넣어 구분한다.

추가적으로 제조자는 구매자에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문헌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 정격 출력이 1 000 VA를 초과하는 거치형 변압기는 단락 회로 전압은 정격 공급 전압의 백분율로 표시한 단락 회로 전압

- 변압기의 전기적인 기능

비 고 1) 만약에 변압기가 한 개 이상의 출력 권선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된 단락 회로 전압은 여러 가지의 권선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가진다.

비 고 2) 추가적인 표시는 사용자에게 오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 보호 지수 IP00에 있는 변압기나 조합 변압기에는 제조자명(또는 상표), 또는 책임 판매상 및 유형 참조(목록 참조)만 표기한다. 다른 특성들은 변압기의 데이터 시트나 변압기와 함께 전달될 제조자의 사용법에서 주어진다.

비 고 1) 제조자의 이름이나 책임 판매상 이름 그리고 유형 참조는 코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원래 변압기와 충분히 교체가 가능한 대체 변압기가 공급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비 고 2)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것은 전기적, 기계적, 치수적 및 기능적으로 똑같은 것을 말한다.

- 만약 변압기가 다른 정격 공급 전압들에 알맞도록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될 수 있는 변압기의 전압은 쉽고 명백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중간 접점을 하거나 여러 개의 출력 권선을 가진 변압기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변압기가 출력 전압을 빈번히 바꿔 주어야 할 특수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각각의 중간접점이나 권선에 있어서의 정격 출력 전압

- 모든 중간 접점이나 권선에 있어서 똑같은 출력 전압을 갖지 않는다면 각각의 중간 접점이나 권선에 있어서의 정격 출력 다양한 출력 전압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연결들의 배열은 변압기에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 단락 회로 증명 변압기로 표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요구 사항을 수용한 변압기는 단락 회로 증명 변압기라는 기호를 표시한다.

퓨즈가 달린 비단락 회로 방지 변압기와 퓨즈로 보호하게 되어 있는 비단락 회로 방지 변압기에는보호용 퓨즈 링크의 정격 전류, 암페어 또는 밀리암페어를 추가로 표시한다. 표시 위치는 관련 규격에 준해 퓨즈의 시간 전류 특성을 나타내는 기호 전, 후로 한다.

퓨즈 이외의 대체 가능한 보호적인 장치와 조합된 비고유 단락 회로 증명 변압기와 퓨즈 이외의 보호 장치로 보호되도록 설계된 비단락 회로 증명 변압기는 추가적으로 장치의 제조 회사의 모델 또는 타입 참조가 표시를 하고/하거나 장치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비 고 대체가 불가능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 비고유 단락 회로 증명 변압기는 보호 장비에 관한 추가적인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표시는 보호 장비를 정확히 교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퓨즈 이외의 다른 교체 가능한 보호 장비가 사용될 경우에 그것의 설치에 관한 자료는 지침서나 변압기에 첨부된 유사 자료를 통해 제공한다.

안전 장치가 되어 있는 변압기로 표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요구 사항을 따르는 변압기는 안전 장치가 된 변압기라는 것을 기호로 표시해야 한다.

- 중성 도체 전용으로 제작된 터미널은 중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표시한다.

접지 터미널은 접지를 나타내는 기호로 나타낸다.

입력과 출력 권선 터미널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권선이나 터미널의 어느 지점이 프레임이나 코어에 연결되어 있다면, 관련 기호로 이것을 표시해주어야 한다.

- 변압기의 연결 방법이 설계상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표시를 통해 분명히 나타내 주어야 한다.

● X, Y, Z형 부착물이 달린 변압기에 있어서 지침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특별하게 준비된 코드를 가진 X형 부착물의 경우
“만약 이 변압기의 외부의 유연한 케이블이나 코드가 파손되면 그것은 그 제조 회사나 그 서비스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개별 코드나 조립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Y형 부착물의 경우
“이 변압기의 외부의 유연한 케이블이나 코드가 파손된 경우,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조 회사나 그 서비스 직원 또는 유사 자격자에 의해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 Z형 부착물의 경우
“이러한 변압기 외부의 유연한 케이블이나 코드는 교체할 수 없다. 만약 코드가 손상되면 변압기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

● 실내 사용 전용 변압기는 관계된 기호로 표시된다.

제조자가 “실내에서만 사용”이라고 지침서에 표시한 변압기를 표시할 적당한 기호로는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

● 2종 변압기는 전원 정보와 가까운 곳, 예로 정격 표지판 같은 곳에 표시한 IEC 60417의 5172그래픽 기호를 이용해 표시하여 기호가 기술적인 자료의 일부분인 것을 분명히 하고, 제조자의 이름이나 어떠한 다른 표시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 통제 장치들의 여러 위치와 스위치의 여러 위치는 숫자, 문자 또는 시각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다른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숫자를 이용하는 경우는 “off ” 상태는 숫자 0, 더 높은 출력, 입력, 기타 등등의 상태는 더 큰 숫자로 표시한다.

숫자 0은 기타 다른 표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표시는 언어, 국가 표준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표시 위치는 나사 위나 다른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곳을 피해 견고한 곳에 설치한다.

표시는 아래에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변압기를 사용할 때에 명백히 식별 가능해야 한다.

터미널에 관계된 표시는 필요에 의해 커버를 벗긴 후라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즉 입력 터미널과 출력 터미널이 혼동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환 가능한 보호성 장치와 관계된 표시는 장치 밀면 근처에 위치해야만 한다. 어떠한 커버나 보호성 장비의 제거 이후에도 분명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만약 설치나 사용을 위한 특별 예방책이 필요하다면 이들 세부 사항을 명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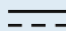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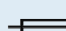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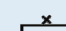









7. 전기기기



안전기준) KC 60335-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기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 [V]
 - 정격 주파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전원 종류의 기호
 - 정격 입력 [W] 또는 정격 전류 [A]
 - 제조자명 또는 책임 있는 판매자명, 상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표시
 - 모델명 또는 형식 기준
 - 2종 기기에 한하여 기호 IEC 60417-5172 (2003-02)
 -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에 따른 IP 번호(IPX0은 제외)
 - 3종 기기에 한하여 기호 IEC 60417-5180 (2003-02). 이 표시는 축전지(기기 외부에서 충전되는 1차 전지 또는 2차 전지)만으로 작동하는 기기에는 필요하지 않다.
- 기기를 수도관에 연결하기 위해 외부 호스 세트에 내장된 전기동작식 급수 밸브의 외함에는 그 동작 전압이 초저전압을 초과한다면 기호 IEC 60417-5036 (2002-10)을 표기하여야 한다.
- 복수 전원용 거치형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단자에 닿기 전에 모든 전원회로를 차단할 것
- 이 경고문은 단자 커버 근방에 표시되어야 한다.
- 정격값의 범위가 있는 것으로 그 전체 범위로 조정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하이픈(-)으로 표시한다.
- 정격값이 상이한 기기로서 사용자 또는 설치자가 특정 값에서 사용하기 위해 조정해야 하는 것은 사선(/)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값을 표시한다.
- 기기를 다른 정격 전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기가 조정된 전압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압 조정 빈도가 낮은 기기로서 조정되어 있는 정격 전압이 기기에 부착된 배선도에 따라 명백히 식별되면 이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 둘 이상의 정격 전압 또는 하나 이상의 정격 전압 범위 표시가 있는 것은 그 각각의 전압 또는 전압 범위마다 정격 입력 또는 정격 전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 전압 범위의 상한과 하한과의 차이가 정격 전압 범위의 평균값의 10 %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값을 정격 입력 또는 정격 전류로 표시할 수 있다.
- 입력과 전압과의 관계가 확실히 구분되도록 정격 입력 또는 정격 전류의 상한 및 하한을 기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 기호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기호 IEC 60417-5031 (2002-10)]	직류
	[기호 IEC 60417-5032 (2002-10)]	교류
	3 [기호 IEC 60417-5032-1 (2002-10)]	3상 교류
	3N [기호 IEC 60417-5032-2 (2002-10)]	중성선 있는 3상 교류
	[기호 IEC 60417-5016 (2002-10)]	퓨즈 링크
	시간지연 소형 퓨즈. 여기서 ×는 KS C IEC 60127에 명시된 시간/전류에 특성에 대한 기호이다.	
	[기호 IEC 60417-5019 (2006-08)]	보호접지
	[기호 IEC 60417-5018 (2006-10)]	기능 접지
	[기호 IEC 60417-5172 (2003-02)]	2종 기기
	[기호 IEC 60417-5012 (2002-10)]	램프
	[기호 KS S ISO 7000-0434(2004-01)]	주의
	[기호 KS S ISO 7000-0790(2004-01)]	사용설명서 읽기
	[기호 IEC 60417-5021(2002-10)]	동전위성
	[기호 IEC 60417-5036(2002-10)]	위험 전압
	[기호 IEC 60417-5180(2003-02)]	3종 기기

- 전원 기호는 정격 전압의 표시 다음에 두어야 한다.
- 2종 기기에 관한 기호는 일종의 기술적 정보로, 다른 기호와 혼동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 물리량의 단위 및 그 기호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3개 이상의 전원 도체에 접속하는 기기 및 복수의 전원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정확한 접속방식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기에 배선도를 붙여야 한다.

● Z형 부착을 제외하고 전원접속용 단자의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 중성선 전용 단자는 문자 N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보호접지 단자는 기호 IEC 60417-5019 (2006-08)로 표시하여야 한다.
- 이러한 표시는 나사, 분리할 수 있는 와셔, 기타 도체를 접속할 때 빠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하지 않는다.



- 명백히 필요하다면 조작할 때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제어하는 스위치는 기기의 어느 부분을 제어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그러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용도의 표시는 실용상 언어나 국가표준의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거치형 기기에서 스위치의 각 위치 그리고 모든 기기의 제어장치의 각 위치는 숫자, 문자 또는 기타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제어장치의 일부가 되는 스위치에도 적용한다.
- 각 위치를 지시하기 위해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꺼짐 위치는 숫자 0으로 표시하고 출력, 입력, 속도, 냉각 효과 같이 가치가 더 큰 위치는 그림을 더 크게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숫자 0은 다른 표시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꺼짐 위치의 표시와 혼동할 수 없게 배치되어 다른 숫자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기기의 설치시 또는 통상 사용시에 조정하는 제어장치는 조정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전동공구



안전기준) KC 60745-1 :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표시 및 사용설명서(Marking and instru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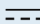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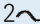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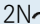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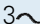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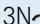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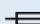



• 공구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정격 전압 또는 정격 전압범위(V). 스타-델타 결선의 공구는 두 정격 전압을 확실하게 표시한다(가령 230 D/400Y).
- 정격 주파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전원 종류의 기호
- 정격 입력(W, kW) 또는 정격 전류(A). 공구에 표시되는 정격 입력 또는 전류는 회로에 동시에 흐르는 총 최대 입력 또는 전류이다. 만일 공구가 제어장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대체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격 입력은 가능한 최대 부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 제조자명 또는 책임 있는 판매자명, 상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표시
- 모델명 또는 형식
- 2종 공구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IPX0을 제외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에 따른 IP 번호. IP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공구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 제조자 주소 또는 제조국
- 이 규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따름을 보여주는 강제 마크
오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상기 이외의 추가적인 표시를 할 수 있다. 부품에 별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구의 표시 및 부품의 표시는 공구 자체의 표시와 혼동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 만일 동작 시간이 공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동 공구는 정격 동작 시간 또는 정격 동작 시간과 정격 휴지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단시간이나 간헐적 동작의 표시는 정상 사용에 부합해야 한다. 간헐적 동작 표시는 정격 휴지 시간 앞에 정격 동작 시간을 사선(/)으로 표시하여 함께 있어야 한다.

• 기호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V	전압
A	전류
Hz	주파수
W	전력
Kw	킬로와트
F	페러드
uF	마이크로페러드
L	리터
g	그램
kg	킬로그램
bar	바
Pa	파스칼
h	시간
min	분
s	초
no	무부하속도
.../min 또는 min ⁻¹	분당 회전수 또는 왕복 회전수

	또는 d.c.	직류
	또는 a.c.	교류
		2상 교류
		중성선 있는 2상 교류
		3상 교류
		중성선 있는 3상 교류
	A	적절한 퓨즈의 정격 전류, 단위 A
		소형 시간지연 퓨즈. 여기서 X는 KS C IEC 60127에 규정한 시간/전류에 특성에 관하여 사용하는 기호
		보호접지
		2종 공구
IPXX		IP 구분번호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안전기준) K60065 :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한다.

- a) 제조자 또는 책임 있는 판매인의 이름, 상표 또는 증명 표시 ;
- b) 모델명 또는 형명 ;
- c) 2중 기기(이중절연기기)에 대한 표시 
- d) 전원의 종류 :
 - 교류전용기기에 대한 기호 \sim
 - 직류전원에 대한 기호 ---
 - 교류·직류 겸용 기기에 대한 기호 $\sim \text{---}$
 - 3상 계통은 K 61293에 따른다.
- e) 전압조정장치의 조정없이 적용가능한 정격전압범위 또는 정격전압. 다른 정격전압이나 정격전압범위로 설정할 수 있는 기기는, 기기가 설정된 전압이나 전압범위의 표시가 사용시 식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사선은 사용자가 정격을 선택할 수 있을 때 "110/230 V"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고, 하이픈은 "110-230 V"처럼 정격범위에 대해 사용한다.
- f) 안전이 주전원 주파수의 사용에 의존한다면, 정격 주전원 주파수(또는 주파수범위)를 헤르쯔 (hertz)로 표시한다.
- g) 범용 전원공급장치로부터 공급받는 기기의 정격소비전력. 대안으로써 정보가 사용설명서에 주어질 수 있다. 정격전압에서 측정된 소비치는 표시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h) 교류 주전원으로 연결되는 기기의 정격 소비전력을 표기한다. 단,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를 표시할 수 있다. 정격전압에서 측정된 소비치는 표시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단 자. 단자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 a) 전원 전선과 일체로 되어 있는 보호접지도선을 접속하는 결선「단자」에는 다음의 기호를 사용한다.

• 상기 이외의 접지접속 「단자」에는 위에 나타내고 있는 기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b) 주전원 단자를 제외하고, 정상 동작시에 충전부가 되는 단자
- c) 주전원을 제외하고, 다른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제공된 출력단자에는 단자에 연결이 허용되는 기기의 형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주의

감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망이 제거된 후 전원을 연결하지 마시오

- 공칭출력전압과

- 가장 불리한 부하에서 온도상승치가 표3의 정상동작 상태의 허용값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최대 출력전류 다른 기기에 주전력을 공급하는 소켓-아웃렛에는 공급할 수 있는 전력 또는 전류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다른 기기에 공급하기 위한 단자가 한 개만 있을 경우,

• 주의 표시

- a) 예를 들어 회로도 또는 부품 목록과 같은 제조자의 서비스 문서에 특정한 부품은 안정상의 이유로 문서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부품으로만 교체하도록 나타내는 기호가 사용될 경우, 다음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 기호는 해당 부품 가까이 붙인다. 이 기호는 부품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 b) 기기 외부에서 도구, 동전 또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는 스피커 망이 보호 커버로 부착되는 경우 아래의 표시나 이와 동등한 표시가 망을 제거한 후 외곽에 보이도록 해야 한다.
또는 기호가 망을 제거한 후 보이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설명서에 위의 주의 문구와 앞선 기호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0. 정보·통신·사무기기



안전기준) K 60950-1 :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기기는 정격 전력 표시와 정확한 전압과 주파수 공급을 명시하는 기기의 용도, 적절한 전류용량을 제공 해야 한다.

- 교류 주전원이나 직류 주전원에 직접 접속하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기기의 경우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주파수 등의 전기적 정격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기기 또는 시스템에 복수의 주전원 접속부가 있으면 각 개별 주전원의 전기 정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기기 또는 시스템의 총 전기 정격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 사용자가 설치하는 기기의 경우, 요구 시, 전력 정격 표시는 작업자 접근 구역에서 쉽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작업자가 수동 전압 선택기에 접근할 수 없다면 전력 정격 표시로 기기 제조 당시 설정한 정격 전압을 나타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임시 표시가 허용된다. 중량이 18 kg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전력 정격 표시는 기기 외부 표면에 어느 곳에서나 부착할 수 있다.

거치형 기기의 경우, 전력 정격 표시는 기기가 설치된 후 정상적인 이용 시 잘 보여야 한다.

서비스 요원이 설치하는 기기의 경우, 전력 정격 표시가 서비스 접근구역에 있으면 영구적인 표시의 위치를 설치 설명서에 기재되거나 또는 기기 위 눈에 잘 띄는 표식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임시적 표시의 사용이 허용 된다.

- 전력 정격 표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정격전압 또는 정격전압 범위 (V);

전압 범위에는 최소와 최대 정격전압 사이에 하이픈(-) 표시를 한다. 복수정격전압 또는 복수정격전압 범위를 표시하는 경우는 사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주1) 정격전압 표시의 예:

- 정격전압 범위: 220 - 240 V. 기기가 220 V에서 240 V사이의 교류 주전원에 접속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복수 정격전압: 120/230/240 V. 내부 조정 후 일반적으로 120 V 또는 230 V, 240 V의 교류 주전원에 접속 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 기기가 두 상선과 중성선에 접속하는 단상 3선식 전원 시스템의 경우, 그 표시는 상전압 및 선간 전압을 사선으로 분리하여 나타내고 추가로 “3선과 보호접지” ; “3W+PE”나 동등한 표시를 한다.

주2 : 상기 시스템의 정격표시의 예:

120/240 V; 3선 + PE

120/240 V; 3W +

120/240 V; 2W + N + PE

-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기기가 직류전용기기로 설계되지 않은 한, 정격주파수 또는 정격주파수 범위(Hz)

- 정격전류(mA 또는 A);

- 복수정격전압을 갖는 기기의 경우, 각 정격전압에 대한 정격전류를 표시한다. 이 경우, 각 전류정격은 사선(/)으로 구분하며, 정격전압과 그에 대한 정격 전류와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정격전압 범위를 갖는 기기는 최대 정격전류 또는 전류 범위로 표시해야한다.

단일전원에 접속용 기기 그룹의 정격전류 표시는 전원에 직접 접속하는 기기에 부착한다. 그 기기에 표시하는 정격전류는 그룹의 기기 전부를 동시에 동작했을 때, 그 기기를 통해 공급될 수 있는 최대전류로, 동시에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합이다.

주3) 정격전류 표시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복수정격전압을 갖고 있는 기기:
120/240 V ; 2.4/1.2 A
100-120/200-240 V; 2.4/1.2 A
직류전용기기의 경우, 직류를 나타내는 기호;
- 기기가 직류전용기기로 설계되지 않은 한, 정격주파수 또는 정격주파수 범위(Hz)
- 정격전류(mA 또는 A);
- 복수정격전압을 갖는 기기의 경우, 각 정격전압에 대한 정격전류를 표시한다. 이 경우, 각 전류정격은 사선(/)으로 구분하며, 정격전압과 그에 대한 정격 전류와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 정격전압 범위를 갖는 기기는 최대 정격전류 또는 전류 범위로 표시해야 한다.
- 단일전원에 접속용 기기 그룹의 정격전류 표시는 전원에 직접 접속하는 기기에 부착한다. 그 기기에 표시하는 정격전류는 그룹의 기기 전부를 동시에 동작했을 때, 그 기기를 통해 공급될 수 있는 최대전류로, 동시에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합이다.
주3) 정격전류 표시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복수정격전압을 갖고 있는 기기:
120/240 V ; 2.4/1.2 A
100-120/200-240 V; 2.4/1.2 A- 49 -
- 정격 전압 범위를 갖고 있는 기기:
100-240 V ; 2.8 A 또는 표 5C의 시험 전압 첨두치
100-240 V ; 2.8-1.4 A
100-120 V ; 2.8 A
200-240 V ; 1.4 A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점표시로 점(.)대신 콤마(,)를 사용한다.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추가표시를 해도 된다.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기호는 ISO 7000 또는 K 60417-1에 해당 기호가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

● 식별 표시

- 기기는 다음과 같은 식별 표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제조사명 또는 상표 또는 식별 표시
 - 제조사 모델 식별 또는 종류 표시
 - II급 기기 전용 식별을 위해 기호
중량이 18 kg 을 초과하는 기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상기 식별 표시는 작업자 접근구역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한다.
거치형 기기의 경우, 전력 정격 표시는 기기가 설치된 후 정상적인 이용 시 잘 보아야 한다.

11. 조명기기



안전기준) KC 60598-1 :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 정격전력
- 특수램프
- 저온 빔
- 볼 미러 램프
- 보호 실드(깨진 보호 실드는 교체하시오 or 그림1참조)
- 이그나이터 경고 문구 또는 심볼
- 자기차폐램프
- 내장 교체형 퓨즈 기호
- 원산지 표시(등록상표, 제조자 마크, 판매자)
- 정격전압
- 2종 등기구 기호
- 3종 등기구 기호
- IP표시, 일반적인등기구의IP20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 모델명 또는 형식
- 보통 가연성 표면에 부착이 부적합한 등기구에 대한 기호
- 전원단자 접지단자 기호
- 루프형 등기구의 최대 연결 갯수
- 내열물질로 덮기 부적합한 등기구의 기호
- 조사등 같은 경우 조명을 받는 물체와의 최소 거리에 대한 기호
- 친 환경에서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한 기호
- 필요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조정 수단의 식별 표시
- 조합 등기구에서 기본 등기구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표시
- 정격주파수

12.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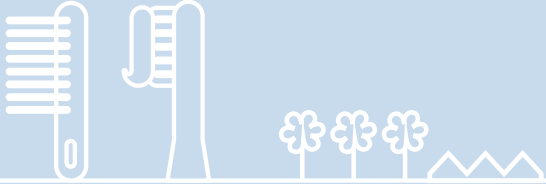
K 62477-1 : 전력전자 변환기 및 시스템(PECS)-제1부 : 일반

- 안전확인신고 마크
- 안전확인신고 번호
- 모델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 A/S 연락처
- 정격전압, 주파수, 전류, 위상
- 전력 정격
- IP등급
- 접촉전류
- 커패시터 방전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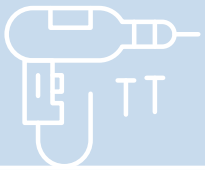
KC 62619 :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

별도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의무 표시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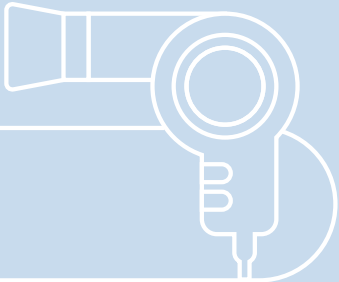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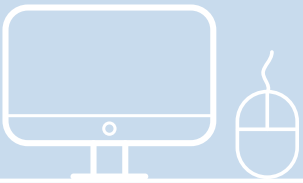




부록



지정 시험 기관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부록

① 지정 시험 기관

시험 · 인증기관 안내

기관명	소재지	대표번호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10	055-791-3114	https://www.ktl.re.kr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02-2102-2500	http://www.kcl.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02-2164-0011	http://www.ktr.or.kr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KTC)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1899-7654	http://www.ktc.re.kr
FIT시험연구원(FIT)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79 (마곡동 778)	02-3299-8000	https://www.fiti.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완산로 52 (용두동 232-22)	02-3668-3000	http://www.katri.re.kr/kr
KOTITI시험연구원(KOTITI)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상대원동 138-7)	02-3451-7000	http://www.kotiti-global.com

시험 · 인증기관 담당부서 안내

담당기관	품목 구분	세부품목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안전인증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안정기내장형 램프	정보조명평가센터
	안전인증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모발관리기, 전기온수기, 전기 냉장·냉동 기기, 전열기구, 냉방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팬, 레인지 후드,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자레인지(300MHz~32G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마사지기	전기기기평가센터
	안전인증	전자캐패기, 퓨즈, 차단기	인증관리센터



담당기관	품목 구분	세부품목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안전인증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데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리튬이차단전지	전기부품평가센터
	안전인증	리튬이차단전지,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데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 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6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전력신산업기술센터
	안전확인	오디오시스템,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TV, 오디오프로세서, 코팅기, 전자차 충전기, 모니터, 문서세단기, 백열등기구, 텔레비전수상기, 복사기, 프린터, 천공기, 고주파필터(고주파 용접기), 전기용접기, 영상프로세서, 프로젝터, 노트북컴퓨터, 디스크 플레이어, 무정전공급 장치, 방전램프	정보조명평가센터
	안전확인	전기집진기, 전기에어커튼, 팬코일유닛, 폐열 회수 환기장치, 전기훈증기, 산소이온발생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기온수매트,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썬질기 및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유체펌프, 전기기열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컴프레서, 구강청결기, 제습기, 과일 껍질깎이, 서빙스키, 게임기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구, 자동판매기, 전기육조, 사우나기구,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소독기, 전기 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헬스기구, 관상 및 애완용 전자기기	전기기기평가센터
	안전확인	이·미용기기, 해충퇴치기,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세척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기포발생기, 전기분무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전기용해기, 음식물처리기, 전기 기기용 제어소자	전기부품평가센터
	안전확인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전지	전력신산업기술센터
	공급자적합성 확인	보물 제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동형 물스크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 공구, 감자 탈피기, 전기 정미기, 전기 빵 자르개, 전기주류속성기, 착유기	전기기기평가센터
	공급자적합성 확인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사계, 전기분수기, 투영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 작동 도어록,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부품평가센터
	공급자적합성 확인	라디오수신기, 신호변환장치, CATV방송수신기, 영상전송기, 전동타자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팩시밀리기기, 제본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생활무선국용 무선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음성기록계, 전자시계, 모듈레이터, 스케너, 교통카드 충전기, 음성 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형광램프용 스타터, 비디오카메라, 비디오폰, 영상 기록계,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편집기, 금전등록기, 전자철판 및 보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실물화상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음성플레이어, CCTV 카메라, 비디오게임기구, 지폐계수기, 번호표발행기, 재단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 리서버, 컴프레서 게이트, 터티이블, 전자약기, 전기소자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전자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 튜너, 위성방송수신기, 음질조정기, A/V신호수신기, 앰프, 음성 및 영상분배기, 여학실습기, 동전계수기,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입체영상기, 전화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정보조명평가센터



부록

담당기관	품목 구분	세부품목	담당부서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안전인증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모발관리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구, 전기액체 가열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전기온수기, 전기 냉장·냉동기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충전기, 전기건조기(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전열기구, 전기다리미, 냉방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팬, 레인지 후드, 화장실용 전기기기, 가습기,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경기 및 램프 제어장치, 안경기 내장형 램프,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리튬이차단전지	전기제품인증팀
	안전확인	텔레비전수상기, 디스크 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오디오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 모니터, 프린터, 프로젝터, 문서 세단기, 천공기, 복사기, 무정전공급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TV, 코팅기, 노트북컴퓨터	전기제품인증팀
	안전확인	과일 껍질깎이, 전기용해기, 이·미용기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구강청결기, 해충퇴치기, 전기집진기, 서비스기기, 전기에어커튼, 팬코일유닛, 폐열 회수 환기장치, 게임기구,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훈증기, 수도 동결 방지기, 산소이온발생기, 전기정수기, 전기세척기, 전기헹트기구, 전자차 충전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사우나기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기포발생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기분무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 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제습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유체펌프, 전기가열기, 전기욕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백열등기구, 방전램프, 전기기기를 제어소자,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전기용접기,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전기제품인증팀
공급자적합성 확인		비디오카메라, 튜너, 라디오수신기, 리시버, 음성기록계, 음성플레이어, 비디오폰, 음질조정기, 신호변환장치, 컴프레서 게이트, 전자시계, CCTV 카메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기록계, A/V신호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터레이블, 모뎀레이터, 비디오게임기구,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앰프, 편진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전자악기, 스캐너, 지폐계수기, 금전 등록기, 여학실습기, 전자출판 및 보드,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 충전기, 번호표발행기, 생활무선국용 무선기, 음성 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 변환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자단기, 실물화상기, 압축영상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 전화기,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 공중전화화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 모델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원격제어방송 기기, 제본기, 감자 탈피기, 전기 정미기, 전기 빵 자르개,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주류숙성기, 전기기계,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분수기, 투영기, 착유기, 보풀제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 작동 도어록,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동형 롤스크린,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형광램프용 스타터	
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 연구원	안전인증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온수기, 전열기구, 모발관리기, 전기청소기,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주방용 전열기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전기액체가열기, 전기 냉장·냉동기기, 전자레인지(300MHz~31G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팬, 레인지 후드, 전기다리미, 화장실용 전기기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냉방기	전기안전센터



담당기관	품목 구분	세부품목	담당부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인증	직류전원장치(각 종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2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자안전센터
	안전인증	램프홀더, 안정기내장형 램프,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조명기술센터
	안전인증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소재부품평가센터
	안전인증	전자캐패기, 퓨즈, 차단기	충청중전기평가센터
	안전인증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5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리튬이차단전지	에너지평가센터
	안전확인	해충퇴치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서비스기기, 자동판매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유체펌프, 컴프레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과일 껍질깎이, 가정용 전동 재봉기, 게임기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이·미용기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전기 집진기, 폐열 회수 환기장치, 음식물처리기, 전기온수매트, 전기분무기, 구강청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전기에어케터, 전기소독기, 팬코일유닛, 제습기, 산소이온발생기, 전기 정수기, 전기훈증기, 전기가열기기, 전기세척기, 전기헬스기구, 전기의자 및 전통침대, 기포 발생기기, 전기용해기, 사우나기기,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욕조	전기안전센터
	안전확인	오디오프로세서, 문서 세단기, 디지털TV, 디스크 플레이어, 프린터, 무정전공급장치, 전자차 충전기, 텔레비전수상기, 모니터, 복사기, 오디오시스템, 프로젝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영상프로세서, 전공기, 코팅기, 노트북컴퓨터	전자안전센터
	안전확인	백열등기구, 방전램프	조명기술센터
	안전확인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회전기기센터
	안전확인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고주파웰터(고주파용접기), 전기용접기	소재부품평가센터
	안전확인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에너지평가센터
	공급자적합성 확인	전기분수기, 착유기, 전동형 롤스크린, 전기주류숙성기, 감자 탈피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 청정기, 전기 빵 자르개, 투영기, 전기 작동 도어록, 전기시계, 적외선·자외선방사 파파관리기, 보풀 제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 정미기	전기안전센터
	공급자적합성 확인	음성기록계, 신호변환장치, 영상기록계,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전자악기, 전자철판 및 보드, 생활무선국용 무선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 통신기기, 모델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라디오수신기, 비디오폰, CCTV 카메라, 모듈레이터, 음성 및 영상변배기, 금전등록기, 교통카드 충전기,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실물화상기,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제본기, 튜너, 위성방송수신기, 전자시계, 터레이블, 편집기, 지폐계수기, 전기소자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및 변환기, 비디오게임기구, 영상전송기, 어학실습기, 번호표발행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 변환기, 입체영상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 형광램프용 스탠더, 음성플레이어, 컴프레서 게이트, A/V신호수신기, 앰프, 스케너, 동전계수기, 음성 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전화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CATV방송수신기, 전동타자기, 팩시밀리기기, 비디오카메라	전자안전센터
	공급자적합성 확인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회전기기센터



부록

①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1] 안전인증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절연전선, 케이블, 코드, 코드세트
전기기기용스위치	스위치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설비용 스위치, 코드스위치, 전자식 스위치, 리모트 콘트롤 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 조광기, 제어회로용 스위치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X·Y 커패시터, 전파장해역제용 전원필터, 형광등용 커패시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기기용접속기류, 상호연결커플러, 플러그 및 콘센트, 케이블릴
전기용품보호용부품	퓨즈	퓨즈, 온도퓨즈
	차단기	기기보호용 차단기,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고압세척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전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주방용전열기구	전기레인지, 전기오븐기, 전기저차식그릴, 전기호브, 전기콘로, 전기가열기, 전기토스터, 전기프라이팬, 전기휴대형그릴, 전기고기구이, 와플기, 핫플레이트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모발관리기	전기머리인두, 모발발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강통파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젓병가열기, 요구르트 제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온수기	전기온수기, 순간온수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전기충전기	전기충전기
	전기건조기	회전형전기건조기, 손건조기, 전기건조기, 의류관리기
	전열기구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축열식전기난방기, 전기모양 히터, 팻렛 스토브
	전기마사지기	전기마사지기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기기기	냉방기	냉방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격살충기
	팬, 레인지후드	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가습기	가습기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전기드릴, 전기드라이버,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원형톱, 전기 햄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왕복톱, 전기진동기, 전기체인톱, 전기 대패, 전기전단깎이, 전기못총, 라우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직류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지대 포함)
정보·통신·사무기기	단전지	단전지
	램프홀더	형광램프 홀더, 에디슨 나사형 홀더, 기타 램프 홀더,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조명기기	일반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투광조명기구, LED조명시스템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램프용자기식안정기,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
	안정기내장형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LED포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리튬이차단전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2] 안전확인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절연변압기	고주파웰더	고주파웰더
	전기용접기	전기용접기, 권총형아크접착기
전기기기	과일깎집깎이	과일깎집깎이
	전기용해기	웍스 용해기, 초코렛용해기, 파라핀 용해기
	이·미용기기	두피모발기, 삼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질리기, 전기면도기, 전기이발기, 안면사우나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이발용의자, 전동침대, 전기온열의자, 각도조절의자
	컴프레서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
	구강청결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해충퇴치기	해충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집진기	전기집진기
	서비스기기	전기광택기, 수하물보관기, 지폐교환기, 동전교환기



부록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기기기	전기에어커튼	전기에어커튼
	팬코일유닛	팬코일유닛
	폐열 회수 환기장치	폐열 회수 환기장치
	게임기구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기타게임기구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식기세척기, 전기식기건조기
	전기훈증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수도 동결 방지기	수도 동결 방지기
	산소이온발생기	산소이온발생기
	전기정수기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전기세척기	초음파세척기, 과일이체세척기, 기타 전기세척기, 오존수 발생장치
	전기헬스기구	전기헬스기구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자동차 어댑터
	가정용 전동재봉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사우나기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관상어용 · 식물용 히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용 전기어항
	기포발생기기	기포발생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
	전기분무기	전기분무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물수건포장기, 물수건마는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주서믹서기
	게임기구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격살충기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전기소독기
	제습기	제습기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보온기, 전기주온기, 전기온장고
	유체펌프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 가열기기	남땀인두, 남땀제거인두, 권총형납땀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전기육조	소용돌이육조, 반신·전신육조, 발육조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디스크플레이어	디스크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오디오시스템
	오디오프로세서	오디오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
정보·통신·사무기기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프린터	프린터
	프로젝터	프로젝터
	문서세단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천공기
	복사기	복사기
	무정전 전원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TV	디지털TV
	코팅기	코팅기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태블릿PC
	전지	전지
조명기기	백열등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상데리아 등
	방전램프	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백열등기구를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체인형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할로겐등기구
	방전램프를 제외한 그밖의 램프	백열전구, LED램프, 할로겐전구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유예기간 중)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기기기	감지탈피기	감지탈피기
	전기정미기	전기정미기
	전기 빵 자르개	전기 빵 자르개
	애완동물 목욕기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 주류 숙성기	전기 주류 숙성기
	전기시계	전기시계
	적외선·자외선방사피부관리기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분수기	전기분수기



부록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기기기	투영기	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트립투영기, OHP, 필름투영기	
	착유기	착유기	
	보풀 제거기	보풀 제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비디오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튜너	튜너	
	라디오수신기	라디오수신기	
	리시버	리시버	
	음성기록계	음성기록계	
	음성플레이어	음성플레이어	
	위성방송수신기	위성방송수신기	
	비디오폰	비디오폰	
	음질조절기	음질조절기	
	신호변환장치	AD/DA 변환장치	
	컴프레서 게이트	컴프레서 게이트	
	전자시계	전자시계	
	CCTV 카메라	CCTV 카메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기록계	영상기록계	
	A/V신호수신기	A/V신호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턴테이블	턴테이블	
	모듈레이터	모듈레이터	
	비디오게임기구	비디오게임기구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앰프	앰프, 앰프내장형 스피커	
	편집기	편집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영상전송기	
	전자악기	전자악기	
	정보·통신·사무기기	스캐너	스캐너
		지폐계수기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금전등록기
		어학실습기	어학실습기
전자철판 및 보드		전자철판, 전자보드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정보·통신·사무기기	동전계수기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 충전기	교통카드 충전기
	번호표 발행기	번호표 발행기
	티켓 발행기	티켓 발행기
	순번대기기	순번대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기, (HF주파수대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기 (VHF/UHF주파수대 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 무선 헤드셋, IP 주소 공유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재단기	재단기
	실물화상기	실물화상기
	입체영상기	입체영상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팩시밀리기기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휴오토메이션, 비디오어폰,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금융단말기기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내비게이션,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제본기	제본기, 스테이플러
조명기기	형광램프용스타터	형광램프용스타터



Index

안전인증

절연전선	18	교류어댑터	45
케이블	19	진공청소기	46
코드	20	물흡입청소기	47
코드세트	21	전기바닥청소기	48
전기기기용 스위치	22	전기표면세척기	49
전기설비용 스위치	23	스팀청소기	50
코드 스위치	24	스팀해빙기	51
전자식 스위치	25	고압세척기	52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26	전기건조다리미	53
시간지연 스위치	27	스팀다리미	54
조광기	28	바지 프레스기	55
제어회로용 스위치	29	주름펴기	56
전자개폐기	30	다림질 프레스	57
X·Y 커패시터	31	전기레인지	58
전파장애 억제용 전원필터	32	전기오븐기	59
형광등용 커패시터	33	전기거차식그릴	60
전기기기용 접속기류	34	전기호브	61
상호연결케플러	35	전기곤로	62
플러그 및 콘센트	36	전기가열기	63
케이블릴	37	전기토스터	64
퓨즈	38	전기프라이팬	65
온도퓨즈	39	전기휴대형그릴	66
기기보호용 차단기	40	전기고기구이기	67
배선용 차단기	41	와플기	68
누전 차단기	42	핫플레이트	69
전압조정기	43	전기세탁기	70
가정용 소행변압기	44	전기탈수기	71
		모발건조기	72

전기머리인두	73	커피메이커	101
모발말개	74	전기스팀쿠커	102
주서	75	달걀조리기	103
주서믹서기	76	우유가열기	104
후드믹서	77	젓병가열기	105
전기녹즙기	78	요구르트제조기	106
크림거품기	79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107
계란반죽기	80	전기요	108
혼합기	81	전기매트	109
버터제조기	82	전기카펫	110
압즙기	83	전기장판	111
슬라이스기	84	전기침대	112
전기칼갈이	85	전기방석	113
전기깡통따개	86	전기짬질기	114
전기칼	87	발보온기	115
커피분쇄기	88	전기온수기	116
빙삭기	89	순간온수기	117
전기고기갈개	90	전기냉장냉동기기	118
전기국수제조기	91	제빙기	119
전기육절기	92	아이스크림 프리저	120
전기골절기	93	전기냉수기	121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94	전자레인지	122
전기법솔	95	전기충전기	123
전기보온법솔	96	회전형 전기건조기	124
전기주전자	97	손건조기	125
전기냄비	98	전기건조기	126
전기물끓이기	99	의류관리기	127
전기약탕기	100	전기스토브	128



Index

전열보드	129	전기왕복톱	157
전기라디에이터	130	전기진동기	158
전기온풍기	131	전기체인톱	159
축열식 전기난방기	132	전기대패	160
전구모양 히터	133	전기잔디깎이	161
펠릿 스토브	134	전기못총	162
전기마사지기	135	라우터	163
냉방기	136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164
전격살충기	137	직류전원장치	165
선풍기	138	현대전화 전지 충전기	166
송풍기	139	단전지	167
환풍기	140	기타 정보통신사무기기	168
레인저후드	141	형광램프 홀더	169
전기냉풍기	142	에디슨 나사형 홀더	170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143	기타 램프 홀더	171
전기변좌	144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172
오물흡입기	145	형광등기구	173
가습기	146	PLS조명기구	174
기타 전기기기	147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175
전기드릴	148	LED등기구	176
전기드라이버	149	할로겐등기구	177
전기그라인더	150	고압방전등기구	178
포리셔	151	투광조명기구	179
전기샌더	152	LED조명 시스템	180
전기원형톱	153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181
전기해머	154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182
전기금속가위	155	네온변압기	183
전기테이퍼	156	조명기구용 컨버터	184

안정기내장형램프	185	컴프레서	212
리튬이차단전지	186	전기온수매트	213
		전기온수 침대	214
		전동칫솔	215
		구강세척기	216
		해충퇴치기	217
		전기포충기	218
		전기집진기	219
		전기광택기	220
		수하물보관기	221
		지폐교환기	222
		동전교환기	223
		전기에어커피	224
		팬코일유닛	225
		폐열 회수 환기장치	226
		레이저사격기기	227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기구	228
		인형뽑기	229
		다트판	230
		농구게임기	231
		기타게임기구	232
		전기식기세척기	233
		전기식기건조기	234
		전기훈증살충기	235
		전기방향확산기	236
		수도 동결 방지기	237
		산소이온발생기	238
		전기정수기	239
온도조절기	188		
온도과승방지장치	189		
자동압력 스위치	190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191		
전기구동 모터 기동클레이	192		
에너지 레귤레이터	193		
고주파월더	194		
전기용접기	195		
권총형 아크접착기	196		
과일 껍질깎이	197		
왁스 용해기	198		
초코렛 용해기	199		
파라핀 용해기	200		
두피모발기	201		
삼푸기기	202		
모발가습기	203		
손톱정리기	204		
전기면도기	205		
전기이발기	206		
안면사우나기	207		
전기이발용의자	208		
전동침대	209		
전기온열의자	210		
각도조절의자	211		

안전확인



Index

전기이온수기	240	계란반죽기	268
초음파세척기	241	혼합기	269
과일아래세척기	242	버터제조기	270
기타 전기세척기	243	압즙기	271
오존수 발생장치	244	슬라이스기	272
전기헬스기구	245	커피분쇄기	273
전기차충전기	246	빙삭기	274
자동차 어댑터	247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275
가정용 전동재봉기	248	전기짬질기	276
전기스팀사우나기	249	발보온기	277
전기사우나기	250	전기손난로	278
사우나기이용 전열기	251	전기방석	279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252	온열시트	280
관상어용 식물용 히터	253	전격살충기	281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254	자동판매기	282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255	전기소독기	283
관상어용 전기어항	256	제습기	284
기포발생기	257	음식물처리기	285
공기청정기	258	주방용 오물분쇄기	286
이온발생기	259	전기보온기	287
전기분무기	260	전기주온기	288
물수건포장기	261	전기온장고	289
물수건미는기기	262	유체펌프	290
주서	263	전기온수펌프	291
주서믹서기	264	납땜인두	292
후드믹서	265	납땜제거인두	293
전기녹즙기	266	권총형납땜기	294
크림거품기	267	열가소성도관용접기	295

필름접착기	296	코팅기	324
플라스틱절단기	297	노트북컴퓨터	325
페인트제거기	298	태블릿PC	326
가열총	299	전지	327
전기조각기	300	기타 정보통신·사무기기	328
소용돌이육조	301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329
반산·전산육조	302	상대리아 등	330
발육조	303	형광램프	331
기타 전기기기	304	무전극램프	332
텔레비전수상기	305	수은램프	333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철판	306	메탈할라이드램프	334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307	나트륨램프	335
디스크 플레이어	308	체인형 조명기구	336
오디오시스템	309	충전식휴대전등	337
오디오프로세서	310	투광조명기구	338
영상프로세서	311	할로겐등기구	339
기타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312	백열전구	340
모니터	313	LED램프(모듈)	341
모니터 내장형 전자철판	314	할로겐전구	342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315	전력변환장치	343
프린터	316	리튬이차전지시스템	344
프로젝터	317		
문서세단기	318	공급자적합성확인	
천공기	319	감자탈피기	346
복사기	320	전기정미기	347
무정전 전원장치	321	전기 빵 자르개	348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322	애완동물 목욕기	349
디지털TV	323	전기주류숙성기	350



Index

전기시계	351	음성플레이어	379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352	위성방송수신기	380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353	비디오폰	381
전기분수기	354	음질조절기	382
슬라이드 투영기	355	AD/DA변환장치	383
필름스트립 투영기	356	컴프레서 게이트	384
OHP	357	전자시계	385
필름투영기	358	CCTV 카메라	386
착유기	359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387
보풀제거기	360	영상기록계	388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361	A/V신호수신기	389
전기 작동 도어록	362	CATV방송수신기	390
공기청정기	363	턴테이블	391
이온발생기	364	모듈레이터	392
전동형 롤스크린	365	비디오 게임기구	393
기타 전기기기	366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394
전기드릴	367	앰프	395
전기드라이버	368	앰프 내장형 스피커	396
전기그라인더	369	편집기	397
전기해머	370	음성 및 영상분배기	398
전기잔디깎기	371	영상전송기	399
전기못총	372	전자악기	400
기타 전동공구	373	기타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401
비디오카메라	374	스캐너	402
튜너	375	지폐계수기	403
라디오 수신기	376	금전등록기	404
리시버	377	어학살습기	405
음성기록계	378	전자철판	406

전자보드	407	전화기	435
동전계수기	408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436
전동타자기	409	팩시밀리기기	437
전기소자기	410	홈토포메이션	438
교통카드 충전기	411	비디오도어폰	439
번호표 발행기	412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440
티켓 발행기	413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441
순번대기기	414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442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415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44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416	현금자동취급기	444
생활무선국용 무전설비의 기기	417	금융단말기기	445
해상이동전화용 무전설비의 기기	418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446
무선마이크 시스템	419	내비게이션	447
무선스피커 시스템	420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448
무선 헤드셋	421	원격제어방송기기	449
IP 주소 공유기	422	제본기	450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423	스테이플러	451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424	그 밖에 유사한 기기	452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425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453
A/D 및 D/A 신호변환기	426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454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427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428		
재단기	429		
실물화상기	430		
입체영상기	431		
휴대폰	432		
스마트폰	433		
TRS 휴대폰	434		

알기쉬운 전기용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초판 1쇄 발행 2020년 12월 1일

발행처 : 한국제품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www.ksafety.kr

발행인 : 이영식
전 화 : 02-890-8300
팩 스 : 02-890-8309
주 최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